

인증업무세부규정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업무에 관한 세부규정

[시행 2018.7.25., 일부개정]



한국교통연구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목 차

Part 1.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평가체계와 운영

I. 인증제 경과 및 추진 현황	1
II. 인증 심사항목 체계	3
1. 인증평가 기준	3
2. 심사항목	4
3. 평가체계	6
III. 인증심사 운영 및 절차	8
1. 인증심사 운영 체제	8
2. 인증심사 절차	9
3. 인증신청서 제출	11

Part 2. 우수물류기업 인증분야별 인증심사기준

IV. 공통	19
V. 종합물류서비스기업	35
VI. 국제물류주선기업	67
VII. 물류창고기업	83
VIII. 화물운송기업	99
IX. 화물정보망기업	123
부록.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 외	145
부칙. 연혁 및 제정·개정이유	153

Part 1.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평가체계와 운영

I. 인증제 경과 및 추진 현황

1. 우수물류기업 인증제 도입(「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15.6.22개정, ’15.12.23시행))

- 물류기업의 육성과 물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하던 물류기업에 관한 인증 제도를 우수물류기업 인증으로 통합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의 육성과 물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은 물류사업별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사업별 인증의 주체와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우수물류기업"이라 한다)가 제4항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절차·방법·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 기존 종합물류기업인증, 우수화물운수사업자인증, 우수물류창고업체인증,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인증 및 우수화물정보망인증의 업종별로 각각 운영하던 물류기업에 관한 인증 제도를 우수물류기업 인증으로 통합하는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종 전》 6개 인증

인증명	심사기관(5)
종합물류기업인증	교통연구원
우수화물운송업인증	능률협회
우수물류창고업인증	통합물류협회
우수국제주선업인증	국제주선협회
우수화물정보망인증	교통연구원
우수녹색물류기업선정	교통안전공단



《개 편》 2개 인증

인증명	심사기관(2)
우수물류기업인증	물류관련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1
우수녹색물류기업	교통안전공단

- 우수물류기업인증을 물류산업 업역(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2호)별로 구분하고, 소관에 따라 국토부와 해수부가 인증(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2, 별표 1의2)



2.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제정(‘15.12.31)

- 인증제도 시행 및 운영을 위한 인증신청, 심사대행기관, 인증위원회, 인증심사단 구성 원칙, 인증절차, 인증기준 및 심사방법, 인증기업 점검, 인증서 발급, 수수료 등에 대하여 규정함

3.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 지정

- 인증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인증관련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별도의 인증심사 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심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함
- 심사대행기관은 인증신청서 접수, 인증심사, 정기 점검, 인증업무의 세부규정 마련, 연간 인증심사계획 수립, 인증제도 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함
-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신청자격을 한정함
-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이 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16.5.18.)
-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이 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17.5.18.)
- 한국교통연구원이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18-202호, ‘18.3.6.)
 - 한국교통연구원 : 종합물류서비스기업, 화물자동차운송기업, 물류창고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 화물정보망기업 인증 분야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물류창고기업(항만구역) 인증 분야

【물류정책기본법】

제40조(인증심사대행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22.>

1. 인증신청의 접수
 2. 제38조제4항의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
 3. 제3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의 대행
 4. 그 밖에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
- ② 심사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5.6.22.>
1.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삭제 <2015.6.22.>
- ③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있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6.22.>
- ④ 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6.22.>
-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을 지도·감독하고, 그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2015.6.22.>

[제목개정 2015.6.22.]

II. 인증 심사항목 체계

1. 인증평가 기준

가. 우수물류기업 인증기준(「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인증 대상 물류기업	인증기준
1. 화물자동차 운송기업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것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일 것 나. 화물운송에 관한 정보를 화주에게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갖추어 것 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예방체계 등을 갖추어 것 라. 안정적인 운송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영상태를 유지할 것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물류창고 기업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것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나. 화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화재보험 가입 등 화재예방 및 화재대응 매뉴얼을 갖추어 것 다. 창고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및 운영 매뉴얼을 갖추어 것 라. 국내외 화물의 보관 실적 및 고용창출 실적이 우수할 것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3. 국제물류 주선기업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것 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나. 총매출액 중 제3자물류의 매출액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일 것 다. 자기 명의로 발행하는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 운송장이 연간 3천 건 이상일 것 라. 거래하는 수출 또는 수입 화물이 도착하는 국가가 연간 5개국 이상일 것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4. 화물정보망 기업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것 가. 화물운송 거래정보 관리체계가 우수할 것 나. 화물정보망 운영의 안정성 및 보안관리가 양호할 것 다. 화물정보망의 이용 및 거래 실적이 적정할 것 라. 화물운송거래의 투명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적이 양호할 것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5. 종합물류 서비스기업	다음 각 목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인증을 모두 받거나,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인증을 모두 받은 자일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1) 영 별표 1에 따른 대부분류(종합물류서비스업은 제외한다)별 세분류에 해당하는 물류사업을 각각 1개 이상씩 영위할 것 2) 영위하는 1개 물류사업의 매출액이 각각 전체 물류사업 총매출액의 3퍼센트 이상 또는 30억원 이상일 것 3) 전체 물류사업 총매출액 중 제3자물류의 매출액 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비교: 제5호나목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물류기업은 해당 물류기업이 영위하는 물류사업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인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제5호가목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물류기업은 인증신청서와 기존 인증서를 제출시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나. 인증 요건

-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2조 별표에 따라 각 인증분야별 기준을 충족하고, 100점 중 70점 이상, 세부심사항목별 20% 이상

【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	
제9조(인증평가의 기준) ① 별표 1에 따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산정된 평가점수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산정된 심사영역별 점수의 합계가 심사영역별로 배정된 점수 합계의 70퍼센트 이상의 점수일 것	
2. 각 세부심사항목별로 산정된 심사영역별 평가점수의 소계가 해당 세부심사항목의 심사영역별 배정 점수의 20퍼센트 이상의 점수일 것	
②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사로 구분 실시하며 2차 현장실사는 1차심사결과 총점의 70퍼센트 이상을 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인증평가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세부규정에 따른다.	

2. 심사항목

- 우수물류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경쟁력 있는 분야별 물류전문기업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평가항목 마련
- 인증심사 평가항목 및 기준

인증분야	심사항목 및 배점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	
공 통	1. 리더십 및 경영전략	5	1.1 경영비전, 목표, 추진전략	1.5
			1.2 최고경영진의 의지 및 리더십	1.5
			1.3 물류서비스 품질 경영전략	2
	2. 사업 안정성	10	2.1 재무성과	10
	3. 업무처리 역량	10	3.1 인력확보	6
			3.2 고객지원 역량 및 신인도	4
소 계		25		
종합물류 서비스기업	1. 다양성	25	1.1 네트워크	12
			1.2 매출구조	5
			1.3 대상고객	8
	2. 기업 규모	30 (20)	2.1 자산	15 (10)
			2.2 매출	15 (10)
	3. 발전가능성	20 (30)	3.1 제3자 물류화	13 (15)
			3.2 국제화	4 (8)
3.3 정보화			3 (7)	
소 계		75		
합 계		100		

주: 종합물류서비스기업의 ()내 수치는 서비스중심에 적용

인증분야	심사항목 및 배점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	
국제물류 주선기업	1. 전문성 및 서비스 경쟁력	35	1.1 전문능력	20
			1.2 고객지원역량 및 대외신인도	15
	2. 국제화정도	40	2.1 국제업무역량	20
			2.2 국제네트워크	20
소 계		75		
합 계		100		
물류창고기업	1. 자산	50	1.1 유형자산	20
			1.2 무형자산	30
	2. 화물확보 및 고용	15	2.1 화물처리실적	5
			2.2 장기계약현황	5
			2.3 종사자 고용현황	5
	3. 안전성	10	3.1 안전 및 보안	5
			3.2 보험 및 보상체계	3
3.3 친환경			2	
소 계		75		
합 계		100		
화물운송기업	1. 조직 및 자원관리	25	1.1 조직관리	15
			1.2 자원관리	10
	2. 운송정보시스템	15	2.1 운송지원정보시스템	5
			2.2 고객지원정보시스템	10
	3. 운송과정 관리	35	3.1 영업관리 프로세스	5
			3.2 서비스 관리 프로세스	20
			3.3 안전관리 프로세스	10
소 계		75		
합 계		100		
화물정보망기업	1. 화물운송거래정보 관리	20	1.1 화물 및 차량 정보 관리시스템	15
			1.2 화물운송실적정보 관리시스템	5
	2. 화물운송시장 거래제도 이행능력	30	2.1 화물운송거래 합법성 모니터링 기능	20
			2.2 화물운송실적신고(FPIS) 지원 기능	10
	3. 시스템 운영실태	15	3.1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처리용량 및 운영체계 수준	10
			3.2 정보보안관리	5
	4. 정보망 이용규모	10	4.1 가입회원 규모	5
			4.2 운송거래 실적규모	5
			4.3 전자인수증 활용실적 (가산점 1점, 전체 10점 이내)	(1)
	소 계		75	
합 계		100		

※ 동일년도에 인증분야별 중복 신청시 공통부분에 대해서는 선행심사 결과를 준용함(단, 세부 물류사업별 전략 등이 상이하여 재심사를 원할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3. 평가체계

가. 채점방식

- 각 심사항목을 채점하는 방식은 접근방법, 전개 및 결과 등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평가를 통해 진행
- 접근방법 (Approach)
 - 각 심사 항목에 표시되어 있는 사항이 어떤 개념과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파악
- 전개 (Deployment)
 - 각 심사 항목에 표시되어 있는 사항이 어느 부문 어느 직급(수평/수직레벨)에서 전개되고 있는지를 파악함. 즉, 조직 내에 해당항목의 전개 정도에 대해 평가
- 결과 (Results)
 - 각 심사항목에 나타나 있는 사항의 활동성과로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파악함. 결과는 현재의 실행 수준을 의미함. 즉 해당 항목이 조직내외에 전개된 결과,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를 평가

나. 채점 가이드라인

- 정성적 점수는 그 정도에 따라 5단계 척도(~50%, 60~69%, 70~79%, 80~89%, 90~100%)를 이용하여 채점함
 - 5단계 척도 중, 항목별 확인자료 미보유 시, 대체자료 혹은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해당 항목 배점의 50% 미만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함

※ 채점 예시

- 리더십 및 경영전략 > 경영비전 (배점 0.5점)
 - 일회적이며,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 0.5점 × 60% = 0.3점
 - 경영비전 수립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들이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접근방식으로 제시되고 있어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영속적이며 장기적인 비전 달성을 위해 철저한 분석과 개선이 미흡한 경우
⇒ 0.5점 × 80% = 0.4점

- 정량적 점수의 경우 관련서류 확인 및 기준을 통한 평가점수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채점
- 소수점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예: 5.667 ⇒ 5.67)

○ 심사항목 평가척도 및 기준

척도	접근방법/전개	결과
1 (~50%)	○ 확인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체 근거나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미미한 상황임	○ 해당 분야에서 실적이 없거나 아주 빈약함
2 (60~69%)	○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나, 일회적이며, 체계성이 결여됨 ○ 항목의 기본목적에 알맞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시작하는 단계임 ○ 문제대응 단계에서 개선지향으로 이행하는 초기 단계임 ○ 항목의 기본 목적을 방해하는 큰 결함이 전개 단계에 존재함	○ 개선경향의 초기단계 (일부분야에서 약간의 개선이나 초보적인 성과가 있는 상태) ○ 핵심사업의 중요부문에서 결과가 보고되고 있지 않은 상태임
3 (70~79%)	○ 항목의 기본목적에 대응 가능한 건전하고 체계적인 방법론이 정비되어 있음 ○ 중요분야의 사실에 근거한 개선 프로세스가 확립되어 있음 ○ 일부 분야에서 초기단계의 전개 상태로 전개를 위한 큰 결함이나 격차(Gap)가 존재하지 않음	○ 핵심사업의 중요부문 대부분에서 개선경향이 양호한 성과로 보고되는 상태임 ○ 핵심사업의 중요 부문에서 역행하는 경향이나 빈약한 성과가 보고되고 있지 않음
4 (80~89%)	○ 항목전반이 목적에 대응 가능한 건전하고 체계적인 방법론으로 정비되어 있음 ○ 사실에 근거한 개선프로세스가 경영의 기본도구가 되고 있음 ○ 개선의 사이클이나 분석의 결과를 사실에 근거하여 증명할 수 있음 ○ 방법론이 큰 결함이나 격차(Gap) 없이 양호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서 서로 약간 상이할 수도 있음	○ 핵심사업의 중요부문 대부분에서 현재의 성과가 우수한 범위에 있음 ○ 대부분의 개선경향과 성과수준이 안정되어 있음
5 (90~100%)	○ 항목의 모든 조건에 완전히 대응되는 건전하고 체계적인 방법론이 정비되어 있음 ○ 사실에 근거한 매우 강력한 개선 프로세스가 경영의 기본도구가 되고 있음 ○ 우수한 분석에 근거한 철저한 개선, 통합화가 이루어져 있음 ○ 어느 분야에 있어도 중요한 약점이나 결함이 없는 방법이 완전하게 전개되고 있음	○ 핵심사업의 중요부문 대부분에서 현재의 성과가 매우 우수함 ○ 대부분의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개선 경향이 있으며, 성과수준이 안정되어 있음

III. 인증심사 운영 및 절차

1. 인증심사 운영 체제

가. 우수물류기업인증위원회(인증위원회)

-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운영
- 주요 심의 사항
 - 인증심사위원그룹 및 인증심사단 구성의 적정성
 - 인증심사의 적정성
 - 인증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 인증업무에 대한 세부규정의 적정성

나.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심사대행기관)

- 인증심사 업무 대행을 전담하는 전문인증기관
- 주요 업무
 - 세부규정의 제·개정
 - 인증신청의 접수
 - 인증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
 - 점검의 대행
 - 기타 인증심사 대행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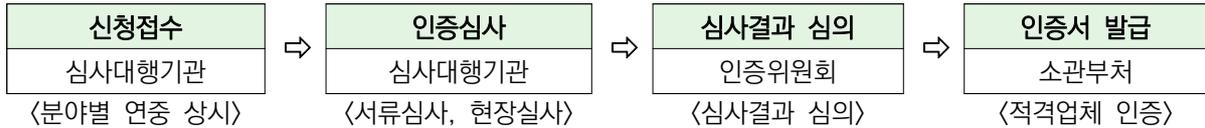
다. 인증심사단

- 인증제도의 운영 및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인증심사위원그룹을 구성·운영
 - 물류 관련 및 심사와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가 100명 이상으로 구성
- 신청기업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인증심사위원그룹의 구성원 중에서 3명 이상의 인증심사단을 신청기업별로 구성

2. 인증심사 절차

가. 인증 절차

- 심사대행기관이 인증 심사를 대행하고,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소관 부처(국토부, 해수부)에 송부하면 해당 부처가 인증을 시행



나. 심사 절차

구분	내 용	담당조직
1단계	인증신청 접수 후 제출자료 1차 검증	인증센터
2단계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인증심사단(인증센터 지원)
3단계	심사결과 재검증	인증센터
4단계	최종 승인	인증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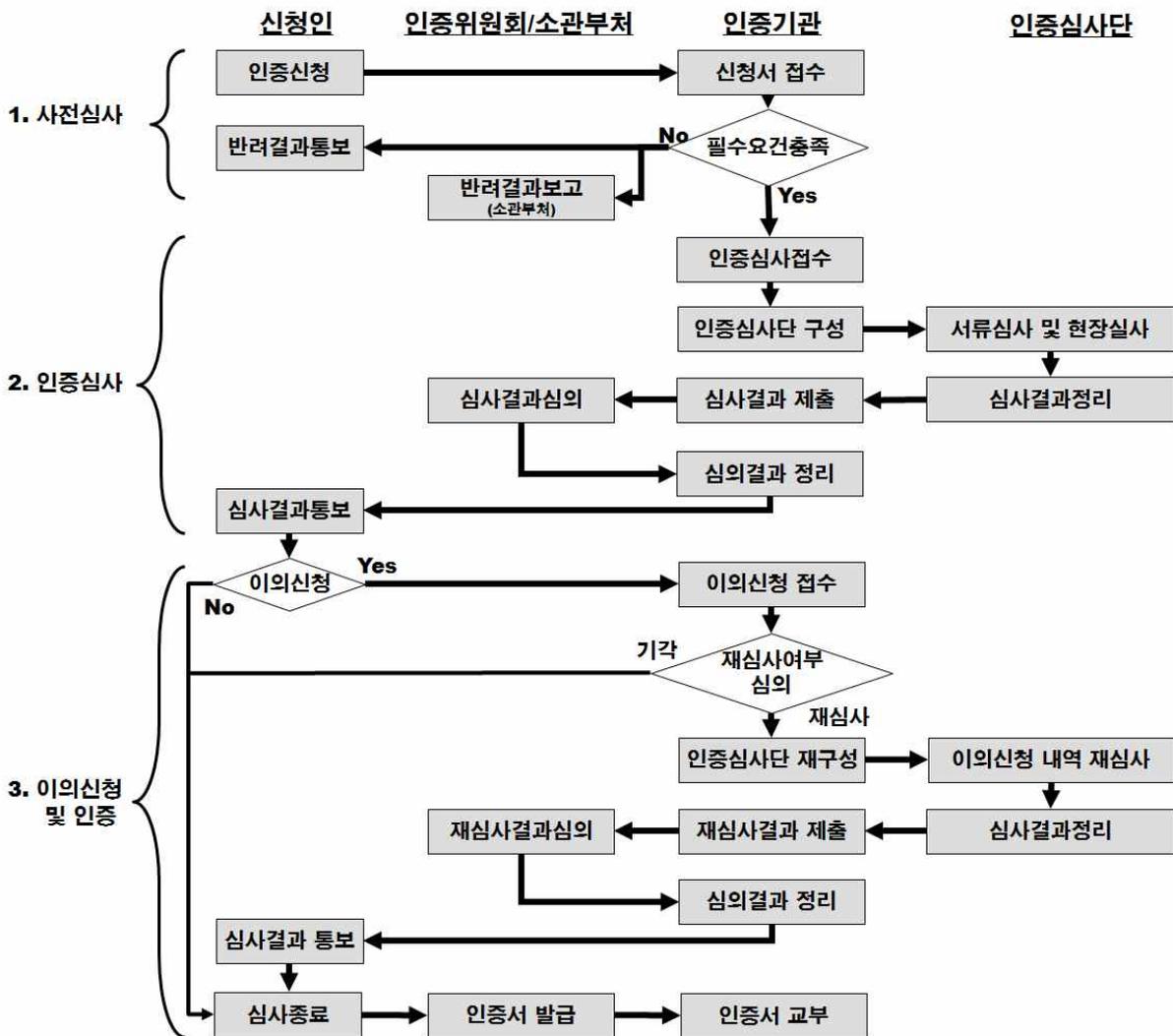
- ① 인증심사계획 수립, 신청공고 및 설명회 개최 : 심사대행기관(인증센터)
- ② 인증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신청기업
- ③ 서류접수 및 제출자료 검증 : 심사대행기관
- ④ 인증심사단 구성 : 심사대행기관
 - 심사대행기관에서 신청기업별로 3~4인의 인증심사단을 구성
- ⑤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인증심사단 및 심사대행기관
 - 현장실사 일정이 확정되면 심사대행기관에서 신청기업에 일정을 통보
 - 인증분야별 기준을 충족하고, 100점 중 70점 이상, 세부심사항목별 20% 이상
- ⑥ 인증심사단의 심사결과를 인증센터에서 재검증 후 심사결과를 인증위원회에 상정
- ⑦ 인증위원회에서 합격여부 심의 후 심의결과를 신청기업에 통보
- ⑧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 심사대행기관
 - 인증취득 불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이의신청이 가능함
 - 이의신청기간은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임
 - 이의신청기간 이내인 경우라도 이의신청여부 회신이 완료되면 곧바로 다음 절차 진행

⑨ 이의신청 수락여부 판단

- 이의신청이 없는 건 또는 수락불가 건은 심의결과 최종 확정
-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인증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통보

⑩ 국토교통부 최종 결재 후 발표

- 인증서 발급 및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우수물류기업 인증절차도〉

3. 인증신청서 제출

가. 신청서 접수 절차

- 인증심사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인증센터 홈페이지에 기업/개인 회원가입
 - 기업별 하나의 회원으로만 가입(개인으로도 회원가입 가능)
 - 인증심사 수요를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인 인증심사 진행을 위함
 - 회원가입을 위한 문의는 인증센터(아래의 연락처 참조)를 통한
 - ※ 회원가입을 하고 당해 인증심사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무런 영향은 없음

- 인증센터로부터 인증신청서, 신청기업현황보고서 등 관련 제출자료 양식을 받아 작성한 후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연중 상시 제출**
 - 직접 방문 접수에 한함 (우편접수 불가)
 - 접수처 : 한국교통연구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세종국책연구단지 B동 4층)
 - 문의처 : 044) 211 - 3194, 3372, 3042, 3178, 3274, 또는 이메일
celc@koti.re.kr, kwon8917@koti.re.kr, shin1007@koti.re.kr,
mimic4001@koti.re.kr, hany0419@koti.re.kr, cslee@koti.re.kr

- 심사수수료 납부
 - 신규인증 심사수수료는 300만원임
 - 납부는 신청서 제출시까지 완료되어야 함
 - 납부처 : 농협은행, 301-0193-2058-11, 한국교통연구원
 - 인증심사 접수는 심사수수료 납부와 동시에 완료됨 : 인증심사 신청기업은 제출서류 접수 시 심사수수료 납부영수증(확인증)을 제출해야 함
 - 인증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납부한 심사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나.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1부
 - 인증신청분야에 따른 물류사업 허가증(또는 등록증) 사본 1부
 -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이 없을 경우,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대표이사 직인 날인)

-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 ※ 모든 제출서류는 기준일자를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4대 보험가입증명서의 경우에는 인증신청서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최근자료이어야 함
- 신청기업현황보고서 (제출필요부수 및 양식 등은 공고문 참조)
 - 기본내용, 평가기준을 토대로 내용 구성(인증요령 참조)
 - ※ 신청기업현황보고서는 소속기업 대표자의 승인을 필히 득해야 함
- 조건표 1부
 - 세부심사항목별로 내용이 작성된 신청기업현황보고서의 페이지 명시
-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별표 1]의 인증심사항목별 제출서류 등
 - 회계보고서상의 재무제표 사본(최근 3년간)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1부
 - 기타 인증요령 별표1의 제출서류
- 심사수수료 납부영수증(확인증) 1부
- 인증분야별 세부 제출서류
 - 종합물류서비스기업
 - 관련 우수물류기업 인증서 사본(해당시) 또는
 - 관련 물류사업 허가/등록증 사본
 - 국내외 거점 관련 서류 사본
 - 자산 관련 서류 사본
 - 기타 인증요령 별표1의 제출서류
 - 국제물류주선기업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사본
 - 자기명의의 B/L 발행비율을 나타내는 서류 사본
 - 매출고객의 분포성(화물 운송 실적 관련 서류)을 나타내는 서류 사본
 - 업무 관련 국외 단체가입 정도를 나타내는 서류 사본
 -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사본
 - 기타 인증요령 별표1의 제출서류
 - 물류창고기업
 - 물류창고업 등록증 사본
 - 화재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화재예방 및 화재대응 매뉴얼 사본
 - 정보시스템 및 운영 매뉴얼 사본
 - 화물 보관 실적 관련 서류 사본
 - 기타 인증요령 별표1의 제출서류

- 화물운송기업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 정보시스템 및 운영 매뉴얼 사본
 - 화물 운송 실적 관련 서류 사본
 - 기타 인증요령 별표1의 제출서류
- 화물정보망기업
 - 물류관련 사업 허가/등록증 사본
 - 화물정보망 시스템 소유(사용)권 관련 서류 사본
 - 화물정보망 시스템의 게스트(Guest) 아이디, 패스워드
 - ※ 인증심사 시 실제 구동되고 있는 시스템 확인 목적
 - 기타 인증요령 별표1의 제출서류
 - ※ 화물정보망기업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의 경우, 화물운송가맹사업자로서의 가맹망과 화물정보망이 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분리된 화물정보망(인증심사 대상 정보망)이 개방형일 경우 심사신청이 가능함

※ 위 관련서류를 이동식 저장매체(CD, USB 등)에 저장하여 추가로 제출

※ 이 외에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인증센터에서 차후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명기회와 보완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보완 후에도 여전히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서류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중 모든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다. 유의사항

- 허위사실 기재 금지
 - 신청기업현황보고서에 허위 사실 기재시 신청기업에 불이익 처분이 주어질 수 있음
- 신청기업현황보고서는 소속기업 대표자의 승인 필득
 - 제출문 형태로 작성(제출되는 서류에 허위사실이 없다는 내용 포함)하여야 함
- 증빙서류 완비 필수
 - 신청기업현황보고서 상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각종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빠짐이 없어야 함
 - 제출된 증빙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
- 인증평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최근 2년내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Part 2. 우수물류기업 인증분야별 인증심사기준

Part 2. 우수물류기업 인증분야별 인증심사기준

IV. 공통

IV. 공통

□ 공통 분야의 심사항목 체계 (배점: 25점)

심사항목 및 배점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		평가지표 및 배점		신규	정기
1. 리더십 및 경영전략	5	1.1 경영비전, 목표, 추진전략	1.5	1.1.1 경영비전	0.5	○	-
				1.1.2 연도별 경영목표	0.5	○	-
				1.1.3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	0.5	○	-
		1.2 최고경영진의 의지 및 리더십	1.5	1.2.1 비전, 목표, 전략 등에 대한 조직원 공유 유무	1	○	-
				1.2.2 업무 환경조성	0.5	○	-
		1.3 물류서비스 품질 경영전략	2	1.3.1 서비스 품질 운영 방침	1	○	-
				1.3.2 서비스 품질 목표 설정	1	○	-
2. 사업 안정성	10	2.1 재무성과	10	2.1.1 자기자본 이익률	2	○	○
				2.1.2 부채비율	2	○	○
				2.1.3 장기계약 매출 비중	3	○	○
				2.1.4 매출액대비 순이익률	3	○	○
3. 업무처리 역량	10	3.1 인력확보	6	3.1.1 전문인력 보유수준	3	○	○
				3.1.2 교육시스템	3	○	-
		3.2 고객지원 역량 및 신인도	4	3.2.1 관련 법규 준수도	-	○	○
				3.2.2 서비스 품질 평가체계	4	○	○ (2점)
				3.2.3 고객만족도	2	-	※

※ 인증우수물류기업이 인증 후 적정 수준의 고객만족도를 유지함으로써 인증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 점검 평가기준을 별도로 마련

□ 공동 분야의 평가지표 (배점: 25점)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및 배점		지표의미/평가기준/척도	확인자료
1. 리더십 및 경영전략 (5)	1.1 경영비전, 목표, 추진전략 (1.5)	1.1.1 경영비전	0.5	-경영비전이 체계적이면서 현실성 있게 수립되어 있는가?	-기업의 경영비전
		1.1.2 연도별 경영목표	0.5	-경영비전에 맞춰 경영목표가 명확히 수립되어 있는가?	-연도별 경영목표
		1.1.3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	0.5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이 단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서
	1.2 최고경영진의 의지 및 리더십 (1.5)	1.2.1 비전, 목표, 전략 등에 대한 조직원 공유 유무	1	-경영진은 경영비전, 목표, 전략을 조직원과 공유하고 실천하고 노력하는가?	-경영전파 실적자료 (게시판, 메일, 교육, 특강, 홈페이지 등) -CEO 경영어록 (취임사, 신년사 등)
		1.2.2 업무 환경조성	0.5	-조직 구성원들이 각자의 해당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있는가?	-참여 프로그램 종류 및 참여율(회의체, 제안 등)
	1.3 물류서비스 품질 경영전략 (2)	1.3.1 서비스 품질 운영 방침	1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전사 차원의 방침이 존재하는가?	-서비스품질 방침
		1.3.2 서비스 품질 목표 설정	1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목표가 측정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가?	-서비스품질 목표 기술서
2. 사업 안정성 (10)	2.1 재무성과 (10)	2.1.1 자기자본 이익률	2	-투자된 자본을 사용하여 어느 정도 이익을 올리고 있는가?	-회계보고서상의 재무제표 사본(최근 3년간)
		2.1.2 부채비율	2	-재무제표의 경영지표(부채/자본), 부채비율 200% 이내, 자본잠식의 경우 '0'점 처리	-회계보고서상의 재무제표 사본(최근 3년간)
		2.1.3 장기계약 매출 비중	3	-2자물류 및 3자물류 합계 -원칙: 물류부문매출액 중 1년 이상 장기계약 매출액의 비율	-화물운송계약서 또는 위수탁계약서 등
		2.1.4 매출액대비 순이익률	3	-기업 전체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로 재무제표(손익계산서)상의 기업 총매출액과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며, 최근 3년간 평균값 적용	-세금계산서(매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3. 업무처리 역량 (10)	3.1 인력확보 (6)	3.1.1 전문인력 보유수준	3	-신청 물류기업의 전문인력 보유수준(물류관련 자격증, 물류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등)	-재직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학위수여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3.1.2 교육시스템	3	-직종별 교육훈련계획서가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실시되고 있는가?	-직종별 교육훈련계획서 -직종별 교육훈련 이수현황
	3.2 고객지원 역량 및 신인도 (4)	3.2.1 관련 법규 준수도	-	-최근 2년내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세부심사항목에 해당하는 점수(4점)를 차감함
		3.2.2 서비스 품질 평가체계	4 (2)	-서비스 처리결과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는가 ?	-서비스 품질 고객만족도 조사 계획서 및 보고서, 고객만족도 조사 실적 등
		3.2.3 고객만족도	(2)	-소비자 불만신고 서면민원이 국토부, 해수부 또는 인증심사대행기관에 3회 이상 제기된 경우	-3회 이상 제기된 경우 해당 점수(2점) 차감

1. 리더십 및 경영전략 (5점)

1.1 경영비전, 목표, 추진전략 (1.5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지표	지표 의미	배점	평가기준/척도
경영비전, 목표, 추진전략	경영비전	·기업의 영속적인 생존과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의 수립 여부 ·설정한 미래 비전의 현실성 및 모든 종업원들에 대한 공유여부	0.5	5단계 척도 평가
	연도별 경영목표	·기업의 장기적인 비전을 반영한 경영 목표의 수립 여부 ·회사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성적 /정량적 경영목표 존재 유무 ·경영목표 계획화 과정의 체계성 및 효율성 ·고객만족 목표 및 기타 성과개선 목표 설정시 현재 및 미래의 고객요구 사항 반영 여부	0.5	5단계 척도 평가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계획 등의 단계별 수립 및 관리 여부 ·추진전략 계획화 과정에서 재무적 위험, 시장위험,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고려 ·장단기 계획수립에 자사의 능력과 한계 고려여부, 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피드백 과정 실천 여부 ·실행계획에 대비하여 진행상황을 추적하기 위한 주요 성과척도 및 지표 개발 여부	0.5	5단계 척도 평가

가. 확인자료

- 신청기업현황보고서(특히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
 - 경영비전과 목표는 물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전략 및 계획을 포함한 경영지침
 - 목표고객, 수익모델과 지속성을 포함한 주요 비즈니스 모델
 - 화물정보망기업은 서비스 이용 요금 체계 등의 가격 정책을 반드시 포함
 -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 실행계획을 포함한 계획서
 - 자체 경영성과 평가지침, 평가결과 및 개선에 대한 경영실적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경영비전

-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 보유

구분	평가 점수
일회적이며, 체계성이 결여	60~69%
체계적이며 개선프로세스가 확립, 일부 결함이나 격차(Gap)가 존재	70~79%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접근 전개, 특별한 허점 없이 양호하게 전개	80~89%
우수한 분석에 근거하여 철저한 개선 및 통합화가 이루어짐	90~100%

※ 대체할 근거가 있을 경우 50% 이내 점수 부여

○ 연도별 경영목표

-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 보유

구분	평가 점수
일회적이며, 체계성이 결여	60~69%
체계적이며 개선프로세스가 확립, 일부 결함이나 격차(Gap)가 존재	70~79%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접근 전개, 특별한 허점 없이 양호하게 전개	80~89%
우수한 분석에 근거하여 철저한 개선 및 통합화가 이루어짐 현재 경쟁업체와 미래 경쟁업체에 관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음	90~100%

※ 대체할 근거가 있을 경우 50% 이내 점수 부여

○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

-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 보유

구분	평가 점수
일회적이며, 체계성이 결여	60~69%
체계적이며 개선프로세스가 확립, 일부 결함이나 격차(Gap)가 존재	70~79%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접근 전개, 특별한 허점 없이 양호하게 전개	80~89%
우수한 분석에 근거하여 철저한 개선 및 통합화가 이루어짐 목표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자원의 배분 및 전개가 이루어짐	90~100%

※ 대체할 근거가 있을 경우 50% 이내 점수 부여

1.2 최고경영진의 의지 및 리더십 (1.5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지표	지표 의미	배점	평가기준/척도
최고 경영진의 의지 및 리더십	비전, 목표, 전략 등에 대한 조직원 공유 유무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고 경영진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개념 정립여부 ·경영진의 조직의 비전, 경영목표, 추 진전략 등에 대해 조직원에게 확산, 실천, 개선 의지에 대한 표현 여부 ·고객중시 가치관의 전파를 위한 다양 한 채널 활용 여부 ·고객만족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인적·물적 자원의 투자 여부	1	5단계 척도 평가
	업무 환경조성	·경영진이 조직 내에서 권한위양, 혁 신, 창의성을 지향하고 격려하는 풍 토 조성의 여부 ·사내에 고객지향적 기업풍토를 조성· 확산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 프로 그램 존재 여부, 종업원들의 활발한 참여 여부 ·경영진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기업윤리, 환경, 안전에 관련된 활동 에 대한 적극적 참여여부 ·중복되는 업무의 제거 및 효과적인 조직체계 구축 여부	0.5	5단계 척도 평가

가. 확인자료

- 신청기업현황보고서(특히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
 - 경영전파 실적(조회, 게시판, 이메일, 교육, 특강, 홈페이지 등)
 - CEO 경영어록(취임사, 신년사 등) 등
 - 권한위양, 조직체계 등에 대한 조직내부 규정 등
 - 참여 프로그램 종류 및 참여율(회의체, 제안 등)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비전, 목표, 전략 등에 대한 조직원 공유 유무
 -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 보유

구분	평가 점수
일회적이며, 체계성이 결여	60~69%
체계적이며 개선프로세스가 확립, 일부 결함이나 격차(Gap)가 존재	70~79%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접근 전개, 특별한 허점 없이 양호하게 전개	80~89%
리더십 발휘활동이 시스템적으로 작동하고 있음 산업계를 주도할 만한 차원(개인/조직)의 경영활동 및 성과가 있음	90~100%

※ 대체할 근거가 있을 경우 50% 이내 점수 부여

- 업무 환경조성
 -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 보유

구분	평가 점수
일회적이며, 체계성이 결여	60~69%
체계적이며 개선프로세스가 확립, 일부 결함이나 격차(Gap)가 존재	70~79%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접근 전개, 특별한 허점 없이 양호하게 전개	80~89%
우수한 분석에 근거하여 철저한 개선 및 통합화가 이루어짐	90~100%

※ 대체할 근거가 있을 경우 50% 이내 점수 부여

1.3 물류서비스 품질 경영전략 (2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지표	지표 의미	배점	평가기준/척도
물류 서비스 품질 경영전략	서비스 품질 운영 방침	·서비스의 지속적인 품질향상을 위한 전사 운영 방침이 존재하는가? ·서비스품질 방침은 경영전략과 상호 연계되어 수립되었는가?	1	5단계 척도 평가
	서비스 품질 목표 설정	·서비스품질 목표는 고객(화주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가? ·서비스품질 목표는 정량화가 가능하도록 평가, 설계되어 있는가? ·서비스의 단계적 추진 전략은 기존고객, 잠재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는가?	1	5단계 척도 평가

가. 확인자료

- 서비스품질 방침
 - 서비스이행 표준 매뉴얼, 서비스 목표 기술서, 서비스 전략 로드맵 등
 - 서비스 품질 보증 및 보상 체계, 고객응대매뉴얼 등
 - 서비스이용약관(제·개정이력포함), 서비스이용가입신청서(제·개정이력포함),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서비스 품질 운영 방침
 -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 보유

구분	평가 점수
일회적이며, 체계성이 결여	60~69%
체계적이며 개선프로세스가 확립, 일부 결함이나 격차(Gap)가 존재	70~79%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접근 전개, 특별한 허점 없이 양호하게 전개	80~89%
우수한 분석에 근거하여 철저한 개선 및 통합화가 이루어짐	90~100%

※ 대체할 근거가 있을 경우 50% 이내 점수 부여

- 서비스 품질 목표 설정
 -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 보유

구분	평가 점수
일회적이며, 체계성이 결여	60~69%
체계적이며 개선프로세스가 확립, 일부 결함이나 격차(Gap)가 존재	70~79%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접근 전개, 특별한 허점 없이 양호하게 전개 기존고객의 니즈가 적극 반영됨	80~89%
우수한 분석에 근거하여 철저한 개선 및 통합화가 이루어짐 잠재고객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단계별 로드맵의 정립 및 실행	90~100%

※ 대체할 근거가 있을 경우 50% 이내 점수 부여

2. 사업 안정성 (10점)

2.1 재무성과 (10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지표	지표 의미	배점	평가기준/척도
재무성과	자기자본 이익률	·신청 물류기업이 투자된 자본을 사용하여 어느 정도 이익을 올리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기업의 이익창출능력으로 자기자본이익률(Return On Equity ; ROE = (당기순이익/자기자본) × 100) 최근 3년간 평균값 적용	2	이익률 5% 기준(100%), 이하 비율 계산
	부채비율	·재무제표의 경영지표(부채/자본)	2	200%이내(100%), 600%이상(0%), 200~600% 비율계산 ※자본잠식의 경우 '0'점 처리
	장기계약 매출 비중	·물류부문매출액 중 1년 이상 장기계약 매출액의 비율 - 종합물류, 국제물류주선, 물류창고, 화물운송 : 2자물류 및 3자물류 합계 - 화물정보망 : 차주회원의 회비 등의 합계	3	70%이상(100%), 이하 비율계산 ※예외 : 단, 계약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매분기 1회 이상씩 연간 12회 이상 지속적으로 매출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할 경우 장기계약으로 인정
	매출액대비 순이익률	·기업 전체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로 재무제표(손익계산서)상의 기업 총매출액과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며, 최근 3년간 평균값 적용	3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4% 이상(100%), 이하 비율계산

가. 확인자료

- 회계보고서상의 재무제표 사본(최근 3년간)
- 장기계약 증빙 : 화물운송계약서 또는 위수탁계약서
- 매출액 증빙 : 세금계산서(매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자기자본 이익률

-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 보유
- 투자된 자본을 사용하여 어느 정도 이익을 올리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기업의 이익창출능력으로 자기자본이익률(Return On Equity ; ROE = (당기순이익/자기자본) × 100) 최근 3년간 평균값 적용
- ※ 3년 미만 기업의 경우는 최근 2년으로 대체, 2년 미만 기업의 경우는 최근 1년으로 대체함
- ※ 이하 “최근 2년간 평균값 적용”시 2년 미만 기업의 경우 최근 1년으로 대체함

- 만점기준 : 자기자본이익률 대비 5% 기준(100%), 이하 비율 계산

- 산출식 : $가중치 \times 배점 \times \frac{Min(0.05, 자기자본이익률)}{0.05}$

- 산출사례

· 기업 A의 최근 3개 사업년도 자기자본 이익률이 평균 3.7%인 경우

· 평가점수 = $1 \times 2 \times \frac{Min(0.05, 0.037)}{0.05} = 1 \times 2 \times \frac{0.037}{0.05} = 1.48$

○ 부채비율

-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 보유
- 재무제표의 경영지표(부채/자본)
- 만점기준 : 부채비율 200% 이내

- 산출식(단위: %) : $가중치 \times 배점 \times \frac{Max\{0, Min(400, 600 - 부채비율)\}}{400}$

- 산출사례

· 기업 A의 부채비율이 300%

· 평가점수 = $1 \times 2 \times \frac{Max\{0, Min(400, 600 - 300)\}}{400} = 1 \times 2 \times \frac{Max(0, 300)}{400}$
 $= 1 \times 2 \times \frac{300}{400} = 1.5$

※ 자본잠식의 경우 “0”점 처리

※ 기존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에서 적용된 자본잠식률 30% 미만과 관련된 내용은 적용하지 않음

○ 장기계약 매출 비중

-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 보유
- 2자물류 및 3자물류 합계
- 원칙: 물류부문매출액 중 1년 이상 장기계약 매출액의 비율
- 예외 : 단, 계약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매분기 1회 이상씩 연간 12회 이상 지속적으로 매출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할 경우 장기계약으로 인정

※ 화물정보망기업은 1년 이상 장기가입한 차주회원의 회비납부 금액 등으로 산정

- 단, 사업영위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 연속 3개월 이상의 회비납부실적이 있는 차주회원을 대상으로 산정

- 만점기준 : 장기계약 매출액의 비율이 70% 이상

- 산출식 : $가중치 \times 배점 \times \frac{Min(0.7, \alpha/\beta)}{0.7}$, (단위 : 백만원)

· α = 장기계약매출액, β = 물류부문매출액

- 산출사례

· 기업 A의 장기계약 매출액 300억, 물류부문매출액 500억

· 평가점수 = $1 \times 3 \times \frac{Min(0.7, 30,000/50,000)}{0.7} = 1 \times 3 \times \frac{0.6}{0.7} = 2.57$

○ 매출액대비 순이익률

-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 보유
- 기업 전체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로 재무제표(손익계산서)상의 기업 총매출액과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며, 최근 3년간 평균값 적용
- 만점기준 : 매출액대비 순이익률 4% 이상

- 산출식 : $가중치 \times 배점 \times \frac{Min(0.04, \alpha/\beta)}{0.04}$, (단위: 백만원)

· α = 3년간 순이익합계, β = 3년간 기업 총매출액합계

- 산출사례

· 기업 A의 3년간 순이익 합계 50억, 3년간 기업 총매출액 합계 1,500억

· 평가점수 = $1 \times 3 \times \frac{Min(0.04, 5,000/150,000)}{0.04} \approx 1 \times 3 \times \frac{0.033}{0.04} = 2.5$

※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2. 사업 안정성”에 대해 평가하지 않음

3. 업무처리 역량 (10점)

3.1 인력확보 (6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지표	지표 의미	배점	평가기준/척도
인력 확보	전문인력 보유수준	·신청 물류기업의 전문인력 보유 수준(물류관련 자격증, 물류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등)	3	총종업원수 대비 5% 이상 만점, 이하 비율계산 ※다만, 총종업원수 400명 미만인 경우, 전문인력 20명 이상시 만점, 이하 비율계산
	교육시스템	·사내외 물류관련 교육 실적(외부기관교육 실적, 사내교육실적)	3	직원 1인당 물류관련 연간 평균교육시간이 10시간 이상, 이하 비율계산

가. 확인자료

-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자(종업원 수)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관련 자격증 사본, 학위수여증명서 등
- 직종별 교육훈련 계획서, 전 직원 교육이행실적표(명단, 이수교육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등), 교육경비지급영수증이나 위탁교육 계약서, 교육수료증 등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전문인력 보유수준
 - 전문인력 인정범위(공통) :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물류관련 유사자격증(CPIM(Certified in Production & Inventory Management), CPM(Certified Purchasing Manager), CPSM(Certified Professional in Supply Management),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Diploma, 보세사, 관세사, 해기사 등), 물류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물류와 관련된 학위논문/연구 등)
 - 동일인이 다수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전문인력수는 1인으로 산정
 - 만점기준
 - 총종업원수 대비 5% 이상 만점, 이하 비율계산
 - 다만, 총종업원수 400명 미만인 경우 20명 이상시 만점, 이하 비율계산
 - 산출식
 - 종업원수가 400명 이상인 경우 : $가중치 \times 배점 \times \frac{Min(0.05, \text{전문인력수} / \text{총종업원수})}{0.05}$
 - 종업원수가 400명 미만인 경우 : $가중치 \times 배점 \times \frac{Min(20, \text{전문인력수})}{20}$

- 산출사례

- 기업 A의 전문인력이 25명, 종업원수 1,000명인 경우
- 평가점수 = $1 \times 3 \times \frac{\text{Min}(0.05, 25/1,000)}{0.05} = 1 \times 3 \times \frac{0.025}{0.05} = 1.5$

○ 교육시스템

- 사내외 물류관련 교육 계획을 확인한 후 실적(외부기관교육실적, 사내교육실적) 평가
- 만점기준 : 연간인당평균교육시간이 10시간 이상인 경우
- 산출식 : $\text{가중치} \times \text{배점} \times \frac{\text{Min}(10, \text{평균교육시간})}{10}$
 - 평균교육시간 = 연간 물류관련 총교육시간/총종업원수
- 산출사례
 - 기업 A의 전체 종업원은 1,000명, 연간 물류관련 총교육시간 7,000시간
 - 평가점수 : $1 \times 3 \times \frac{\text{Min}(10, 7)}{10} = 2.1$

3.2 고객지원 역량 및 신인도 (4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지표	지표 의미	배점	평가기준/척도
고객지원 역량 및 신인도	관련 법규 준수도	· 최근 2년내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사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세부심사항목에 해당하는 점수(4점)를 차감함
	서비스 품질 평가체계	·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공유, 서비스 품질 평가 체계	4	5단계 척도 평가

가. 확인자료

-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이 없을 경우,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대표이사 직인 날인)
- 신청기업에서 관계기관(관세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발급자료를 제출
- 서비스 품질 고객만족도 조사 계획서 및 보고서, 고객만족도 조사 실적 등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관련 법규 준수도
 -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위 세부심사항목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점수를 차감함
 - 최근 2년내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서비스 품질 평가체계
 -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 보유

구분	평가 점수
일회적이며, 체계성이 결여	60~69%
고객만족도 조사가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실시함	70~79%
고객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직원과 공유함	80~89%
고객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업무개선에 활용	90~100%

※ 대체할 근거가 있을 경우 50% 이내 점수 부여

3.2 (정기 점검 평가기준) 고객지원 역량 및 신인도 (4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지표	지표 의미	배점	평가기준/척도
고객지원 역량 및 신인도	관련 법규 준수도	·최근 2년내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사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세부심사항목에 해당하는 점수(4점)를 차감함
	서비스 품질 평가체계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공유, 서비스 품질 평가 체계	2	5단계 척도 평가
	고객만족도	·소비자 불만신고 서면민원이 국토부, 해 수부 또는 인증심사대행기관에 3회 이상 제기된 경우	2	3회 이상 제기된 경우 해당 점수(2점) 차감

가. 확인자료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또는 인증심사대행기관에 제기된 소비자 불만신고 서면민원
 - 민원에 대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3회 이상인 경우 0점
- 2회, 1회 및 미제기시 2점 부여

Part 2. 우수물류기업 인증분야별 인증심사기준

V. 종합물류서비스기업

V. 종합물류서비스기업

□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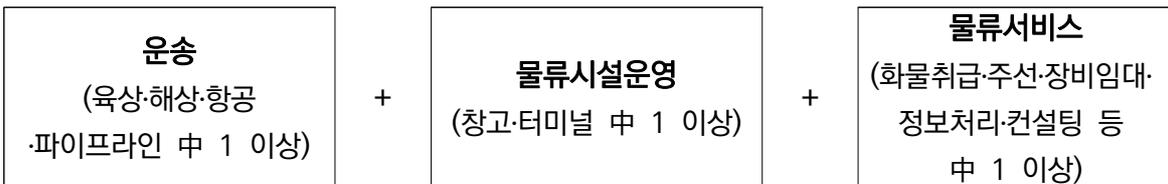
- 순수 2자 물류(물류자회사)는 배제하고, 단순규모보다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여부에 중점
- 종합물류서비스기업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자산형(운송·시설)과 서비스형(주선·컨설팅 서비스 등)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기준 마련

- 인증신청시 유형을 선택하지 않고 신청기업을 운송중심, 시설중심, 서비스중심 기준에 의해 모두 평가하고, 세 가지 기준에 의한 평가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해당 기업의 평가점수로 인정함

□ 필수요건

- 종합물류서비스기업의 방향성 제시
- 타항목별 기준이 충족되더라도 필수요건 미달시 인증불가

- 영위물류업종
 - 화주기업이 요구하는 종합물류서비스 제공여부
 - 화물운송업/물류시설운영업/물류서비스업 각각에 대하여 1개 이상의 세분류 업종을 영위해야 함



- ※ 인허가 업종인 경우 인허가증 사본, 법적 근거가 없는 자유업인 경우 매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세 실적 등 증빙자료 제출
- 업종 영위에 대한 인정기준은 해당 업종을 통해 발생시킨 매출에 근거하며, 물류관련 총 매출대비 비중이 3% 이상 또는 매출액 기준 3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해당 업종의 영위를 인정
- ※ 물류관련 총매출은 국내매출, 해외투자법인(해외자회사) 등의 매출을 모두 인정하며, 해외투자법인의 매출은 소유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인정(손회사는 인정 안됨, 이하 모든 인증평가기준에 동일하게 적용됨)

○ 제3자 물류매출비중

- 물류전문기업으로서 제3자 물류 지향성
 - 물류부문 매출액 중 3자물류 매출 비중이 40% 이상(우수물류기업의인증등에관한규칙별표우수물류기업인증기준5.종합물류서비스기업나목3항)
 - 3자물류 인정기준(이하 모든 3자물류 관련항목에 적용)
 - 원 칙 : “제3자물류”라 함은 물류기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화주와 1년 이상의 기간동안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물류활동을 말함(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및 영 제2조)
 - 예 외 : 단, 계약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매분기 1회 이상씩 연간 12회 이상 지속적으로 매출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할 경우 장기계약으로 인정
- ※ 3자물류 매출은 국내매출, 해외투자법인(해외자회사) 등의 매출 중 3자물류 인정기준을 만족하는 매출이며, 해외투자법인의 3자물류 매출은 소유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인정(손회사는 인정 안됨)

□ 종합물류서비스기업 인증분야의 심사항목 체계 (배점: 75점)

심사항목 및 배점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		평가지표	배점			신규	정기
					운송	시설	서비스		
1. 다양성	25	1.1 네트워크	12	1.1.1 국내거점수	6	6	6	○	○
				1.1.2 해외거점수	6	6	6	○	○
		1.2 매출구조	5	1.2.1 영위업종수	5	5	5	○	○
				1.3 대상고객	8	1.3.1 고객수	4	4	4
		1.3.2 최대고객 매출비중	4			4	4	○	○
2. 기업규모	30 / 20	2.1 자산	15 / 10	2.1.1 투자자본금	4	4	4	○	○
				2.1.2 운송수단	6	3	2	○	○
				2.1.3 시설	3	6	2	○	○
				2.1.4 기타 물류자산	2	2	2	○	○
		2.2 매출	15 / 10	2.2.1 물류사업 총매출액	6	6	4	○	○
				2.2.2 3자물류 매출액	5	5	3	○	○
				2.2.3 일괄위탁 물류매출액	4	4	3	○	○
3. 발전가능성	20 / 30	3.1 제3자물류화	13 / 15	3.1.1 3자물류 매출비중	6	6	4	○	○
				3.1.2 3자물류 매출비중 증가율	3	3	4	○	○
				3.1.3 일괄위탁 매출비중	2	2	4	○	○
				3.1.4 일괄위탁 매출비중 증가율	2	2	3	○	○
		3.2 국제화	4 / 8	3.2.1 해외투자규모	2	2	4	○	○
				3.2.2 해외매출실적	2	2	4	○	○
		3.3 정보화	3 / 7	3.3.1 정보시스템자산보유액	1	1	3	○	○
				3.3.2 매출액 대비 정보화 (R&D포함)투자율	1	1	3	○	○
				3.3.3 화물운송추적서비스	1	1	1	○	○

□ 종합물류서비스기업 인증분야의 평가지표 (배점: 75점)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 항목 (배점)	평가지표	배점			지표의미/평가기준/척도	확인자료
			운송	시설	서비스		
1. 다양성 (25)	1.1 네트워크 (12)	1.1.1 국내거점수	6	6	6	-물류거점이 5개 광역시/도에 걸쳐 10개 이상 존재할 경우 만점	-국내거점수를 나타내는 서류
		1.1.2 해외거점수	6	6	6	-3개국이상 5개거점 이상 존재할 경우 만점. 관계기업(자,손회사)의 모든 해외거점을 인정	-해외거점수를 나타내는 서류
	1.2 매출구조 (5)	1.2.1 영위업종수	5	5	5	-물류사업 세분류 중 5개 업종 이상을 영위하는 경우(각 세분류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물류사업매출의 3% 또는 30억원 이상인 경우만 인정됨)	-영위업종에 대한 허가/등록증 등의 서류 -매출증빙서류
	1.3 대상고객 (8)	1.3.1 고객수	4	4	4	-최근 사업연도에 매출을 발생시킨 고객수로 10개사 이상 만점	-각종 계약서 등 고객수를 나타내는 서류
		1.3.2 최대고객 매출비중	4	4	4	-신청기업의 최대고객 매출비중으로 최대고객매출액/물류부문총매출액이 20%이하인 경우 만점	-최대고객 매출비율을 나타내는 서류
2. 기업규모 (30/20)	2.1 자산 (15/10)	2.1.1 투자자본금	4	4	4	-결산보고서(재무제표)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제자본유입이 있는 자본금 성격의 준비금	-재무제표 등 자본금 현황 파악이 가능한 공증된 문서
		2.1.2 운송수단	6	3	2	-신청기업의 운송수단 수 (차량, 선박, 파이프라인)	-자동차등록원부, 자산보조부원장 등
		2.1.3 시설	3	6	2	-신청기업의 물류거점 수 (자가소유 및 임대시설)	-해당시설에 대한 사진, 등기부등본, 계약서 등
		2.1.4 기타 물류자산	2	2	2	-물류부문 유형고정자산 -(운송수단+시설)	-자산 계정과목별 보조부원장 등
	2.2 매출 (15/10)	2.2.1 물류사업 총매출액	6	6	4	-신청기업의 물류사업의 총매출액의 합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등
		2.2.2 3자물류 매출액	5	5	3	-신청기업의 3자물류 매출액합	-각종계약서, 매출액 증빙 등의 서류
		2.2.3 일괄위탁 물류매출액	4	4	3	-신청기업의 2개 이상의 물류서비스 제공 매출액합	-각종계약서, 매출액 증빙 등의 서류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배점			지표의미/평가기준/척도	확인자료
			운송	시설	서비스		
3. 발전가능성 (20/30)	3.1 제3자 물류화 (13/15)	3.1.1 3자물류 매출비중	6	6	4	-물류부문매출액 중 3자물류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이면 만점	-각종계약서, 매출액 증빙 등의 서류
		3.1.2 3자물류 매출비중 증가율	3	3	4	-3자물류매출액/물류부문매출액 비중이 50% 이상, 또는 -3자물류매출액/물류부문매출액 비중이 50% 미만인 경우는 전년대비증가율이 5% 이상이면 만점	-각종계약서, 매출액 증빙 등의 서류 (최근 3개 사업년도)
		3.1.3 일괄위탁 매출비중	2	2	4	-3자물류매출액 중 일괄위탁물류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이면 만점	-각종계약서, 매출액 증빙 등의 서류
		3.1.4 일괄위탁 매출비중 증가율	2	2	3	-일괄물류매출액/3자물류매출액 비중이 50% 이상, 또는 -일괄물류매출액/3자물류매출액 비중이 50% 미만인 경우는 전년대비증가율이 5% 이상이면 만점	-각종계약서, 매출액 증빙 등의 서류 (최근 3개 사업년도)
	3.2 국제화 (4/8)	3.2.1 해외투자규모	2	2	4	-현지법인, 해외지점, 해외합작 투자에 대한 투자지분으로 미화 500만달러 이상이면 만점	-최근 재무제표, 출자증명서 등의 서류
		3.2.2 해외매출실적	2	2	4	-현지법인 매출 + 해외지점 매출 + 국내법인이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수주한 3국간 매출로 미화 500만달러 이상이면 만점	-최근 재무제표 등의 서류
	3.3 정보화 (3/7)	3.3.1 정보시스템 자산보유액	1	1	3	-자산 계정과목별 보조부원장에서 정보화자산의 당기 미상각잔액 합계로 50억원 이상이면 만점	-자산 계정과목별 보조부원장, 프로그램 개발용역 대금지급 서류 등
		3.3.2 매출액 대비 정보화(R&D 포함)투자율	1	1	3	-최근 3년간 평균 정보화, 교육 및 R&D부문에 대한 총투자액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정보화투자액 / 최근 3년간 평균 물류부문매출액 기준 : 2%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평균 정보화투자액 기준 : 10억 이상	-재무제표 등 -연간 정보화, 교육 및 R&D부문에 대한 총투자액
		3.3.3 화물운송추적 서비스	1	1	1	-실시간 위치추적 가능한 서비스 제공 여부	-화물운송추적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에 대한 제출 자료

1. 다양성 (25점)

1.1 네트워크 (12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지표	지표 의미	가중치	배점			평가기준/척도
				운송 중심	시설 중심	서비스 중심	
네트워크	국내거점수	·신청기업의 국내 물류거점 수	1.0	6	6	6	5개시도이상 10개거점 이상(100%) 만점 ※ 산출식: 총배점 × [Min(5,지역수)/5 + Min(10,거점수)/10]/2
	해외거점수	·신청기업의 해외 물류거점 수	1.0	6	6	6	3개국이상 5개거점 이상(100%) 만점 ※ 산출식: 총배점 × [Min(3,지역수)/3 + Min(5,거점수)/5]/2

1.1.1 국내거점수

가. 확인자료

- 관련 거점시설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첨부
 -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물류거점인 경우
 - 물류시설 증빙 : 자가인 경우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건물(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 상시근로자 증빙 : 인사발령 서류,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 상시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는 물류거점 또는 지점, 서비스센터, 영업소, 사무소 등
 - 사업장 증빙 : 법인등기부등본(지점에 관한 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기타 허가(등록, 신고, 면허)증
 - 물류시설 증빙 : 자가인 경우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건물(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 매출 증빙 : 세금계산서, 납세증명서 등
- ※ 자회사 및 손회사는 인정 안됨. 단, 관련법규에 의거 신규법인 신설이 필수일 경우 인정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지역수 : 행정구역상 특별시·광역시·도를 의미함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거점수 : 동일지역내 다수 거점도 인정
 -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물류거점은 매출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항상 인정
 - 단, 물류거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 첨부, 향후 실사 등을 통해 확인
 - 상시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는 물류거점이나, 지점, 서비스센터, 영업소, 사무소 등은 매출발생여부를 증명해야 함
- 만점기준 : 물류거점이 5개 광역시/도에 걸쳐 10개 이상 존재할 경우 만점, 이는 총배점의 1/2은 지역수에, 나머지 1/2은 거점수에 배분하는 것으로 동일지역내 다수거점도 인정함
- 산출식 : $가중치 \times 배점 \times \frac{\{Min(5, 지역수)/5 + Min(10, 거점수)/10\}}{2}$
- 산출사례
 - 기업 A는 경기도에 2개 거점, 울산광역시에 1개 거점, 경상남도에 3개 거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즉 3개지역에 총 6개 거점을 보유한 경우
 - 평가점수 = $1 \times 6 \times \frac{\{Min(5, 3)/5 + Min(10, 6)/10\}}{2} = 1 \times 6 \times \frac{(3/5 + 6/10)}{2} = 3.6$
 - 이 사례에서는 운송·시설·서비스 중심과 관계없이 모두 평가점수는 '3.6'점이 됨

1.1.2 해외거점수

- ※ 해외거점은 국내법인의 해외지사(지점, 사무소)나 해외법인(자회사, 손회사 인정)을 포괄함
- ※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물류거점은 매출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인정기준을 만족하면 항상 인정. 단, 물류거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 첨부
- ※ 상시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는 물류거점이나, 해외지점, 해외사무소 등은 매출발생여부를 증명해야 함(매출이 직접 발생하지 않을 경우 관련 영업서류 등을 준비해야 함)

가. 확인자료

- 관련 거점시설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첨부
-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 현지법인
 - 사업장 증빙 : 현지법인의 등기부 등본 또는 공증서(중국의 경우 영업집조나 비준증서)
 - 매출발생 증빙 : 현지법인의 최근 결산서 등
 - 해외지사
 - 사업장 증빙 :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 등 지사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매출발생 증빙 : 최근 결산서, 영업서류 등

-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해외지사 등)
 - 사업장 증빙 :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 등 지사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시설증빙 : 자가인 경우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타가인 경우 건물(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외환거래법상의 구분

- 현지법인 : 외국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영참가를 목적으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즉 합작투자도 포함
 - * 외환거래법상의 해외직접투자(외환거래법 제3조, 동시행령 제7조)
- 해외지사
 - 해외지점 :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설치
 외항운송업자(외환거래규정제1-2조제16호)의 경우는 독립채산제 제외됨
 - 해외사무소 :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등의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거나 비영리단체(종교단체를 포함한다)가 국외에서 당해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 * 외환거래규정상외의 해외지사(외환거래규정 제9-17조)

- 지역수 : 국내기업의 물류거점이 있는 국가의 수를 의미함
- 거점수
 - 매출액이 발생하는 물류시설, 해외법인, 해외지사
 -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물류시설 1,500㎡(연면적) 이상을 보유(확보)한 경우
- 만점기준 : 3개국이상 5개거점 이상(100%) 만점, 이는 총배점의 1/2은 지역수에, 나머지 1/2은 거점수에 배분한 것으로 동일국내 다수거점도 인정함
- 산출식 : $가중치 \times 배점 \times \frac{\{Min(3, 지역수)/3 + Min(5, 거점수)/5\}}{2}$
- 산출사례
 - 기업 A는 중국에 1개 현지법인과 1개 지사, 일본에 1개 지사, 미국에 1개 현지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즉 3개국에 4개거점을 보유한 경우
 - 평가점수 = $1 \times 6 \times \frac{\{Min(3, 3)/2 + Min(5, 4)/5\}}{2} = 1 \times 6 \times \frac{\{3/3 + 4/5\}}{2} = 5.4$
 - 이 사례에서는 운송·시설·서비스 중심과 관계없이 모두 평가점수는 '5.4'점이 됨

1.2 매출구조 (5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지표	지표 의미	가중치	배점			평가기준/척도
				운송 중심	시설 중심	서비스 중심	
매출구조	영위업종수	·신청기업의 물류사업 영위업종수	1.0	5	5	5	세분류 기준 5개이상(100%)

가. 확인자료

- 업종 증빙 : 법인등기부등본이나 해당지점의 사업자등록증, 각종 허가증
- 업종별 매출 증빙 : 세금계산서 등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물류사업의 종류 중 각 세분류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물류사업 매출의 3% 또는 30억원 이상인 경우만 인정됨(※ 미달시 인증 불가)

※ 물류사업의 범위

대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화물 운송업	육상화물운송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철도사업
	해상화물운송업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내항화물운송사업
	항공화물운송업	정기항공운송사업, 부정기항공운송사업, 상업서류송달업
	파이프라인운송업	파이프라인운송업
물류시설 운영업	창고업 (공동집배송센터운영업 포함)	일반창고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농·수산물 창고업, 위험물품보관업, 그 밖의 창고업
	물류터미널운영업	복합물류터미널, 일반물류터미널, 해상터미널, 공항화물터미널, 화물차전용터미널, 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 컨테이너장치장(CY), 물류단지, 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의 운영업
물류 서비스업	화물취급업(하역업 포함)	화물의 하역, 포장, 가공, 조립, 상표부착, 프로그램 설치, 품질검사 등 부가적인 물류업
	화물주선업	국제물류주선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물류장비임대업	운송장비임대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운반용기 임대업, 화물자동차임대업, 화물선박임대업, 화물항공기임대업, 운반·적치·하역 장비 임대업, 컨테이너·파렛트 등 포장용기 임대업, 선박대여업
	물류정보처리업	물류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물류지원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물류 관련 전자문서 처리업
	물류컨설팅업	물류 관련 업무프로세스 개선 관련 컨설팅, 자동창고, 물류자동화 설비 등 도입 관련 컨설팅, 물류 관련 정보시스템 도입 관련 컨설팅
	해운부대사업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
	항만운송관련업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 컨테이너 수리업, 예선업
	항만운송사업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
종합물류 서비스업	종합물류서비스업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 1)물류사업의 범위(법 제2조 제2항 및 영 제3조 관련)

- 세금계산서 등에 다수 업종에 대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리적인 기준(서비스 별 원가산정기준 등)을 기업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계산함. 심사단은 그 기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평가 수행함
- 만점기준 : 물류사업 세분류 중 5개 업종 이상을 영위하는 경우(각 세분류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물류사업매출의 3% 또는 30억원 이상인 경우만 인정됨)
- 산출식 : $\text{가중치} \times \text{배점} \times \frac{\text{Min}(5, \text{영위업종수})}{5}$
- 산출사례
 - 기업 A가 영위하는 6개의 업종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대분류	세분류	매출액(백만원)	업종별매출액/총매출액
화물 운송업	육상화물운송업	400	40.00%
	해상화물운송업	420	42.00%
	항공화물운송업	0	0.00%
	파이프라인운송업	0	0.00%
물류시설 운영업	창고업 (공동집배송센터운영업 포함)	10	1.00%
	물류터미널운영업	30	3.00%
물류 서비스업	화물취급업(하역업 포함)	120	12.00%
	화물주선업	0	0.00%
	물류장비임대업	0	0.00%
	물류정보처리업	20	2.00%
	물류컨설팅업	0	0.00%
	해운부대사업	0	0.00%
	항만운송관련업	0	0.00%
	항만운송사업	0	0.00%
합계(물류부문)		1,000	100.00%

※ 합계가 이후 총매출액으로 이용되므로, 업종 인정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매출이 발생하는 세분류 업종은 모두 입력해야 함

- 인정되는 영위업종
 - 매출액기준(30억이상) : 육상화물운송업, 해상화물운송업, 물류터미널운영업, 화물취급업
 - 업종별매출/총매출(3%이상) : 육상화물운송업, 해상화물운송업, 물류터미널운영업, 화물취급업
 - 따라서 창고업과 물류정보처리업을 제외한 4개 업종만 영위업종수로 인정됨
- 평가점수 = $1 \times 5 \times \frac{\text{Min}(5, 4)}{5} = 1 \times 5 \times \frac{4}{5} = 4$
- 이 사례에서는 운송·시설·서비스 중심과 관계없이 모두 평가점수는 '4'점이 됨

1.3 대상고객 (8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지표	지표 의미	가중치	배점			평가기준/척도
				운송 중심	시설 중심	서비스 중심	
대상고객	고객수	·최근 사업연도에 매출을 발생시킨 고객수	1.0	4	4	4	10사 이상(100%), 이하 비율계산
	최대고객 매출비중	·신청기업의 최대 고객 매출비중	1.0	4	4	4	20%이하(100%), 나머지 비율계산

1.3.1 고객수

가. 확인자료

- 고객 증빙 : 화물운송계약서 또는 위수탁계약서(고객별로 분리하여 준비, 확인요청시 제출)
- 매출 증빙 : 세금계산서(매출)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원칙 : 다음사항 모두 만족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
 - 계약기간이 직전사업년도 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관계기업과의 거래실적 포함)
- 예외 : 단, 계약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매분기 1회 이상씩 연간 12회 이상 지속적으로 매출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할 경우 장기계약으로 인정(제3자물류를 포함한 이하 모든 장기계약 관련 항목에 적용)
- 만점기준 : 10개사 이상 만점
- 산출식 : $가중치 \times 배점 \times \frac{Min(10, 고객수)}{10}$
- 산출사례
 - 기업 A가 1년이상 장기계약을 맺은 고객이 9개사인 경우
 - 평가점수 = $1 \times 4 \times \frac{Min(10, 9)}{10} = 1 \times 4 \times \frac{9}{10} = 3.6$
 - 이 사례에서는 운송·시설·서비스 중심과 관계없이 모두 평가점수는 '3.6'점이 됨

1.3.2 최대고객 매출비중

가. 확인자료

- 고객수 산정 시 제출된 서류로 대체 가능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최근 사업년도 또는 과세년도에 매출을 가장 많이 발생시킨 최대고객
- 계약기간과 무관함
-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관계기업과의 거래실적 포함)
- 만점기준 : 최대고객매출액/물류부문총매출액이 20%이하인 경우
- 산출식 : 가중치 × 배점 × $\frac{1 - \{Max(0.2, \text{최대고객매출액}/\text{물류부문총매출액})\}}{0.8}$
- 산출사례
 - 기업 A의 물류부문총매출액이 500억이고, 최대고객인 기업 B에 대한 매출액이 150억인 경우
 - 평가점수 = $1 \times 4 \times \frac{1 - \{Max(0.2, 150/500)\}}{0.8} = 1 \times 4 \times \frac{1 - Max(0.2, 0.3)}{0.8}$
 $= 1 \times 4 \times \frac{1 - 0.3}{0.8} = 3.5$
 - 이 사례에서는 운송·시설·서비스 중심과 관계없이 모두 평가점수는 '3.5'점이 됨

2. 기업규모 (30점/20점)

2.1 자산 (15점/10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지표	지표 의미	가중치	배점			평가기준/척도	
				운송 중심	시설 중심	서비스 중심		
자산	투자자본금	·결산보고서(재무제표)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제자본유입 이 있는 자본금 성격의 준비금	1.0	4	4	4	〈운송/시설중심〉100억이상 (100%), 이하 비율계산 〈서비스중심〉50억이상 (100%), 이하 비율계산	
	운송수단	·신청기업의 운송수단 수 (차량, 선박, 파이프 라인)	보유	1.0	6	3	2	〈운송/시설중심〉사업용 차량 기준 1000대 이상(100%), 이하 비율계산 〈서비스중심〉사업용 차량기 준 500대 이상(100%), 이 하 비율계산 주) 선박300DWT, 항공기 화물적재 1톤당, 파이프라인 10km당 차량 1대 환산
			확보					
	시설	·신청기업의 물류거점 수 (자가소유 및 임대시설)	보유	1.0	3	6	2	〈운송/시설중심〉20만㎡이상 (100%), 이하 비율계산 〈서비스중심〉10만㎡이상 (100%), 이하 비율계산
			확보					
기타 물류자산	·물류부문 유형고정자산 -(운송수단+시 설)	보유	1.0	2	2	2	〈운송/시설중심〉100억원이 상(100%), 이하 비율계산 〈서비스중심〉50억원이상 (100%), 이하 비율계산	
		확보						0.8

2.1.1 투자자본금

가. 확인자료

- 재무제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등 자본금 현황 파악이 가능한 공증된 문서
- 결산보고서(재무제표)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제자본유입이 있는 자본금 성격의 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이익준비금, 기업합리화적립금, 자산재평가적립금, 시설적립금, 기업발전적립금 등 각종 적립금 등 포함)
- 결손금은 포함
- 다만 처분전 이익잉여금은 제외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만점기준

- 운송·시설중심 : 100억이상
- 서비스중심 : 50억이상

○ 산출식

- 운송·시설중심 : $\text{가중치} \times \text{배점} \times \frac{\text{Min}(10,000, \text{투자자본금})}{10,000}$, (단위: 백만원)
- 서비스중심 : $\text{가중치} \times \text{배점} \times \frac{\text{Min}(5,000, \text{투자자본금})}{5,000}$, (단위: 백만원)

○ 산출사례

- 기업 A의 투자자본금이 80억일 경우
- 평가점수

· 운송·시설중심 평가점수 = $1 \times 4 \times \frac{\text{Min}(10,000, 8,000)}{10,000} = 1 \times 4 \times \frac{8,000}{10,000} = 3.2$

· 서비스중심 평가점수 = $1 \times 4 \times \frac{\text{Min}(5,000, 8,000)}{5,000} = 1 \times 4 \times \frac{5,000}{5,000} = 4$

- 이 사례에서는 운송·시설의 경우는 '3.2점', 서비스중심일 경우 '4'점이 됨

2.1.2 운송수단

가. 확인자료

구분	보유	확보
화물차	자동차등록원부, 자산 보조부원장	지입계약서, 리스계약서 등
선박	자산 보조부원장	용선계약서, 리스계약서 등
항공기	자산 보조부원장	리스계약서 등
파이프라인	자산 보조부원장	리스계약서 등

※ "보유"의 경우는 해당 자산에 대한 자산취득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서류 준비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보유와 확보에 다른 가중치(보유 1, 확보 0.8)를 부여함

- 화물차량: 지입(차량등록 명의 보유분만 인정) 또는 리스의 경우 확보로 인정
- 선박: 1년 이상 장기임대(리스 포함)의 경우 확보로 인정

- 운송수단의 환산기준 : 5~8톤미만 화물차(보유 및 확보 모두에 적용)
 - 화물차량 환산표

톤 구분		반영비율
1톤 미만		30%
1-3톤 미만		57%
3-5톤 미만		87%
5-8톤 미만		100%
8-10톤 미만		150%
10-12톤 미만		188%
12톤 이상		195%
트레일러 (샤시)	20ft	50%
	40ft	62%
	평판	74%
철도차량(화물용)		200%

※ 트렉터(헤드)와 트레일러(샤시)를 1:1로 묶어서 1대로 계산하고, 여분의 트레일러(샤시)만 20ft, 40ft, 평판으로 구분하여 별도 계산함

- 선박 환산기준 : 300DWT를 화물차환산표의 5-8톤미만차량 1대로 간주
- 항공기 환산기준 : 적재능력 1톤을 화물차환산표의 5-8톤미만 차량 1대로 간주
- 파이프라인 환산기준 : 송유관 10km를 기준으로 배관의 규격에 따라 가중치 별도 부여. 배관용량 200kl당 화물차환산표 5-8톤미만 차량 1대로 간주, 이는 20kl 유조차의 10대 용량을 차량 1대로 환산(20kl × 10대 = 200kl)

규격	연장	평균용량(kl)	반영비율
5인치미만	10km	46.42	0.23%
5~10인치미만		299.65	1.50%
10~15인치미만		806.10	4.03%
15~20인치미만		1565.78	7.83%
20~25인치미만		2578.68	12.89%
25인치이상		3844.80	19.22%

- 만점기준
 - 운송·시설중심 : 1,000대 이상
 - 서비스중심 : 500대 이상
- 산출식
 - 운송·시설중심 : 배점 × $\frac{\text{Min}(1,000, \text{총운송수단 환산대수})}{1,000}$
 - 서비스중심 : 배점 × $\frac{\text{Min}(500, \text{총운송수단 환산대수})}{500}$
 - 총운송수단 환산대수 = 화물차 환산대수 + 선박 환산대수 + 항공기 환산대수 + 파이프라인 환산대수

○ 산출사례

- 기업 A의 확보 및 보유 운송수단 현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 총운송수단은 806.32대임
- 화물차 보유 150대, 확보 170대의 경우, 환산비율에 따라 환산하는 경우 총 362.32대임

톤 구분	가중치		대수		가중치 환산대수 ($e=a \times c+b \times d$)	환산비율 (f)	총환산대수 ($e \times f$)
	보유 (a)	확보 (b)	보유 (c)	확보 (d)			
1톤 미만	1	0.8	0	0	0	0.30	0.00
1-3톤 미만	1	0.8	0	20	16	0.57	9.12
3-5톤 미만	1	0.8	0	20	16	0.87	13.92
5-8톤 미만	1	0.8	20	20	36	1.00	36.00
8-10톤 미만	1	0.8	50	50	90	1.50	135.00
10-12톤 미만	1	0.8	20	20	36	1.88	67.68
12톤 이상	1	0.8	20	20	36	1.95	70.20
트레일러 (샤시)	20ft	1	0.8	20	20	0.50	18.00
	40ft	1	0.8	20	0	0.62	12.40
	평판	1	0.8	0	0	0.74	0.00
합계			150	170	286	-	362.32

- 선박 보유 2대(3만톤급 1대, 5만톤급 1대), 확보 1대(5만톤급)의 경우, 환산비율에 따라 환산하는 경우, 총 400대임

톤(DWT)구분 (f)	가중치		대수		가중치 환산대수 ($e=a \times c+b \times d$)	화물용량 ($g=e \times f$)	환산비율 (h)	총환산대수 ($i=g \times h$)
	보유 (a)	확보 (b)	보유 (c)	확보 (d)				
DWT 30,000급	1	0.8	1	0	1	30,000	1/300	100
DWT 50,000급	1	0.8	1	1	1.8	90,000	1/300	300
합계			2	1	2.8	120,000	1/300	400

- 항공기 보유 1대(화물적재용량 20톤), 확보 1대(30톤)의 경우, 환산비율에 따라 환산하는 경우, 총 44대임

톤구분 (f)	가중치		대수		가중치 환산대수 ($e=a \times c+b \times d$)	화물용량 ($g=e \times f$)	환산비율 (h)	총환산대수 ($i=g \times h$)
	보유 (a)	확보 (b)	보유 (c)	확보 (d)				
20톤	1	0.8	1	0	1	20	1	20
30톤	1	0.8	0	1	0.8	24	1	24
합계			1	1	1.8	44	1	44

- 평가점수

- 운송중심 평가점수 = $6 \times \frac{\text{Min}(1,000, 806.32)}{1,000} = 6 \times \frac{806.32}{1,000} = 4.84$
- 시설중심 평가점수 = $3 \times \frac{\text{Min}(1,000, 806.32)}{1,000} = 3 \times \frac{806.32}{1,000} = 2.42$
- 서비스중심 평가점수 = $2 \times \frac{\text{Min}(500, 806.32)}{500} = 2 \times \frac{500}{500} = 2$

2.1.3 시설

가. 확인자료

- 시설의 경우 보유, 확보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시설에 대한 사진 첨부
- 보유 :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등
- 확보 : 건물(토지) 임대차계약서(인지가 붙은 계약서) 등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시설범위 : 배송센터, 일반창고, 야적장, 창고지, CY 등 물류시설
- 자가소유는 보유, 장기임대(1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는 확보
- 신청일이 계약기간에 포함된 계약만 인정
- 면적계산 : 연면적 기준(㎡)
 - 배송센터, 일반창고, 화물터미널은 가중치 1.0
 - 야적장, 창고지, 사설CY(관세청 미등록 CY)는 가중치 0.5
 - 관세청등록 CY(항만배후부지, 내륙컨테이너터미널, 철도배후부지 등의 CY)는 1.0
 - CFS의 경우, 창고부분가중치 1.0, 컨테이너야적장은 0.5(관세청 등록의 경우 관세청 등록 CY에 함께 기록)
 - 기타 물류시설은 가중치 0.5
- 만점기준
 - 운송시설중심 : 20만㎡ 이상
 - 서비스중심 : 10만㎡ 이상
- 산출식
 - 운송시설중심 : 배점 $\times \frac{\text{Min}(200,000, \text{총시설 환산면적})}{200,000}$
 - 서비스중심 : 배점 $\times \frac{\text{Min}(100,000, \text{총시설 환산면적})}{100,000}$

○ 산출사례

- 기업 A의 보유 및 확보 시설면적이 다음과 같을 때, 총시설 환산면적은 85,500㎡임

구분	가중치		면적		가중치 환산면적 (e=a×c+b×d)	환산계수 (f)	총환산면적 (g=e×f)	
	보유 (a)	확보 (b)	보유 (c)	확보 (d)				
배송센터	1	0.8	10,000	10,000	18,000	1	18,000	
일반창고	1	0.8	10,000	10,000	18,000	1	18,000	
야적장	1	0.8	20,000	20,000	36,000	0.5	18,000	
차고지	1	0.8	10,000	10,000	18,000	0.5	9,000	
CY	항만배후부지	1	0.8	0	5,000	4,000	1	4,000
	내륙컨터미널	1	0.8	0	5,000	4,000	1	4,000
	사설	1	0.8	5,000	0	5,000	0.5	2,500
CFS	창고	1	0.8	0	10,000	8,000	1	8,000
	야적장	1	0.8	0	10,000	8,000	0.5	4,000
합계			55,000	80,000	119,000	-	85,500	

- 평가점수

· 운송중심 평가점수 = $3 \times \frac{\text{Min}(200,000, 85,500)}{200,000} = 3 \times \frac{85,500}{200,000} = 1.28$

· 시설중심 평가점수 = $6 \times \frac{\text{Min}(200,000, 85,500)}{200,000} = 6 \times \frac{85,500}{200,000} = 2.57$

· 서비스중심 평가점수 = $2 \times \frac{\text{Min}(100,000, 85,500)}{100,000} = 2 \times \frac{85,500}{100,000} = 1.71$

2.1.4 기타 물류자산

가. 확인자료

○ 자산 계정과목별 보조부원장 등

※ 기업현황보고서 작성(물류관련 자산목록만)하여 제출하고, 심사위원이 실사를 통해 자산 계정과목별 보조부원장을 확인하는 방법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기타물류자산 = 물류부문 유형고정자산 - (운송수단+시설)
- 자산 계정과목별 보조부원장상에서 물류자산에 해당하는 자산만 분류함
- 자산 계정과목별 보조부원장(기타물류자산)의 당기 미상각잔액의 합계
- 만점기준
 - 운송·시설중심 : 100억 이상
 - 서비스중심 : 50억 이상

○ 산출식

- 운송·시설중심 : $\text{가중치} \times \text{배점} \times \frac{\text{Min}(10,000, \text{기타물류자산})}{10,000}$, (단위 : 백만원)

- 서비스중심 : $\text{가중치} \times \text{배점} \times \frac{\text{Min}(5,000, \text{기타물류자산})}{5,000}$, (단위 : 백만원)

○ 산출사례

- 기업 A의 기타물류자산액이 70억인 경우

- 평가점수

· 운송·시설중심 평가점수 = $1 \times 2 \times \frac{\text{Min}(10,000, 7,000)}{10,000} = 1 \times 2 \times \frac{7,000}{10,000} = 1.4$

· 서비스중심 평가점수 = $1 \times 2 \times \frac{\text{Min}(5,000, 7,000)}{5,000} = 1 \times 2 \times \frac{5,000}{5,000} = 2$

2.2 매출 (15점/10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지표	지표 의미	가중치	배점			평가기준/척도
				운송 중심	시설 중심	서비스 중심	
매출	물류사업 총매출액	·신청기업의 물류사업의 총매출액의 합	1.0	6	6	4	1,000억이상(100%), 이하 비율계산
	3자물류 매출액	·신청기업의 3자물류 매출액합	1.0	5	5	3	500억이상(100%), 이하 비율계산
	일괄위탁 물류매출액	·신청기업의 2개이상의 물류서비스 제공 매출액합	1.0	4	4	3	250억이상(100%), 이하 비율계산

2.2.1 물류사업 총매출액

가. 확인자료

-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등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물류분야 매출만 적용, 상품매출 등 제외
- 만점기준 : 1,000억 이상
 - 운송·시설·서비스중심과 관계없이 만점기준 동일

- 산출식 : $\text{가중치} \times \text{배점} \times \frac{\text{Min}(100,000, \text{물류부문 매출액})}{100,000}$, (단위 : 백만원)
- 산출사례
 - 기업 A의 물류부문매출액이 500억인 경우
 - 평가점수
 - 운송·시설중심 평가점수 = $1 \times 6 \times \frac{\text{Min}(100,000, 50,000)}{100,000} = 1 \times 6 \times \frac{50,000}{100,000} = 3$
 - 서비스중심 평가점수 = $1 \times 4 \times \frac{\text{Min}(100,000, 50,000)}{100,000} = 1 \times 4 \times \frac{50,000}{100,000} = 2$

2.2.2 3자물류 매출액

가. 확인자료

- 장기위탁계약 증빙 : 화물운송계약서 또는 위수탁계약서
- 매출액 증빙 : 세금계산서(매출)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3자물류 인정기준: 특수관계인(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을 제외한 제3의 화주와 1년 이상 장기위탁계약에서 발생한 매출액
 - ※ 위수탁계약서상 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합계
 - ※ **전체 물류사업 총매출액 중 제3자물류의 매출액 비율이 40% 미만일 경우 인증 불가**
- 만점기준 : 500억 이상
 - 운송·시설·서비스중심과 관계없이 만점기준 동일
- 산출식 : $\text{가중치} \times \text{배점} \times \frac{\text{Min}(50,000, \text{3자물류 매출액})}{50,000}$, (단위 : 백만원)
- 산출사례
 - 기업 A의 3자물류매출액이 200억인 경우
 - 평가점수
 - 운송·시설중심 평가점수 = $1 \times 5 \times \frac{\text{Min}(50,000, 20,000)}{50,000} = 1 \times 5 \times \frac{20,000}{50,000} = 2.0$
 - 서비스중심 평가점수 = $1 \times 3 \times \frac{\text{Min}(50,000, 20,000)}{50,000} = 1 \times 3 \times \frac{20,000}{50,000} = 1.2$

2.2.3 일괄위탁 물류매출액

가. 확인자료

- 일괄위탁계약 증빙 : 화물운송계약서 또는 위수탁계약서
- 매출액 증빙 : 세금계산서(매출)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3자물류 인정기준을 만족하면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의한 물류사업 중 2가지 이상의 물류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매출액
 ※ 위수탁계약서상 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합계

- 만점기준 : 250억 이상

- 운송·시설·서비스중심과 관계없이 만점기준 동일

- 산출식 : $\text{가중치} \times \text{배점} \times \frac{\text{Min}(25,000, \text{일괄위탁물류 매출액})}{25,000}$, (단위 : 백만원)

- 산출사례

- 기업 A의 일괄위탁물류매출액이 150억인 경우

- 운송·시설중심 평가점수 = $1 \times 4 \times \frac{\text{Min}(25,000, 15,000)}{25,000} = 1 \times 4 \times \frac{15,000}{25,000} = 2.4$

- 서비스중심 평가점수 = $1 \times 3 \times \frac{\text{Min}(25,000, 15,000)}{25,000} = 1 \times 3 \times \frac{15,000}{25,000} = 1.8$

3. 발전가능성 (20점/30점)

3.1 제3자물류화 (13점/15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지표	지표 의미	가중치	배점			평가기준/척도
				운송 중심	시설 중심	서비스 중심	
제3자물류화	3자물류 매출비중	·3자물류매출액 /물류부문매출액	1.0	6	6	4	50% 이상(100%), 나머지 비율계산
	3자물류 매출비중 증가율	·3자물류매출액 /물류부문매출액 비중이 50% 이상 등	1.0	3	3	4	50%이상(100%), 50%이하 중 5%이상 증가(100%), 이하 비율계산
	일괄위탁 매출비중	·일괄위탁 매출액/3자물류매출액	1.0	2	2	4	50% 이상(100%), 나머지 비율계산
	일괄위탁 매출비중 증가율	·일괄물류매출액/3자물류매출액 비중이 50% 이상	1.0	2	2	3	일괄위탁매출 비중이 50%이상인 경우 100%, 50%이하인 경우 증가율 5%이상 증가(100%)

3.1.1 3자물류 매출비중

가. 확인자료

- 장기위탁계약 증빙 : 화물운송계약서 또는 위수탁계약서
- 매출액 증빙 : 세금계산서(매출)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3자물류 인정기준: 특수관계인(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을 제외한 제3의 화주와 1년 이상 장기위탁계약에서 발생한 매출액
 - ※ 위수탁계약서상 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합계
- 만점기준 : 물류부문매출액 중 3자물류매출액 비중이 50% 이상
- 산출식 : $가중치 \times 배점 \times \frac{Min(0.5, 3자물류매출액/물류부문매출액)}{0.5}$, (단위 : 백만원)
- 산출사례
 - 기업 A의 물류부문매출액 500억원, 3자물류매출액 200억원
 - 운송·시설중심 평가점수 = $1 \times 6 \times \frac{Min(0.5, 20,000/50,000)}{0.5} = 1 \times 6 \times \frac{0.4}{0.5} = 4.8$
 - 서비스중심 평가점수 = $1 \times 4 \times \frac{Min(0.5, 20,000/50,000)}{0.5} = 1 \times 4 \times \frac{0.4}{0.5} = 3.2$

3.1.2 3자물류 매출비중 증가율

가. 확인자료

- 장기위탁계약 증빙 : 화물운송계약서 또는 위수탁계약서(최근 3개 사업년도가 포함된 위수탁계약서)
- 매출액 증빙 : 세금계산서(매출)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최근 3개 사업년도)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3자물류 인정기준: 특수관계인(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을 제외한 제3의 화주와 1년 이상 장기위탁계약에서 발생한 매출액
 - ※ 위수탁계약서상 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합계
- 만점기준
 - 3자물류매출액/물류부문매출액 비중이 50% 이상, 또는
 - 3자물류매출액/물류부문매출액 비중이 50% 미만인 경우는 전년대비증가율이 5% 이상
- 산출식
 - 3자물류매출액/물류부문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 가중치×배점
 - 3자물류매출액/물류부문매출액 비중이 50% 미만인 경우
 - : 가중치×배점 × $\frac{Max \{0, Min(0.05, \beta)\}}{0.05}$
 - β 는 3자물류매출액/물류부문매출액 비중의 증가율을 의미하며, $\beta = \frac{\alpha_t - \alpha_{t-1}}{\alpha_{t-1}}$
 - (단, $\alpha = \frac{3자물류매출액}{물류부문매출액}$ 이고, t 와 $t-1$ 은 각각 직전사업연도와 전전사업연도를 의미함)
- 산출사례
 - 기업 A의 매출액 현황(단위 : 백만원)

구분	물류부문매출액	3자물류매출액	$\frac{3자물류매출액}{물류부문매출액}$ (α)
직전년도 (t)	50,000	20,000	0.4000
전전년도 ($t-1$)	45,000	17,500	0.3889

- 3자물류매출액/물류부문매출액의 전년대비증가율(β) $\niqquad \frac{0.4 - 0.3889}{0.3889} = 0.0285$
- 운송시설중심 평가점수 $\niqquad 1 \times 3 \times \frac{Max \{0, Min(0.05, 0.0285)\}}{0.05} = 1 \times 3 \times \frac{0.0285}{0.05} = 1.71$
- 서비스중심 평가점수 $\niqquad 1 \times 4 \times \frac{Max \{0, Min(0.05, 0.0285)\}}{0.05} = 1 \times 4 \times \frac{0.0285}{0.05} = 2.28$

3.1.3 일괄위탁 매출비중

가. 확인자료

- 일괄위탁계약 증빙 : 화물운송계약서 또는 위수탁계약서
- 매출액 증빙 : 세금계산서(매출)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3자물류 인정기준을 만족하면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의한 물류사업 중 2가지 이상의 물류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매출액
- 만점기준 : 3자물류매출액 중 일괄위탁물류매출액 비중이 50% 이상
- 산출식 : $\text{가중치} \times \text{배점} \times \frac{\text{Min}(0.5, \text{일괄위탁물류매출액}/\text{3자물류매출액})}{0.5}$, (단위 : 백만원)
- 산출사례
 - 기업 A의 3자물류매출액 200억원, 일괄위탁물류매출액 150억원
 - 운송·시설중심 평가점수 = $1 \times 2 \times \frac{\text{Min}(0.5, 15,000/20,000)}{0.5} = 1 \times 2 \times \frac{0.5}{0.5} = 2$
 - 서비스중심 평가점수 = $1 \times 4 \times \frac{\text{Min}(0.5, 15,000/20,000)}{0.5} = 1 \times 4 \times \frac{0.5}{0.5} = 4$

3.1.4 일괄위탁 매출비중 증가율

가. 확인자료

- 일괄위탁계약 증빙 : 화물운송계약서 또는 위수탁계약서(최근 3개 사업년도가 포함된 위수탁계약서)
- 매출액 증빙 : 세금계산서(매출)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최근 3개 사업년도)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3자물류 인정기준을 만족하면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의한 물류사업 중 2가지 이상의 물류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매출액
- 만점기준
 - 일괄물류매출액/3자물류매출액 비중이 50% 이상, 또는
 - 일괄물류매출액/3자물류매출액 비중이 50% 미만인 경우는 전년대비증가율이 5% 이상
- 산출식
 - 일괄물류매출액/3자물류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 $\text{가중치} \times \text{배점}$

- 일괄물류매출액/3자물류매출액 비중이 50% 미만인 경우

: 가중치 × 배점 × $\frac{Max \{0, Min(0.05, \beta)\}}{0.05}$

β는 일괄위탁물류매출액/3자물류매출액 비중의 증가율을 의미하며, $\beta = \frac{\alpha_t - \alpha_{t-1}}{\alpha_{t-1}}$

(단, $\alpha = \frac{\text{일괄위탁물류매출액}}{\text{3자물류매출액}}$ 이고, t와 t-1은 각각 직전사업연도와 전전사업연도를 의미함)

○ 산출사례

- 기업 A의 매출액 현황(단위 : 백만원)

구분	3자물류매출액	일괄위탁물류매출액	$\frac{\text{일괄위탁물류매출액}}{\text{3자물류매출액}} (\alpha)$
직전년도(t)	35,000	15,000	0.429
전전년도(t-1)	30,000	12,000	0.4

- 일괄위탁물류매출액/3자물류매출액의 전년대비증가율(β) ≙ $\frac{0.429 - 0.4}{0.4} = 0.0714$

- 운송·시설중심 평가점수 ≙ $1 \times 2 \times \frac{Max \{0, Min(0.05, 0.0714)\}}{0.05} = 1 \times 2 \times \frac{0.05}{0.05} = 2$

- 서비스중심 평가점수 ≙ $1 \times 3 \times \frac{Max \{0, Min(0.05, 0.0714)\}}{0.05} = 1 \times 3 \times \frac{0.05}{0.05} = 3$

3.2 국제화 (4점/8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지표	지표 의미	가중치	배점			평가기준/척도
				운송 중심	시설 중심	서비스 중심	
국제화	해외투자규모	· 현지법인, 해외지점, 해외합작투자 등에 대한 투자지분	1.0	2	2	4	500만불이상(100%), 이하 비율계산
	해외매출실적	· 현지법인 매출 + 해외지점 매출 + 국내법인이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수주한 3국간 매출	1.0	2	2	4	500만불이상(100%), 이하 비율계산

3.2.1 해외투자규모

가. 확인자료

- 현지법인 : 현지법인의 최근 재무제표 등
- 독립채산제 해외지점 : 최근 재무제표 등
-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지 않는 지사(외항운송업자의 지점이나 사무소) : 송금 Cable, 송금 확인서 등 송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자증명서 등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인정기준
 - 해외합작투자의 경우 총투자액 중 투자지분만 인정
 - 현지법인 및 독립채산제 해외지점 : 재무제표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제 자본유입이 있는 자본금 성격의 자금(주식발행초과금, 재무구조개선적립금, 기업합리화적립금, 이익준비금, 자산재평가적립금, 시설적립금, 기업발전적립금 등 각종 적립금 등 포함. 다만 처분전이익잉여금은 제외)
 -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지 않는 지사(외항운송업자의 지점이나 사무소)
- 만점기준 : 미화 500만달러 이상
- 산출식 : $가중치 \times 배점 \times \frac{Min(5,000, \text{해외투자규모})}{5,000}$, (단위 : 천달러)
- 산출사례
 - 기업 A의 해외투자규모가 350만달러
 - 평가점수
 - 운송·시설중심 = $1 \times 2 \times \frac{Min(5,000, 3,500)}{5,000} = 1 \times 2 \times \frac{3,500}{5,000} = 1.4$
 - 서비스중심 = $1 \times 4 \times \frac{Min(5,000, 3,500)}{5,000} = 1 \times 4 \times \frac{3,500}{5,000} = 2.8$

3.2.2 해외매출실적

가. 확인자료

- 현지법인 : 현지법인의 최근 재무제표 등
- 해외지사
 -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지점 : 최근 재무제표, 기업진단보고서 등
 -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지 않는 지점, 3국간 매출 : 국내 재무제표 등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해외매출은 현지법인의 매출 +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매출 + 국내법인이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수주한 3국간 매출(국내 수출입 관련 매출은 제외)
 - ※ 다만 합작투자는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정
 - ※ 자회사가 출자하여 설립된 손(孫)회사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만점기준 : 미화 500만달러 이상

- 산출식 : $\text{가중치} \times \text{배점} \times \frac{\text{Min}(5,000, \text{해외매출액})}{5,000}$, (단위 : 천달러)
- 산출사례
 - 기업 A의 해외매출액이 350만달러
 - 평가점수
 - 운송·시설중심 = $1 \times 2 \times \frac{\text{Min}(5,000, 3,500)}{5,000} = 1 \times 2 \times \frac{3,500}{5,000} = 1.4$
 - 서비스중심 = $1 \times 4 \times \frac{\text{Min}(5,000, 3,500)}{5,000} = 1 \times 4 \times \frac{3,500}{5,000} = 2.8$

3.3 정보화 (3점/7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지표	지표 의미	가중치	배점			평가기준/척도
				운송 중심	시설 중심	서비스 중심	
정보화	정보시스템자산 보유액	·자산 계정과목별 보조부원장에서 정보화자산의 당기 미상각잔액 합계	1.0	1	1	3	50억이상(100%), 이하 비율계산
	매출액 대비 정보화 (R&D포함)투자율	·최근 3년간 평균 정보화, 교육 및 R&D부문에 대한 총투자액	1.0	1	1	3	최근 3년간 평균 정보화투자액 2%(금액기준 10억)이상 100%, 이하 비율 계산
	화물운송추적 서비스	·실시간 위치추적 가능한 서비스 제공 여부	-	1	1	1	5단계 척도 평가

3.3.1 정보시스템자산보유액

가. 확인자료

- 자산 계정과목별 보조부원장, 프로그램 개발용역 대금지급 서류 등
 - ※ 기업현황보고서 작성(물류관련 자산목록만)하여 제출하고, 심사위원이 실사를 통해 자산 계
정과목별 보조부원장을 확인하는 방법
- 현재 자산에 등록된 정보화자산액(특허권 포함)
 - ※ 정보화 자산은 S/W 및 S/W 개발비, H/W, 특허권을 의미함
 - ※ 자산 계정과목별 보조부원장상에서 정보화자산에 해당하는 자산만 분류함
- 자산 계정과목별 보조부원장에서 정보화자산의 당기 미상각잔액 합계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만점기준 : 50억 이상
 - 운송·시설·서비스중심과 관계없이 만점기준 동일
- 산출식 : $\text{가중치} \times \text{배점} \times \frac{\text{Min}(5,000, \text{정보화자산시스템보유액})}{5,000}$, (단위 : 백만원)
- 산출사례
 - 기업 A의 정보시스템자산보유액이 35억원
 - 평가점수
 - 운송·시설중심 = $1 \times 1 \times \frac{\text{Min}(5,000, 3,500)}{5,000} = 1 \times 1 \times \frac{3,500}{5,000} = 0.7$
 - 서비스중심 = $1 \times 3 \times \frac{\text{Min}(5,000, 3,500)}{5,000} = 1 \times 3 \times \frac{3,500}{5,000} = 2.1$

3.3.2 매출액 대비 정보화(R&D포함)투자율

가. 확인자료

- 연간 정보화, 교육 및 R&D부문에 대한 총투자액
 - 재무제표 등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만점기준 :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됨
 - 최근 3년간 평균 정보화투자액/최근 3년간 평균 물류부문매출액 기준 : 2% 이상, 또는
 - 최근 3년간 평균 정보화투자액 기준 : 10억 이상
- 산출식
 - 최근 3년간 평균 정보화투자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 $\text{가중치} \times \text{배점}$
 - 최근 3년간 평균 정보화투자액/최근 3년간 평균 물류부문매출액의 비율이 2%이상인 경우
 - $\text{가중치} \times \text{배점} \times \frac{\text{Min}(0.02, \alpha/\beta)}{0.02}$, (단위 : 백만원)
 - $\alpha =$ 최근 3년간 평균 정보화투자액, $\beta =$ 최근 3년간 평균 물류부문매출액
- 산출사례
 - 기업 A의 최근 3년간 평균 정보화투자액(α) 2억, 최근 3년간 평균 물류부문매출액(β) 500억
 - 평가점수
 - 운송·시설중심 = $1 \times 1 \times \frac{\text{Min}(0.02, 200/50,000)}{0.02} = 1 \times 1 \times \frac{0.004}{0.02} \approx 0.2$
 - 서비스중심 = $1 \times 3 \times \frac{\text{Min}(0.02, 200/50,000)}{0.02} = 1 \times 3 \times \frac{0.004}{0.02} \approx 0.6$

3.3.3 화물운송추적서비스

가. 확인자료

- 화물운송추적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에 대한 제출 자료
 - 자체구축 또는 구축된 서비스 이용시에도 가능
- 심사위원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현장심사시 재확인)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화주가 운송의뢰한 화물에 대해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경우 화물운송추적(tracking) 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
 -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 보유

구분	평가 점수
위치추적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이용 중에 있음	60~69%
실시간 위치추적이 국내구간만 가능함	70~79%
실시간 위치추적이 국내 및 국외 구간 모두 가능함	80~89%
실시간 위치추적이 국내 및 국외 구간 모두 가능하며, 화물의 상태(온도, 습도, 충격) 정보 제공이 가능함	90~100%

※ 대체할 근거가 있을 경우 50% 이내 점수 부여

Part 2. 우수물류기업 인증분야별 인증심사기준

Ⅵ. 국제물류주선기업

VI. 국제물류주선기업

□ 기본방향

- 국제물류주선업의 본질적인 기능(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에 충실한 업체를 우수업체로 인증함
 - 순수 2자물류기업(물류자회사)은 배제
 - 타인의 명의로 및 타인의 계산으로 영업하는 업체 배제
-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수출입화물의 수송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서비스 향상 및 국제물류 네트워크·시설 확충 등에 기여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우수 업체로 인증함

□ 필수요건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 매출액 중 제3자물류의 매출액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일 것
- 자기 명의로 발행하는 선하증권(B/L) 및 항공화물운송장(AWB)이 연간 3,000건 이상일 것
- 거래하는 수출 또는 수입화물이 도착하는 국가가 연간 5개국 이상일 것
-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취소 또는 사업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서비스의 전문성 및 국제화 정도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인증대상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우수업체 심사는 신청업체에 한함
-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는 외부감사를 받은 서류에 한함
- 신청업체가 여러 분야의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제물류주선(프레이트 포워딩)분야의 매출액과 재무성과만 인정함
- 자본 잠식 업체의 경우 우수업체 인증심사 접수 불가함

□ 국제물류주선기업 인증분야의 심사항목 체계 (배점: 75점)

심사항목 및 배점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		평가지표 및 배점		신규	정기
1. 전문성 및 서비스 경쟁력	35	1.1 전문능력	20	1.1.1 자기명의 B/L, AWB 발행건수 비율	4	○	○
				1.1.2 최대고객 매출비중	4	○	○
				1.1.3 매출고객 분포(數)	4	○	○
				1.1.4 3자물류 매출액 비중	4	○	○
				1.1.5 물류부문 매출액	4	○	○
		1.2 고객지원역량 및 대외신인도	15	1.2.1 화물운송추적서비스	3	○	○
				1.2.2 법규 준수도	7	○	○
				1.2.3 화물배상책임보험	3	○	○
				1.2.4 업무관련 국외 단체가입 정도	2	○	-
		2. 국제화정도	40	2.1 국제업무역량	20	2.1.1 권역별(거래대륙, 거래국가), 화물종류별 전문성·다양성	10
2.1.2 해외화주와 거래(발주)비율	10					○	○
2.2 국제네트워크	20			2.2.1 해외파트너 구성 및 운영 - 해외법인 운영	10	○	○
				2.2.1 해외파트너 구성 및 운영 - 해외파트너 운영	10	○	○

□ 국제물류주선기업 인증분야의 평가지표 (배점: 75점)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및 배점		지표의미/평가기준/척도	확인자료
1. 전문성 및 서비스 경쟁력 (35)	1.1 전문능력 (20)	1.1.1 자기명의 B/L, AWB 발행건수 비율	4	-신청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수출 입화물을 취급한 건수(적하목록 신고 건수) 중 자기 명의로 발행한 선하증권(B/L) 또는 항공 화물운송장(AWB) 발행 건수 (적하목록 신고 건수에 한함)	-관세청에 신고된 House B/L 또는 관계기관 발행 증명서
		1.1.2 최대고객 매출비중	4	-최대고객매출액/물류부문매출액 비중이 20% 이하인 경우(100%), 20% 이상인 경우 비율계산	-화물운송계약서 또는 위탁 계약서 등
		1.1.3 매출고객 분포(數)	4	-연간 12건 이상을 거래한 고객 이 50개 이상인 경우(100%), 이하 비율 계산	-화물운송계약서 또는 위탁 계약서 등
		1.1.4 3자물류 매출액 비중	4	-제3의 화주와 국제물류주선업무에서 발생한 매출액	-3자물류 매출비중 80% 이상(100%), 이하 비율 계산
		1.1.5 물류부문 매출액	4	-국제물류주선업에서 발생한 매출액 규모	-국제물류주선업부문 매출액 500억원 이상(100%), 이하 비율 계산
	1.2 고객지원역량 및 대외신인도 (15)	1.2.1 화물운송 추적서비스	3	-화주가 운송의뢰한 화물에 대해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경우	-심사위원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현장심사시 재확인)
		1.2.2 법규 준수도	7	-신청업체의 수출입화물 취급건수 (M/F신고 건수)에 비례하여 물류관련법규 준수도에 따라 배점	-신청기업에서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관세청 등)의 발급자료 제출
		1.2.3 화물배상 책임보험	3	-2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시(100%), 미가입시(0%)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2.4 업무관련 국외 단체가입 정도	2	-물류와 관련된 국외단체 3곳 이상 가입시(100%)	-가입증명서, 회비납부증명서
	2. 국제화정도 (40)	2.1 국제업무역량 (20)	2.1.1 권역별 (거래대륙, 거래국가), 화물종류별 전문성·다양성	10	-거래 대륙(아시아, 북·남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및 아프리카)이 5개인 경우(100%), 거래국가(도착지 국가)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100%), 취급화물의 종류가 30류 이상인 경우(100%)
2.1.2 해외화주와 거래(발주) 비율			10	-해외화주(외국기업)와의 거래실적 비율이 15% 이상인 경우 (100%)	-해외 화주와의 거래관계서류, B/L(AWB) 등 확인 (요약표 제시)
2.2 국제네트워크 (20)		2.2.1 해외파트너 구성 및 운영 - 해외법인 운영	10	-신청업체의 해외 영업활동이나 국제물류업무 수행을 위해 설립된 해외 현지법인(지사·지점 또는 영업소) 운영	-해외 현지법인(지사·지점 또는 영업소) 구성 및 운영 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2.2.1 해외파트너 구성 및 운영 - 해외파트너 운영	10	-신청업체의 해외 영업활동이나 국제물류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된 해외 포워드(해외파트너 또는 대리점)의 수	-해외 파트너 리스트 및 해당 파트너와의 외환정산내역 증빙서류(최근 사업연도)

1. 전문성 및 서비스 경쟁력 (35점)

1.1 전문능력 (20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지표	지표 의미	가중치	배점	평가기준/척도
전문능력	자기명의 B/L, AWB 발행건수 비율	·자기명의 B/L, AWB 발행 건수 비율	1.0	4	자기 명의의 B/L, AWB 발행건수 8,000건 이상(100%), 이하 비율 계산
	최대고객 매출비중	·신청기업의 최대고객 매출비중	1.0	4	최대고객 매출비중 20% 이하
	매출고객 분포(數)	·최근 사업연도에 매출을 발생 시킨 고객수	1.0	4	매출고객 수(數) 50개 이상
	3자물류 매출액 비중	·제3의 화주와 물류업무에서 발생한 매출액	1.0	4	3자물류 매출비중 80% 이상(100%), 이하 비율 계산
	물류부문 매출액	·국제물류주선업에서 발생한 매출액 규모	1.0	4	국제물류주선업부문 매출액 500억원 이상(100%), 이하 비율 계산

1.1.1 자기명의 B/L, AWB 발행건수 비율

가. 확인자료

- 관세청에 신고된 House B/L 또는 관계기관 발행 증명서
 - 적하목록 전자문서사서함 지정사업자(KTNET, KLNET, KCNET 등)가 발행한 수출·수입 M/F 신고실적 증명서
 - 신청인의 해외 현지법인(지사·지점 또는 영업소)이 수입화물에 대해 자기 명의의 B/L 이나 AWB를 발행한 경우 이를 증빙하는 경우 인정함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신청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수출입화물을 취급한 건수(적하목록 신고 건수) 중 자기 명의로 발행한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행 건수(적하목록 신고 건수에 한함)
- 만점기준 : 신청인이 자기 명의의 B/L이나 AWB 발행건수가 연간 8,000건 이상 (100%), 이하 비율 계산

※ 자기 명의로 발행하는 B/L, AWB이 연간 3,000건 미만일 경우 인증 불가

- 산출식 : 가중치 × 배점 × $\frac{\text{Min}(8,000, \text{자기명의 B/L, AWB 발행건수})}{8,000}$

○ 산출사례

- A기업의 자기 명의 B/L, AWB 발행이 5,600건인 경우
- 평가점수 = $1 \times 4 \times \frac{\text{Min}(8,000, 5,600)}{8,000} = 1 \times 4 \times \frac{5,600}{8,000} = 2.8$

1.1.2 최대고객 매출비중

가. 확인자료

-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을 가장 많이 발생시킨 고객(법인, 개인 포함)(관계기업과의 거래실적 포함)
 - 화물운송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 고객(거래처)별로 분리하여 확인(심사) 가능하도록 서류 제출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만점기준 : 최대고객매출액/물류부문매출액 비중이 20% 이하인 경우(100%), 20% 이상인 경우 비율계산
- 산출식 : $\text{가중치} \times \text{배점} \times \frac{1 - \text{Max}(0.2, \text{최대고객매출액}/\text{물류부문매출액})}{0.8}$
- 산출사례
 - A기업의 물류부문 매출액이 500억원이고, 최대고객 B가 발생시킨 매출액이 120억인 경우
 - 평가점수 = $1 \times 4 \times \frac{1 - \text{Max}(0.2, 120/500)}{0.8} = 1 \times 4 \times \frac{1 - 0.24}{0.8} = 3.8$

1.1.3 매출고객 분포(數)

가. 확인자료

-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을 발생시킨 거래고객 수(법인, 개인 포함)
 - 화물운송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 고객(거래처)별로 분리하여 확인(심사) 가능하도록 서류 제출
 - 연간 12건(분기별 최소 1회)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킨 고객에 한함(연간 12건 및 분기별 1회 미만 거래고객은 미포함)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만점기준 : 연간 12건 이상을 거래한 고객이 50개 이상인 경우(100%), 이하 비율 계산
- 산출식 : $\text{가중치} \times \text{배점} \times \frac{\text{Min}(50, \text{연간 12건 이상의 거래고객수})}{50}$

○ 산출사례

- A기업의 물류부문 매출 고객이 68개사이고, 연간 12건 이상 거래한 고객 수가 42인 경우

$$\text{- 평가점수} = 1 \times 4 \times \frac{\text{Min}(50, 42)}{50} = 1 \times 4 \times \frac{42}{50} = 3.36$$

1.1.4 3자물류 매출액 비중

가. 확인자료

○ 자회사·계열사 및 특수관계인(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을 제외한 제3의 화주와 국제물류주선업무에서 발생한 매출액

- 위수탁계약서상 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의 합계

- 화물운송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 매출액 증빙을 고객(거래처)별로 분리하여 확인(심사) 가능하도록 서류 제출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만점기준 : 매출액 대비 3자물류 매출비율이 80% 이상(100%), 이하 비율 계산

※ 매출액 중 3자물류의 매출액 비율이 50% 미만일 경우 인증 불가

○ 산출식 : $\text{가중치} \times \text{배점} \times \frac{\text{Min}(0.8, \text{3자물류 매출비율})}{0.8}$

○ 산출사례

- A기업의 2년간 물류부문 매출액이 총 1,200억원이며, 이 가운데 3자물류 매출액이 950억 원인 경우

$$\text{- 평가점수} = 1 \times 4 \times \frac{\text{Min}(0.8, 950/1,200)}{0.8} = 1 \times 4 \times \frac{0.79}{0.8} = 3.95$$

1.1.5 물류부문 매출액

가. 확인자료

○ 신청인이 영위하는 물류사업 중에 국제물류주선업무(프레이트포워딩)에서 발생한 매출액 규모

- 위수탁계약서상 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의 합계

- 국제물류주선부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만점기준 : 국제물류주선업무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100%), 이하 비율 계산

- 산출식 : $\text{가중치} \times \text{배점} \times \frac{\text{Min}(500, \text{국제물류주선매출액})}{500}$
- 산출사례
 - A기업의 2년간 국제물류주선업무 매출액이 총 650억원인 경우
 - 평가점수 = $1 \times 4 \times \frac{\text{Min}(500, 650/2)}{500} = 1 \times 4 \times \frac{325}{500} = 2.6$

1.2 고객지원역량 및 대외신인도 (15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지표	지표 의미	가중치	배점	평가기준/척도
고객 지원역량 및 대외 신인도	화물운송추적 서비스	·실시간 위치추적 가능한 서비스 제공 여부	1.0	3	실시간 전구간(국내/국제) 추적가능여부에 따른 배점
	법규 준수도	·관련법규 준수도	1.0	7	취급건수 및 물류관련법규 위반 건수에 비례함
	화물배상 책임보험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1.0	3	2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 보험 가입
	업무 관련 국외 단체가입 정도	·국제물류 관련 국외 단체 가입	1.0	2	국외단체 3개 이상 가입시(100%)

1.2.1 화물운송추적서비스

가. 확인자료

- 서비스 실적 증빙서류
 - 화물추적서비스 시스템 구축(시스템 구축 내역서, 해당 사업자 발행 증빙 자료, 자산 대장, 시스템 상의 등록 및 이용실적 자료 등) 등 확인자료
 - 심사위원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현장심사시 재확인)- 화주가 운송의뢰한 화물에 대해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경우 화물추적(tracking)서비스가 되는 것으로 인정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 보유

구분	평가 점수
실시간, 전구간(국제 및 국내) 추적가능	3
실시간, 해외구간(해운 및 항공)추적가능	2
실시간, 해외구간(해운 및 항공)추적가능. 단, 해운 및 항공구간 모두 추적이 되지 않고 1구간만 추적 가능한 경우	1.5
실시간, 국내구간 추적 가능	1

1.2.2 법규 준수도

가. 확인자료

- 신청기업에서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관세청 등)의 발급자료 제출
 - 자료 미제출시 0%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인증심사 신청기업의 관련법규 준수도 평가
- 신청업체의 수출입화물 취급건수(M/F신고 건수)에 비례하여 물류관련법규(물류정책기본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등) 준수도에 따라 배점
- 만점기준 : 최근 사업연도에 위반(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이 없는 경우(100%), 이하 법규위반 건수/수출입화물 취급건수에 비례하여 배점 부과

구분	평가 점수
최근 사업연도 중 위반 건수가 없는 경우	7점 부여
법규 위반 건수가 취급 건수의 0.02% 이하의 경우	6점 부여
법규 위반 건수가 취급 건수의 0.04% 이하의 경우	5점 부여
법규 위반 건수가 취급 건수의 0.06% 이하의 경우	4점 부여
법규 위반 건수가 취급 건수의 0.08% 이하의 경우	3점 부여
법규 위반 건수가 취급 건수의 0.1% 이하의 경우	2점 부여
법규 위반 건수가 취급 건수의 0.1~0.3% 이하의 경우	1점 부여

○ 산출사례

- 기업 A의 최근 1년간 수출입화물 취급건수(M/F 신고건수)가 5,300건이고, 과태료 부과건수가 4건인 경우 : $\frac{4}{5,300} \times 100 = 0.075\% = 3\text{점}$
- 기업 B의 M/F 신고건수가 95,240건, 과태료 건수가 35건인 경우 : $\frac{35}{95,240} \times 100 = 0.037\% = 5\text{점}$

1.2.3 화물배상책임보험

가. 확인자료

-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자기 명의로 발행한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상의 화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면약관상의 책임한도에 따라 배상하는 보험 가입여부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만점기준 : 2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가입시(100%), 미가입시(0%)
 - 2억원 이상 보험 가입시 3점, 1억원 이상 보험 가입시 1.5점, 미가입시 0점
- 산출사례
 - A기업이 2억원 이상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시 : 3점 부여
 - B기업이 1억원 이상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시 : 1.5점 부여

1.2.4 업무관련 국외 단체가입 정도

가. 확인자료

- 가입증명서, 회비납부증명서
 - 국제물류주선업(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Business) 관련 대외신인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물류와 관련된 국외단체인 FIATA(국제프레이트포워딩연맹) 또는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등에 가입한 정도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만점기준 : 물류와 관련된 국외단체 3곳 이상 가입시(100%)
- 산출식 : 가중치 × 배점 × $\frac{Min(3, 단체가입수)}{3}$
- 산출사례
 - A기업이 FIATA, IATA에 가입하고 있을 경우
 - 평가점수 = $1 \times 2 \times \frac{Min(3, 2)}{3} = 1 \times 2 \times \frac{2}{3} = 1.3$

2. 국제화정도 (40점)

2.1 국제업무역량 (20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지표	지표 의미	가중치	배점	평가기준/척도
국제업무역량	권역별, 화물종류별 전문성·다양성	·권역별 거래대륙	1.0	2	권역별 5개 대륙(100%)
		·권역별 거래국가	1.0	3	거래국가 30개 이상(100%)
		·화물의 종류	1.0	5	취급화물 종류 30개 이상
	해외화주 거래(발주)비율	·해외화주로부터 직접 의뢰받은 거래실적 비율	1.0	10	해외화주와의 거래비율 15% 이상(100%), 이하 비율 계산

2.1.1 권역별, 화물종류별 전문성·다양성

가. 확인자료

- B/L 발행 실적 등 확인 가능한 자료
 - B/L 또는 AWB에 나타난 화물의 도착지 대륙(요약표 제시)
 - B/L 또는 AWB에 나타난 화물의 도착지 국가(요약표 제시)
 - B/L 또는 AWB에 나타난 취급화물의 종류(HS 코드 품목분류상 21부 97류 가운데 취급화물의 요약표 제시)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1) 권역별 거래대륙

- 만점기준 : 거래 대륙(아시아, 북·남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또는 아프리카)이 5개인 경우(100%), 이하 비율 계산
- 산출식 : $가중치 \times 배점 \times \frac{Min(5, 거래대륙수)}{5}$
- 산출사례
 - A기업의 거래 대륙수가 4개인 경우
 - 평가점수 = $1 \times 2 \times \frac{Min(5, 4)}{5} = 1 \times 2 \times \frac{4}{5} = 1.6$

(2) 권역별 거래국가

- 만점기준 : 거래국가(도착지 국가)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100%), 이하 비율 계산
※ 거래하는 수출 또는 수입화물이 도착하는 국가가 연간 5개국 미만일 경우 인증 불가
- 산출식 : $\text{가중치} \times \text{배점} \times \frac{\text{Min}(30, \text{거래국가수})}{30}$
- 산출사례
 - A기업의 거래 국가수가 24개인 경우
 - 평가점수 = $1 \times 3 \times \frac{\text{Min}(30, 24)}{30} = 1 \times 3 \times \frac{24}{30} = 2.4$

(3) 화물의 종류

- 만점기준 : 취급화물의 종류(HS 코드 품목분류상 21부 97류)가 30류 이상인 경우(100%)
- 산출식 : $\text{가중치} \times \text{배점} \times \frac{\text{Min}(30, \text{HS Code 97류중 취급화물 종류})}{30}$
- 산출사례
 - A기업의 취급화물 종류가 22개인 경우
 - 평가점수 = $1 \times 5 \times \frac{\text{Min}(30, 22)}{30} = 1 \times 5 \times \frac{22}{30} = 3.67$

2.1.2 해외화주와 거래(발주)비율

가. 확인자료

- B/L 발행 실적 등 확인 가능한 자료
 - 해외화주와의 거래관계서류, B/L(AWB) 등 확인(요약표 제시)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신청업체에 대한 국제물류 취급건수 중 해외화주로부터 직접 의뢰받은 거래실적 비율
 - 신청업체의 해외 현지법인·해외지사(사무소 포함) 또는 국내법인이 외국기업(화주)을 대상으로 수주한 3국간 운송 거래비율
 - 신청업체에 대한 국제물류 취급건수 중 해외화주로부터 직접 의뢰받은 거래실적 비율
- 만점기준 : 해외화주(외국기업)와의 거래실적 비율이 15% 이상인 경우(100%), 이하 비율 계산

- 산출식 : $\text{가중치} \times \text{배점} \times \frac{\text{Min}(0.15, \text{해외화주와의 거래비율})}{0.15}$
- 산출사례
 - A기업의 국제물류 취급건수 7,500건 중 해외화주로부터 직접 의뢰 받은 거래실적이 520건인 경우
 - 평가점수 = $1 \times 10 \times \frac{\text{Min}(0.15, 520/7,500)}{0.15} = 1 \times 10 \times \frac{0.069}{0.15} = 4.6$

2.2 국제네트워크 (20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지표	지표 의미	가중치	배점	평가기준/척도
국제네트워크	해외파트너 구성 및 운영	·해외법인 운영	1.0	10	현지법인(지사, 영업소 등) 5개 이상(100%), 이하 비율계산
		·해외파트너 운영	1.0	10	해외 파트너 80개 이상(100%),이하 비율 계산

2.2.1 해외파트너 구성 및 운영 - 해외법인 운영

가. 확인자료

- 해외 현지법인(지사·지점 또는 영업소) 구성 및 운영 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 현지법인 법인등기부등본, 해외법인 등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관련신고서류, 매출 증빙 서류 등
 -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구성 및 운영 현황 전체를 제출 필요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신청업체의 해외 영업활동이나 국제물류업무 수행을 위해 설립된 해외 현지법인(지사·지점 또는 영업소) 운영
 - 동일 국가의 해외법인(지사·지점 또는 영업소)은 모두 산정
- 만점기준 : 현지법인(지사·지점·영업소 등) 5개 이상(100%), 이하 비율 계산
 - 해외지사·지점 또는 영업소 등이 5개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개수를 해외파트너에 합산함

- 산출식 : $\text{가중치} \times \text{배점} \times \frac{\text{Min}(5, \text{해외지점수})}{5}$
- 산출사례
 - A기업의 해외지사가 1이며, 영업소가 2개(다른 국가 소재)인 경우
 - 평가점수 = $1 \times 10 \times \frac{\text{Min}(5, 3)}{5} = 1 \times 10 \times \frac{3}{5} = 6$

2.2.1 해외파트너 구성 및 운영 - 해외파트너 운영

가. 확인자료

- 해외 현지파트너 구성 및 운영 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 해외 파트너 리스트 및 해당 파트너와의 외환정산내역 증빙서류(최근 사업연도)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신청업체의 해외 영업활동이나 국제물류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된 해외 포워드(해외 파트너 또는 대리점)의 수
 - 다만, 최근 사업연도에 거래관계가 있는 해외파트너에 한함(동일국가내의 파트너 무관)
- 만점기준 : 해외파트너 80개 이상 운영(100%). 이하 비율 계산
 - 다만, 해외지점이 5개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개수를 해외파트너의 300%(해외지점 1은 해외파트너 3)로 인정
- 산출식 : $\text{가중치} \times \text{배점} \times \frac{\text{Min}(80, \text{해외파트너수}(100\%) + \text{해외지사수}(300\%))}{80}$
- 산출사례
 - A기업의 해외 파트너가 62개인 경우
 - 평가점수 = $1 \times 10 \times \frac{\text{Min}(80, 62)}{80} = 1 \times 10 \times \frac{62}{80} = 7.75$
 - B기업의 해외법인이 16개이며, 파트너가 42개인 경우
 - 해외법인 16개-5개 = 11개 \times 300% = 해외파트너 33개로 인정
 - 평가점수 = $1 \times 10 \times \frac{\text{Min}(80, 42 + 33)}{80} = 1 \times 10 \times \frac{75}{80} = 9.38$

Part 2. 우수물류기업 인증분야별 인증심사기준

Ⅶ. 물류창고기업

Ⅶ. 물류창고기업

□ 기본방향

- 화주에 대해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
- 시설 및 장비, 정보제공, 안정성 확보

□ 필수요건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 일 것
- 화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화재보험 가입 등 화재예방 및 화재대응 매뉴얼을 갖출 것
- 창고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및 운영 매뉴얼을 갖출 것
- 국내외 화물의 보관 실적 및 고용창출 실적이 우수할 것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에 따른 물류창고업 등록 취소 또는 사업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서비스의 전문성 및 안전성 정도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인증대상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우수 업체 심사는 신청업체에 한함
-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는 외부감사를 받은 서류에 한함
- 신청업체가 여러 분야의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물류창고업 분야의 매출액과 재무성과만 인정함
- 화주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 물류창고의 운영에 관한 정보제공 실적이 우수할 것
- 화물의 안전보관 실적이 우수할 것
- 물류창고에 대한 차량의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고 화주의 이용이 용이할 것
- 화주에 대한 서비스 내용 및 사후관리 실적이 우수할 것
- 자본 잠식 업체의 경우 우수 업체 인증심사 접수 불가함

□ 물류창고기업 인증분야의 심사항목 체계 (배점: 75점)

심사항목 및 배점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		평가지표 및 배점		신규	정기
1. 자산	50	1.1 유형자산	20	1.1.1 시설규모-확보	5	○	○
				1.1.1 시설규모-관리/개선 등	5	○	○
				1.1.2 장비보유-보유/확보	5	○	○
				1.1.2 장비보유-관리/개선 등	5	○	○
		1.2 무형자산	30	1.2.1a 정보시스템-구축, 활용	5	○	○
				1.2.1b 정보시스템-정보제공	5	○	○
				1.2.1c 정보시스템-긴급상황대비	5	○	○
				1.2.2 업무매뉴얼	5	○	○
				1.2.3 사업의 전문성	10	○	○
		2. 화물확보 및 고용	15	2.1 화물처리 실적	5	2.1.1 효율적 화물처리 수준	2.5
2.1.2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 수준	2.5					○	○
2.2 장기계약현황	5			2.2.1 장기계약 고객수	5	○	○
2.3 종사자 고용현황	5			2.3.1 직영/외주 인력 현황	5	○	○
3. 안전성	10	3.1 안전 및 보안	5	3.1.1 안전 및 보안 관리 체계	5	○	○
		3.2 보험 및 보상체계	3	3.2.1 보험가입 여부 및 보상체계	3	○	○
		3.3 친환경	2	3.3.1 친환경 계획 및 실적	2	○	○

□ 물류창고기업 인증분야의 평가지표 (배점: 75점)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및 배점		지표의미/평가기준/척도	확인자료
1. 자산 (50)	1.1 유형자산 (20)	1.1.1 시설규모- 확보	5	-창고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창고 확보 여부	-물류창고시설 현황 내역서, 물류창고임대차 계약서 등
		1.1.1 시설규모- 관리/개선 등	5	-적절한 창고 시설관리, 개선실적 및 투자계획 수립 여부	-시설 운영 내역서, 시설관리 지침/시설점검기록, 시설개선 실적/시설투자실적(계획) 등
		1.1.2 장비보유- 보유/확보	5	-효율적인 창고운영을 위한 장비 보유/확보 여부	-장비 보유/운영 내역서, 물류창고 장비 보유/운영 현황(소유 구분 등)
		1.1.2 장비보유- 관리/개선 등	5	-적절한 장비관리, 개선실적 및 투자계획 수립 여부	-장비운영매뉴얼, 장비 관리지침, 장비 점검기록, 장비 개선실적, 장비 투자실적(계획)
	1.2 무형자산 (30)	1.2.1a 정보시스템- 구축, 활용	5	-창고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여부, 개선실적 및 투자계획 여부	-창고관리시스템(WMS) 구축 결과 상세보고서, 시스템 운영 내역,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등
		1.2.1b 정보시스템- 정보제공	5	-화주에게 화물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여부	-정보제공시스템(ERP, Visibility 제공 시스템 등) 구축 결과 상세보고서, 고객과의 정보 인터페이스 여부, 화주에게 정보제공 현황 등
		1.2.1c 정보시스템- 긴급상황 대비	5	-정보시스템이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여부	-UPS(무정전 전원장치), 비상발전기, 수작업 업무 처리지침 등
		1.2.2 업무매뉴얼	5	-현장작업자(내부 및 협력업체 포함)가 해당 업무매뉴얼을 숙지하고 있으며, 업무매뉴얼에 따라 서비스가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	-업무매뉴얼, 업무매뉴얼 교육(이수) 현황 및 참가실적
		1.2.3 사업의 전문성	10	-창고서비스 제공에 대한 특허, 인증, 독자적인 BM 등의 사업 전문성 확보 여부	-업무 매뉴얼, 창고업 경력, 특허·인증 보유 현황, 독자적인 BM 보유 확인
		2. 화물확보 및 고용 (15)	2.1 화물처리 실적 (5)	2.1.1 효율적 화물처리 수준	2.5
2.1.2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 수준	2.5			-화물확보를 위한 창고서비스의 기본기능인 보관, 입출고, 상하역, 유통가공 등을 수행하기 위한 서비스 프로세스의 개선 수준	-프로세스 개선사례(H/W, S/W 및 업무프로세스) 등
2.2 장기계약현황 (5)	2.2.1 장기계약 고객수		5	-1년 이상 장기계약 고객의 수	-장기고객(계약) 현황 및 비중 포함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있을 경우 포함(가산점 부여) -1년 이상의 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합계
	2.3 종사자 고용현황 (5)		2.3.1 직영/외주 인력 현황	5	-업무별 직영/외주 인력 현황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및 배점	지표의미/평가기준/척도	확인자료	
3. 안전성 (10)	3.1 안전 및 보안 (5)	3.1.1 안전 및 보안 관리 체계	5	-안전 및 보안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며, 주기적인 교육 및 점검 여부 -보안관리에 대한 외부 보안업체와의 계약 여부	-안전 및 보안관련 서류 (보안업체 계약 등), -안전관리지침, 안전점검기록, 안전개선실적, 안전교육 계획 및 실적 등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0) 등
	3.2 보험 및 보상체계 (3)	3.2.1 보험가입 여부 및 보상체계	3	-사고발생 등 유사시에 대비해 적정 수준의 보험가입 등 사후 대책 수립 여부	-보험가입 및 납입증명서, 사고처리 매뉴얼, 보험 가입 계약서 및 보험증서(보상범위확인가능자료)
	3.3 친환경 (2)	3.3.1 친환경 계획 및 실적	2	-친환경 관리를 위한 에너지 절감 등의 계획 및 실적	-에너지 절감 계획, 에너지 절감 실적, 친환경 시설보유 현황, 친환경 시설활용 실적

1. 자산 (50점)

1.1 유형자산 (20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지표	지표 의미	배점	평가기준/척도
유형자산	시설규모	·창고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창고 확보 여부	5	5단계 척도 평가
		·적절한 창고 시설관리, 개선실적 및 투자 계획 수립 여부	5	5단계 척도 평가
	장비보유	·효율적인 창고운영을 위한 장비 보유/확보 여부	5	5단계 척도 평가
		·적절한 장비관리, 개선실적 및 투자계획 수립 여부	5	5단계 척도 평가

1.1.1 시설규모

가. 확인자료

- 물류창고시설 현황 내역서, 물류창고임대차 계약서(임차창고의 경우), 건축물 관리 대장 등
- 시설 운영 내역서, 시설관리지침/시설점검기록, 시설개선실적/시설투자실적(계획) 등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창고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창고 확보 여부
 -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 보유

구분	평가 점수
임차창고를 운영하며 일부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함	60~69%
2년 이상의 계약으로 임차창고를 운영하며 서비스 제공에 무리는 없음	70~79%
3년 이상의 장기간 계약으로 임차창고를 운영하며 서비스 제공에 충분한 규모를 확보	80~89%
자가창고를 운영하며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으며, 향후 추가 확보(투자) 계획 수립	90~100%

※ 대체할 근거가 있을 경우 50% 이내 점수 부여

- 적절한 창고 시설관리, 개선실적 및 투자계획 수립 여부
 -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 보유

구분	평가 점수
서비스 제공에 무리는 없으나, 일부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함	60~69%
서비스 제공에 무리 없는 관련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관리	70~79%
관련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적절히 관리하고 있으나, 개선실적 및 투자계획이 미흡	80~89%
관련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였으며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개선실적 및 투자계획 존재	90~100%

※ 대체할 근거가 있을 경우 50% 이내 점수 부여

1.1.2 장비보유

가. 확인자료

- 장비 보유/운영 내역서, 물류창고 장비 보유/운영 현황(소유 구분 등) 등
- 장비운영매뉴얼, 장비 관리지침, 장비 점검기록, 장비 개선실적, 장비 투자실적(계획) 등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효율적인 창고운영을 위한 장비 보유/확보 여부
 -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 보유

구분	평가 점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창고운영에 무리는 없으나, 일부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함	60~69%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창고운영에 무리 없이 장비를 보유/확보	70~79%
효율적인 창고운영을 위한 관련 장비를 충분히 보유/확보	80~89%
관련 장비를 충분히 보유/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투자계획 수립	90~100%

※ 대체할 근거가 있을 경우 50% 이내 점수 부여

- 적절한 장비관리, 개선실적 및 투자계획 수립 여부
 -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 보유

구분	평가 점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창고운영에 무리는 없으나, 일부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함	60~69%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리지침(점검표)에 의거 정기적인 점검을 이행	70~79%
관련 장비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으나, 개선실적 및 투자계획이 미흡	80~89%
관련 장비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개선실적 및 투자계획 존재	90~100%

※ 대체할 근거가 있을 경우 50% 이내 점수 부여

1.2 무형자산 (30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지표	지표 의미	배점	평가기준/척도
무형자산	정보시스템	·창고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여부, 개선실적 및 투자계획 여부	5	5단계 척도 평가
		·화주에게 화물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여부	5	5단계 척도 평가
		·정보시스템이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여부	5	5단계 척도 평가
	업무매뉴얼	·현장작업자(내부 및 협력업체 포함)가 해당 업무매뉴얼을 숙지하고 있으며, 업무매뉴얼에 따라 서비스가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	5	5단계 척도 평가
	사업의 전문성	·창고서비스 제공에 대한 특허, 인증, 독자적인 BM 등의 사업 전문성 확보 여부	10	5단계 척도 평가

1.2.1 정보시스템

가. 확인자료

- 창고관리시스템(WMS) 구축 결과 상세보고서, 시스템 운영 내역,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사용내역 확인 증빙자료, 시스템 개선실적 및 투자실적(계획) 등
- 정보제공시스템(ERP, Visibility 제공 시스템 등) 구축 결과 상세보고서, 고객과의 정보 인터페이스 여부, 화주에게 정보제공 현황 등
- UPS(무정전 전원장치), 비상발전기, 수작업 업무 처리지침 등
- 심사위원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현장심사시 재확인)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개선실적 및 투자계획
 -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 보유

구분	평가 점수
초보적 수준의 정보시스템 구축, 화주의 정보시스템에만 의존	60~69%
현장서비스의 원활한 수행 지원, 일부 결함이나 격차(Gap)가 존재	70~79%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정보가 실시간 수집, 관리되며,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함	80~89%
시스템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개선실적 및 투자계획 있음	90~100%

※ 대체할 근거가 있을 경우 50% 이내 점수 부여

- 화물정보 제공 정보시스템 구축
 -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 보유

구분	평가 점수
정보시스템 미구축, 온·오프라인으로 정기적인 정보 제공, 화주의 정보시스템에만 의존	60~69%
화물정보 제공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결함이나 격차(Gap)가 존재	70~79%
화물정보 제공 시스템이 적절히 운영되고 있으며,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함	80~89%
화주에게 다양한 맞춤형 정보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 운영(시의적절성)	90~100%

※ 대체할 근거가 있을 경우 50% 이내 점수 부여

- 긴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 보유

구분	평가 점수
정전시 IT 설비 및 조명 설비에 대한 전원 공급장치 설치	60~69%
정전시 IT 설비, 조명 설비 및 물류 설비에 대한 전원 공급장치 설치	70~79%
정전시 각종 설비에 대한 전원 공급장치 설치 및 주기적인 점검 실시 여부(월1회 이상)	80~89%
긴급상황 발생시 수작업 업무처리지침 등 대응체계 보유여부	90~100%

※ 대체할 근거가 있을 경우 50% 이내 점수 부여

1.2.2 업무매뉴얼

가. 확인자료

- 업무매뉴얼, 업무매뉴얼 교육(이수) 현황 및 참가실적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 보유

구분	평가 점수
업무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으나,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60~69%
업무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주체도 선정되어 있으나, 활용도는 미흡함	70~79%
업무매뉴얼에 기반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교육과 개정을 진행하고 있음	80~89%
업무매뉴얼에 기반하여 업무진행, 정기적인 교육 및 개정을 하고 있으며, 이에 준하여 고객대응을 진행하고 있음	90~100%

※ 대체할 근거가 있을 경우 50% 이내 점수 부여

1.2.3 사업의 전문성

가. 확인자료

- 업무 매뉴얼, 창고업 경력, 특허·인증 보유 현황, 독자적인 BM 보유 확인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 보유

구분	평가 점수
업무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60~69%
현재의 성과가 양호한 범위에 있음	70~79%
현재의 성과가 우수하며, 특허·인증 보유, 독자적인 BM 보유	80~89%
현재의 성과가 매우 우수하며, 지속적인 특허·인증 확보, 독자적인 BM 확보	90~100%

※ 대체할 근거가 있을 경우 50% 이내 점수 부여

2. 화물확보 및 고용 (15점)

2.1 화물처리 실적 (5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지표	지표 의미	배점	평가기준/척도
화물처리 실적	효율적 화물처리 수준	·서비스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이 기록·관리되고, 고객 등과 공유 여부	2.5	5단계 척도 평가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 수준	·화물확보를 위한 창고서비스의 기본기능인 보관, 입출고, 상하역, 유통가공 등을 수행하기 위한 서비스 프로세스의 개선 수준	2.5	5단계 척도 평가

2.1.1 효율적 화물처리 수준

가. 확인자료

- 입출고 실적자료, 화물현황(내역)자료, 재고현황 파악수준, 화물처리 물동량, 정보공유 여부 등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 보유

구분	평가 점수
입출고 및 재고 현황을 주간, 월간 단위로 관리	60~69%
입출고 및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	70~79%
입출고 및 재고 현황을 관련 부서(영업부, 고객지원부 등)와 공유	80~89%
입출고 및 재고 현황을 고객사와 공유	90~100%

※ 대체할 근거가 있을 경우 50% 이내 점수 부여

2.1.2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 수준

가. 확인자료

- 프로세스 개선사례(H/W, S/W 및 업무프로세스) 등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 보유

구분	평가 점수
서비스 과정에서 개선 사례가 있으나, 지속적이지 않음	60~69%
일부 서비스 과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및 개선	70~79%
대부분의 서비스 과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및 개선	80~89%
대부분의 서비스 과정에 대해서 지속적인 개선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프로세스를 유지	90~100%

※ 대체할 근거가 있을 경우 50% 이내 점수 부여

2.2 장기계약현황 (5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지표	지표 의미	배점	평가기준/척도
장기계약 현황	장기계약 고객수	·1년 이상 장기계약 고객의 수	5	5단계 척도 평가

가. 확인자료

- 신청기업현황보고서
 - 장기고객(계약) 현황 및 비중 포함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있을 경우 포함(가산점 부여)
- 1년 이상의 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합계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 보유

구분	평가 점수
1년 이상 장기계약 고객의 수가 2개사 이상	60~69%
1년 이상 장기계약 고객의 수가 3개사 이상	70~79%
1년 이상 장기계약 고객의 수가 4개사 이상	80~89%
1년 이상 장기계약 고객의 수가 5개사 이상	90~100%

※ 대체할 근거가 있을 경우 50% 이내 점수 부여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있을 경우, 가산점 부여

2.3 종사자 고용현황 (5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지표	지표 의미	배점	평가기준/척도
종사자 고용현황	직영/외주 인력 현황	·업무별 직영/외주 인력 현황	5	5단계 척도 평가

가. 확인자료

- 조직도, 조직별 인원현황,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 고용 관계 증빙서류, 고용보험 납부실적 등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 보유

구분	평가 점수
사업장내 업무비중이 비슷 : 자사 인력 < 외주업체 위탁운영	60~69%
사업장내 업무비중이 비슷 : 자사 인력 > 외주업체 위탁운영	70~79%
사업장내 대부분의 업무를 자사 인력으로 운영하고 일부만 위탁운영	80~89%
사업장내 대부분의 업무를 자사 인력으로만 운영	90~100%

※ 대체할 근거가 있을 경우 50% 이내 점수 부여

3. 안전성 (10점)

3.1 안전 및 보안 (5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지표	지표 의미	배점	평가기준/척도
안전 및 보안	안전 및 보안 관리 체계	·안전 및 보안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며, 주기적인 교육 및 점검 여부 ·보안관리에 대한 외부 보안업체와의 계약 여부	5	5단계 척도 평가

가. 확인자료

- 안전 및 보안관련 서류 (보안업체 계약 등)
- 안전관리지침, 안전점검기록, 안전개선실적, 안전교육 계획 및 실적 등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0) 등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 보유

구분	평가 점수
안전 및 보안 관리지침을 보유하고 있으나, 체계성이 결여 안전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교육 실적이 저조	60~69%
안전 및 보안 관리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며, 정기적인 교육실적 제시 가능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등)	70~79%
안전 및 보안 관리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침에 따른 이행여부 확인 가능	80~89%
안전 및 보안 관리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침에 따른 이행여부 확인 가능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보안에 관한 인증 획득	90~100%

※ 대체할 근거가 있을 경우 50% 이내 점수 부여

※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생산직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시의 교육	생산직 근로자	8시간 이상
	일용직 근로자	1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생산직 근로자	2시간 이상
	일용직 근로자	1시간 이상
특별교육	생산직 근로자	16시간 이상
	일용직 근로자	2시간 이상

3.2 보험 및 보상체계 (3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지표	지표 의미	배점	평가기준/척도
보험 및 보상체계	보험가입 여부 및 보상체계	·사고발생 등 유사시에 대비해 적정 수준의 보험가입 등 사후 대책 수립 여부	3	5단계 척도 평가

가. 확인자료

- 보험가입 및 납입증명서, 사고처리 매뉴얼, 보험 가입 계약서 및 보험증서(보상범위확인가능자료)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 보유

구분	평가 점수
고객 상품 및 시설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보상한도가 모두 미흡	60~69%
고객 상품에 대한 보상한도는 미흡하나, 시설에 대한 보상한도는 충분	70~79%
고객 상품에 대한 보상한도는 충분하나 시설에 대한 보상한도는 미흡	80~89%
고객 상품과 시설에 대한 충분한 보상한도 보험가입 서비스 실패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보증 및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시행	90~100%

※ 대체할 근거가 있을 경우 50% 이내 점수 부여

3.3 친환경 (2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지표	지표 의미	배점	평가기준/척도
친환경	친환경 계획 및 실적	·친환경 관리를 위한 에너지 절감 등의 계획 및 실적	2	5점 척도 평가에 따르되 세부 가중치 적용

가. 확인자료

- 에너지 절감 계획, 에너지 절감 실적, 친환경 시설보유 현황, 친환경 시설활용 실적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 보유

구분	평가 점수
단편적 에너지 절감계획에 비정기적 관리	60~69%
체계적 에너지 절감계획에 비정기적 관리	70~79%
체계적 에너지 절감계획에 정기적 관리	80~89%
에너지 절감을 위한 우수 사례 제시 가능	90~100%

※ 대체할 근거가 있을 경우 50% 이내 점수 부여

Part 2. 우수물류기업 인증분야별 인증심사기준

Ⅷ. 화물운송기업

Ⅷ. 화물운송기업

□ 기본방향

- 화물운송서비스 내용이 우수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예방체계 등을 갖추고 경영상태가 양호한 사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함
- 화물운송업체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일반과 이사 업체로 구분하여 유형별 기준 마련
- 이사화물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일 경우, 인증신청시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

□ 필수요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일 것
- 화물운송에 관한 정보를 화주에게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갖출 것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예방체계 등을 갖출 것
- 안정적인 운송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영상태를 유지할 것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취소 또는 사업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서비스의 전문성 및 안전성 정도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인증대상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한 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우수 업체 심사는 신청업체에 한함
-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는 외부감사를 받은 서류에 한함
- 신청업체가 여러 분야의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사업분야의 매출액과 재무성과만 인정함
- 화주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 화주에 대하여 화물운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 화물의 안전운송에 관한 실적이 있을 것
- 자본 잠식 업체의 경우 우수 업체 인증심사 접수 불가함

□ 화물운송기업 인증분야의 심사항목 체계 (배점: 75점)

심사항목 및 배점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		평가지표	배점		신규	정기
					일반	이사		
1. 조직 및 자원관리	25	1.1 조직관리	15	1.1.1 직영기사 보유비율	7	6	○	○
				1.1.2 종업원 업무 만족도 조사	3	3	○	○
				1.1.3 협력업체 관리체계	5	6	○	○
		1.2 자원관리	10	1.2.1 운송시설 확보 및 관리	2	2	○	○
				1.2.2 운송관련시설투자	2	2	○	○
				1.2.3 직영차량 보유비율	4	4	○	○
				1.2.4 운송장비 관리 표준매뉴얼	2	2	○	○
2. 운송정보 시스템	15	2.1 운송지원 정보시스템	5	2.1.1 TMS / WMS / OMS 보유여부	4	4	○	○
				2.1.2 차량별 손익분석시스템 / 차량별 운임 정산시스템 / 차량·장비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보유여부	1	1	○	○
		2.2 고객지원 정보시스템	10	2.2.1 고객응대시스템 구축	5	5	○	○
				2.2.2 온라인 정보제공 여부	5	5	○	○
3. 운송과정 관리	35	3.1 영업관리 프로세스	5	3.1.1 물량확보를 위한 영업활동 계획 및 실행	1	1	○	○
				3.1.2 영업정보 DB화 및 활용	1	1	○	○
				3.1.3 고객지향적 영업활동 전개	3	3	○	○
		3.2 서비스 관리 프로세스	20	3.2.1 직접운송비율	7	5	○	○
				3.2.2 계약이행률	4	3	○	○
				3.2.3 VOC 관리기준 및 DB화	3	4	○	○
				3.2.4 서비스매뉴얼/서비스매뉴얼 관리지침	3	4	○	○
				3.2.5 서비스 모니터링 프로그램 구축	3	4	○	○
		3.3 안전관리 프로세스	10	3.3.1 안전규정 보유 및 관리	2	2	○	○
				3.3.2 사고예방 교육 및 이력관리	1	1	○	○
				3.3.3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사고 발생비율	5	5	○	○
				3.3.4 배상 보험 가입	2	2	○	○

□ 화물운송기업 인증분야의 평가지표 (배점: 75점)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 항목 (배점)	평가지표	배점		지표의미/평가기준/척도	확인자료
			일반	이사		
1. 조직 및 자원관리 (25)	1.1 조직관리 (15)	1.1.1 직영기사 보유비율	7	6	-직영기사 비율 40%이상 만점, 이하 비율계산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 직자(종업원 수)를 원천징 수 이행상황 신고서 등
		1.1.2 종업원 업무 만족도 조사	3	3	-종업원의 업무 만족도에 대한 정 기적 조사 등	-내부직원 만족도 조사 결 과, 복리후생 증진 관련 서류 등
		1.1.3 협력업체 관리체계	5	6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체계의 효 율적 운영 여부	-협력업체 운영방침(안), 협력업체 평가기준 및 결 과보고서
	1.2 자원관리 (10)	1.2.1 운송시설 확보 및 관리	2	2	-사무실, 차고지, 정비소, 창고, 야적장, 장비 등 운송시설 확보 및 관리 유무	-운송 필수시설(사무소, 차 고지) 및 기타 운송시설 (정비소, 창고 등)을 증빙 할 수 있는 자산대장, 토 지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
		1.2.2 운송관련 시설투자	2	2	-사무실, 차고지, 정비소, 창고, 야적장 등 운송시설의 투자 현 황, 녹색물류 관련 투자계획, 실 적 등	-최근 3년간 운송 필수시설 (사무소, 차고지) 및 기타 운송시설(정비소, 창고 등), 장비에 대한 투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산대장 등
		1.2.3 직영차량 보유비율	4	4	-직영차량 비율이 40% 이상인 경 우에는 4점 만점을 부여	-화물자동차 허가 대수, 자동차등록원부, 자산 보 조부원장, 운송료 지급 근거 서류 등
		1.2.4 운송장비 관리 표준매뉴얼	2	2	-운송장비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및 주기적인 점검	-운송장비 관리 표준매뉴 얼, 장비 관리 결과보고 서 등
	2. 운송정보 시스템 (15)	2.1 운송지원 정보 시스템 (5)	2.1.1 TMS / WMS / OMS 보유여부	4	4	-현장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지 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보유 여부
2.1.2 차량별 손익분석시스템 / 차량별 운임 정산시스템 / 차량 장비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보유여부			1	1	-차량 등 장비에 대한 이력관리 지원, 차량별 손익분석 및 운임 정산 기능 지원 여부	-시스템 구축 결과 상세보고서
2.2 고객지원 정보 시스템 (10)		2.2.1 고객응대 시스템 구축	5	5	-고객소통 경로 보유 및 활용도 평가	-콜센터, 홈페이지, E-Mail, 방문 등 고객응대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2.2 온라인 정보제공 여부	5	5	-운송약관, 운임, 차량정보, 차량 위치 등의 온라인 정보제공	-온라인 정보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배점		지표의미/평가기준/척도	확인자료
			일반	이사		
3. 운송과정 관리 (35)	3.1 영업관리 프로세스 (5)	3.1.1 물량확보를 위한 영업활동 계획 및 실행	1	1	-물량확보를 위한 영업활동의 계획적 전개 여부	-연간, 월간, 주간 영업계획서 및 매뉴얼
		3.1.2 영업정보 DB화 및 활용	1	1	-영업정보 DB화 및 영업프로세스 개선 시행	-영업정보 DB화 자료
		3.1.3 고객지향적 영업활동 전개	3	3	-고객지향적 영업활동 전개 여부	-영업사원 CS(Customer Satisfaction)교육운영안 /고객응대매뉴얼
	3.2 서비스 관리 프로세스 (20)	3.2.1 직접운송비율	7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 시행규칙 제21조의4에 따른 직접운송의무 비율 준수시 만점, 이하 비율계산 ※ 장기용차 기준 적용	-운송계약서, TMS, 운송지원시스템, 화물운송실적시스템(FPIS) 신고내용 등
		3.2.2 계약이행률	4	3	-계약이행 완료 비율이 95% 이상 만점, 이하 비율계산	-운송계약서, TMS, 운송지원시스템 등
		3.2.3 VOC 관리기준 및 DB화	3	4	-VOC 관리 및 처리의 체계적 운영 여부	-VOC 관리기준 및 DB화 자료
		3.2.4 서비스매뉴얼 /서비스매뉴얼 관리지침	3	4	-서비스매뉴얼 보유 및 준수 여부	-서비스매뉴얼/서비스매뉴얼 관리지침
		3.2.5 서비스 모니터링 프로그램 구축	3	4	-서비스모니터링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여부	-서비스 모니터링 운영안, 서비스 모니터링 DB화 자료(고객 불만 분석자료 및 개선실적)
	3.3 안전관리 프로세스 (10)	3.3.1 안전규정 보유 및 관리	2	2	-운송서비스 이행 안전규정 관리 여부	-안전규정(안전지침 체크리스트), 안전규정(안전지침) 준수 현황, 장비 정비일지 등
		3.3.2 사고예방 교육 및 이력관리	1	1	-안전 교육 프로그램 보유 및 관리 여부	-사고예방 교육이수 현황(이수율, 시간, 인원), 사고예방 캠페인 자료
		3.3.3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사고 발생비율	5	5	-신청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지수에 대해 발생빈도가 감소하고 있는지를 평가	-신청기업에서 교통안전공단(http://drv.ts2020.kr)의 조회자료를 출력하여 제출
		3.3.4 배상 보험 가입	2	2	-배상 보험 가입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 영업배상 보험 등 가입여부

1. 조직 및 자원관리 (25점)

1.1 조직관리 (15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지표	지표 의미	배점		평가기준/척도
			일반	이사	
조직관리	직영기사 보유비율	·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영기사 보유 비율	7	6	직영기사 비율 40%이상 만점, 이하 비율계산
	종업원 업무 만족도 조사	·종업원의 업무 만족도에 대한 정기적 조사 여부	3	3	5단계 척도 평가
	협력업체 관리체계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 여부	5	6	5단계 척도 평가

1.1.1 직영기사 보유비율

가. 확인자료

- 조직도,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자(종업원 수)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등
-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 사본
- 위수탁(지입) 차주의 경우 위수탁계약서, 운송료 지급 근거 서류 등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만점기준 : 40% 이상
 - 직영기사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7점, 이사 6점 만점을 부여
- 준직영(3년 이상 근속 위수탁 차주로서 정기적 기간 단위로 운송료를 받음)의 경우 3명 당 직영기사 1명으로 환산하여 반영
- 3년 미만 위수탁 차주로서 정기적 기간 단위로 운송료를 지급받는 경우 5명 당 직영기사 1명으로 환산하여 평가
- 산출식 : $가중치 \times 배점 \times \frac{직영 [] + (3년이상 [] / 3) + (3년미만 [] / 5)}{전체인원수}$
- 산출사례
 - 총 운전기사 인원수 100명, 직영기사 20명, 3년 이상 위수탁 차주 30명, 3년 미만 위수탁 차주 50명의 경우
 - 평가점수 = $2.5 \times 7 \times \{ [20 + (30/3) + (50/5)] / 100 \} = 7점$

1.1.2 종업원 업무 만족도 조사

가. 확인자료

- 내부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 복리후생 증진 관련 서류 등
 - 위수탁(지입) 차주를 포함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함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종업원의 업무 만족도에 대한 정기적 조사 등
- 종업원 업무 만족도 조사 체계
 -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 보유

구분	평가 점수
일회적이며, 체계성이 결여	60~69%
체계적이며 개선프로세스가 확립, 일부 결함이나 격차(Gap)가 존재	70~79%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접근 전개, 특별한 허점 없이 양호하게 전개	80~89%
우수한 분석에 근거하여 철저한 개선 및 통합화가 이루어짐 종업원 만족도와 영업 및 재무성과 측정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경영의사결정에서 고려되고 있음	90~100%

※ 대체할 근거가 있을 경우 50% 이내 점수 부여

1.1.3 협력업체 관리체계

가. 확인자료

- 협력업체 운영방침(안), 협력업체 평가기준 및 결과보고서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 여부
 -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 보유

구분	평가 점수
형식적인 문서화	60~69%
기본적인 협력업체 관리 기준은 설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실행률이 50%수준이며,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70~79%
필요항목 대부분이 규정화 되어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실행이 되고 있으며, 정기적 개정이 진행됨	80~89%
필요항목 대부분이 규정화 되어있고, 협력업체와 유기적 협조체계 운영을 통해 업무성과를 내고 있음	90~100%

※ 대체할 근거가 있을 경우 50% 이내 점수 부여

1.2. 자원관리 (10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지표	지표 의미	배점		평가기준/척도
			일반	이사	
자원관리	운송시설 확보 및 관리	·운송시설(사무소, 차고지, 정비소, 창고 등)의 확보 및 관리체계 구축 여부	2	2	5단계 척도 평가
	운송관련시설투자	·최근 3년간 운송관련 시설투자 현황	2	2	5단계 척도 평가
	직영차량 보유비율	·직영차량 적정 보유 비율	4	4	직영차량 비율 40% 이상 만점, 이하 비율계산
	운송장비 관리 표준매뉴얼	·운송장비 관리 표준매뉴얼 및 주기적인 점검 시행 여부	2	2	5단계 척도 평가

1.2.1 운송시설 확보 및 관리

가. 확인자료

- 운송 필수시설(사무소, 차고지) 및 기타 운송시설(정비소, 창고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산대장, 토지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
- 운송시설 관리지침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사무실, 차고지, 정비소, 창고, 야적장, 장비 등 운송시설 확보 및 관리 유무
 -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 보유

구분	평가 점수
운송서비스 제공에 무리는 없으나, 일부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함	60~69%
관련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운송시설을 확보하고 있음	70~79%
기업역량을 분석하여 기업의 실정에 맞게 운송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	80~89%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및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이 활발함 (5S 운동, 자주보전 활동 등)	90~100%

※ 대체할 근거가 있을 경우 50% 이내 점수 부여

1.2.2 운송관련시설투자

가. 확인자료

- 최근 3년간 운송 필수시설(사무소, 차고지) 및 기타 운송시설(정비소, 창고 등), 장비에 대한 투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산대장 등
- 녹색물류 관련 투자계획 및 실적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사무실, 차고지, 정비소, 창고, 야적장 등 운송시설의 투자 현황, 녹색물류 관련 투자계획, 실적 등
 -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 보유

구분	평가 점수
일회적이며 체계성이 결여	60~69%
최근 3년간 운송시설과 장비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짐	70~79%
최근 3년간 운송시설과 장비에 큰 투자를 하였으며, 기업성장 목표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80~89%
기업성장 목표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투자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녹색물류 관련 투자가 활발함	90~100%

※ 대체할 근거가 있을 경우 50% 이내 점수 부여

1.2.3 직영차량 보유비율

가. 확인자료

- 화물자동차 허가 대수, 자동차등록원부, 자산 보조부원장, 운송료 지급 근거 서류 등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만점기준 : 40% 이상
 - 직영차량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에는 4점 만점을 부여
 - 40% 미만인 경우에는 만점 대비 비율로 계산하여 산정된 점수 부여
- 단, 준직영(3년 이상 근속 위수탁 차량으로 정기적 기간 단위로 운송료를 지급)의 경우, 3대 당 직영차량 1대로 환산하여 반영하며, 3년 미만 위수탁 차량으로 정기적 기간 단위로 운송료를 지급한 경우 5대 당 직영차량 1대로 환산하여 평가

- 산출식 : $\text{가중치} \times \text{배점} \times \frac{\text{직영}[\] + (3\text{년이상}[\]/3) + (3\text{년미만}[\]/5)}{\text{총 대수}[\]}$
- 산출사례
 - 총 대수 100대, 직영차량 20대, 3년 이상 준직영 차량 30대, 3년 미만 준직영 차량 50대의 경우
 - 평가점수 = $2.5 \times 4 \times \{ [20 + (30/3) + (50/5)] / 100 \} = 4\text{점}$

1.2.4 운송장비 관리 표준매뉴얼

가. 확인자료

- 운송장비 관리 표준매뉴얼, 장비 관리 결과보고서 등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운송장비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및 주기적인 점검
 -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 보유

구분	평가 점수
일회적이며 체계성이 결여	60~69%
관련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운송장비를 확보, 관리하고 있음	70~79%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주기적,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음	80~89%
체계적인 관리체계와 개선프로세스를 확립하여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90~100%

※ 대체할 근거가 있을 경우 50% 이내 점수 부여

2. 운송정보시스템 (15점)

2.1. 운송지원 정보시스템 (5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지표	지표 의미	배점		평가기준/척도
			일반	이사	
운송지원 정보시스템	TMS / WMS / OMS 보유여부	·운송관리, 재고관리, 고객주문관리 등 지원 정보시스템 보유	4	4	5단계 척도 평가
	차량별 손익분석시스템 / 차량별 운임 정산시스템 / 차량·장비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보유여부	·차량별 손익분석, 운임정산 시스템, 차량/장비 이력관리 시스템 보유 수준	1	1	보유 차량 및 장비의 이력관리 전산화를 바탕으로 차량별 손익분석 및 운임정산 지원 등에 따라 5단계 척도 평가

2.1.1 TMS / WMS / OMS 보유여부

가. 확인자료

- TMS / WMS / OMS 구축 결과 상세보고서
 - TMS(Transportation Management System; 운송관리시스템)
 - WMS(Warehouse Management System; 창고(재고)관리시스템)
 - OMS(Order Management System; 고객주문관리시스템)
- 신청기업현황보고서(다음의 내용 반드시 포함)
 - 정보시스템 개요, 정보 관리시스템 업무 매뉴얼 등
- 해당 운송지원 정보시스템
 - 심사위원이 확인가능한 방법 제시(현장심사시 재확인)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현장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보유여부
 -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 보유

구분	평가 점수
초보적 수준의 정보시스템 구축, 화주의 정보시스템에 의존	60~69%
현장서비스의 원활한 수행 지원, 일부 결함이나 격차(Gap)가 존재	70~79%
운송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정보가 실시간 수집, 관리되며, 운송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함	80~89%
정보시스템 부문의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3자 물류 수행이 가능한 높은 수준의 정보시스템 보유	90~100%

※ 대체할 근거가 있을 경우 50% 이내 점수 부여

2.1.2 차량별 손익분석시스템/차량별 운임 정산시스템/차량·장비이력관리시스템 구축

가. 확인자료

- 차량별 손익분석시스템/차량별 운임 정산시스템/차량·장비이력관리시스템 구축 결과 상세보고서
- 신청기업현황보고서(다음의 내용 반드시 포함)
 - 정보시스템 개요, 정보 시스템 업무 매뉴얼 등
- 해당 지원 정보시스템
 - 심사위원이 확인가능한 방법 제시(현장심사시 재확인)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차량 등 장비에 대한 이력관리 지원, 차량별 손익분석 및 운임정산 기능 지원 여부
 -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 보유

구분	평가 점수
엑셀 또는 수기로 기록, 관리됨	60~69%
보유차량 및 장비의 이력관리, 운임정산 등 기본적인 기능 구축	70~79%
해당 차량 정보 및 적재물량과 해당 금액의 산출을 통해 차량별 손익을 분석하는 기능 구축	80~89%
운송료, 유가보조금 등 운행 현황관리를 통해 합당한 운송료를 산출할 수 있는 기능 구축	90~100%

※ 대체할 근거가 있을 경우 50% 이내 점수 부여

2.2. 고객지원 정보시스템 (10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지표	지표 의미	배점		평가기준/척도
			일반	이사	
고객지원 정보시스템	고객응대시스템 구축	·인터넷, 전화, 방문 등 다양한 고객응대시스템 구축 여부	5	5	5단계 척도 평가
	온라인 정보제공 여부	·운송약관/운임/차량정보 /차량위치 등의 온라인 정보제공 여부	5	5	5단계 척도 평가

2.2.1 고객응대시스템 구축

가. 확인자료

- 콜센터, 홈페이지, E-Mail, 방문 등 고객응대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방문 등 다양한 고객응대 체계 구축 여부
 - 수집된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 여부
 - 운송서비스 과정에서 고객(화주)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는 의사소통 체계 여부
 - 택배, 이사의 경우 각종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콜센터 구축 여부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고객소통 경로 보유 및 활용도 평가
 -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 보유

구분	평가 점수
일회적이며, 체계성이 결여	60~69%
인터넷, 전화, 방문 등 다양한 고객응대채널을 갖추고 있음	70~79%
고객응대시스템을 통해 고객(화주)의 요구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개선되고 있음	80~89%
수집된 정보를 통합·분류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시스템(체계)을 구현하고 있음	90~100%

※ 대체할 근거가 있을 경우 50% 이내 점수 부여

2.2.2 온라인 정보제공 여부

가. 확인자료

- 운송약관, 운임, 차량정보, 차량위치 등 온라인 정보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운송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가 고객에게 시의 적절하게 제공되는지 여부
 -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위한 정보의 고시, 수정 등의 활동이 정기적으로 시행·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 고객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수준과 양이 고객의 니즈와 기대를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 심사위원이 확인가능한 방법 제시(현장심사시 재확인)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운송약관, 운임, 차량정보, 차량위치 등의 온라인 정보제공
 -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 보유

구분	평가 점수
일회적이며, 체계성이 결여	60~69%
체계적이며 개선프로세스가 확립, 일부결함이나 격차(Gap)가 존재	70~79%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접근 전개, 특별한 허점 없이 양호하게 전개	80~89%
우수한 분석에 근거하여 철저한 개선 및 통합화가 이루어짐	90~100%

※ 대체할 근거가 있을 경우 50% 이내 점수 부여

3. 운송과정관리 (35점)

3.1 영업관리 프로세스 (5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지표	지표 의미	배점		평가기준/척도
			일반	이사	
영업관리 프로세스	물량확보를 위한 영업활동 계획 및 실행	·영업활동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및 매뉴얼 보유 여부	1	1	5단계 척도 평가
	영업정보 DB화 및 활용	·축적된 영업정보DB활용 및 영업프로세스 개선 여부	1	1	5단계 척도 평가
	고객지향적 영업활동 전개	·고객지향적 영업활동을 위한 서비스 매뉴얼 보유 여부	3	3	5단계 척도 평가

3.1.1 물량확보를 위한 영업활동 계획 및 실행

가. 확인자료

- 연간, 월간, 주간 영업계획서 및 매뉴얼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물량확보를 위한 영업활동의 계획적 전개 여부
 -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 보유

구분	평가 점수
일회적이며, 체계성이 결여	60~69%
체계적이며 개선프로세스가 확립, 일부결함이나 격차(Gap)가 존재	70~79%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접근 전개, 특별한 허점 없이 양호하게 전개 고객 및 시장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여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80~89%
우수한 분석에 근거하여 철저한 개선 및 통합화가 이루어짐 제안역량 강화를 통한 수주활동이 활발하며, 우량 화주와의 계약유지율과 신뢰관계가 높음	90~100%

※ 대체할 근거가 있을 경우 50% 이내 점수 부여

3.1.2 영업정보의 DB화 및 활용

가. 확인자료

- 영업정보 DB화 자료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영업정보 DB화 및 영업프로세스 개선 시행
 -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 보유

구분	평가 점수
일회적이며, 체계성이 결여	60~69%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이 기록, 관리, 공유되고 있음	70~79%
축적된 영업정보DB를 활용하여 수주활동 및 기존 고객과의 관계유지에 활용되고 있음	80~89%
영업정보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영업프로세스의 개선 및 화주의 니즈에 대응하는 서비스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90~100%

※ 대체할 근거가 있을 경우 50% 이내 점수 부여

3.1.3 고객지향적 영업활동 전개

가. 확인자료

- 영업사원 CS(Customer Satisfaction)교육운영안 /고객응대매뉴얼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고객지향적 영업활동 전개 여부
 -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 보유

구분	평가 점수
회사차원의 규정이 아닌 영업사원 개인역량에 의존	60~69%
영업사원에 대한 고객대응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이에 준한 영업활동이 진행되고 있음	70~79%
고객중심적 영업활동체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음	80~89%
고객들의 영업사원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아 지속적인 비즈니스 관계가 유지되어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90~100%

※ 대체할 근거가 있을 경우 50% 이내 점수 부여

3.2 서비스 관리 프로세스 (20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지표	지표 의미	배점		평가기준/척도
			일반	이사	
서비스 관리 프로세스	직접운송비율	· 직접운송비율(최근 1년간)	7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 시행규칙 제21조의4에 따른 직접운송의무 비율 준수시 만점, 이하 비율계산 (※ 장기용차 기준 적용)
	계약이행률	· 계약이행률(최근 1년간)	4	3	계약이행률 95%이상 만점, 이하 비율계산
	VOC 관리기준 및 DB화	· VOC(Voice Of Customer) 관리 및 처리의 체계적 운영	3	4	5단계 척도 평가
	서비스매뉴얼/서비스 매뉴얼 관리지침	· 서비스매뉴얼 보유 및 준수 여부	3	4	5단계 척도 평가
	서비스 모니터링 프로그램 구축	· 서비스모니터링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여부	3	4	5단계 척도 평가

3.2.1 직접운송비율

가. 확인자료

- 운송계약서, TMS, 운송지원시스템, 화물운송실적시스템(FPIS) 신고내용 등
 - 연간 운송 매출액, 운송+주선 겸업 사업자의 경우 운송+주선 매출액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만점기준 : 화주와 계약한 화물은 50%이상(운송+주선 겸업은 30%이상), 운수사업자와 계약한 화물은 100% 직접운송할 경우에 일반 7점, 이사 5점 만점을 부여
 - 화주와 계약한 화물은 일반 3.5점, 이사 2.5점, 운수사업자와 계약한 화물은 일반 3.5점, 이사 2.5점 부여
 - 100% 화주(또는 운수사업자)와 계약한 화물일 경우 일반 7점, 이사 5점 만점 부여
- 위 만점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만점 대비 비율로 계산하여 산정된 점수 부여
 - 자사차량은 1년 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한 협력사(개별, 용달 포함) 차량까지를 의미함
 - ※ 위 장기용차의 경우 연간 운송횟수가 96회(1회/일만 인정) 이상인 화물자동차만 인정
- 직접운송비율 : 자사차량 운송금액(위탁한 금액을 제외) / 전체 운송관련 매출액(화주와 계약한 화물 또는 운수사업자와 계약한 화물)
- 산출식 : $배점 \times \frac{신청기업 직접운송비율[\%]}{만점기준[50\%(또는 30\%) 및 100\%]}$
- 산출사례
 - 운송업만 영위하며 화주와 계약한 화물만 운송하는 업체의 직접운송 비율 24% 인 경우
 - 평가점수 = (배점) 7점 × (24 / 50) = 3.36점

3.2.2 계약이행률

가. 확인자료

- 운송계약서, TMS, 운송지원시스템 등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만점기준 : 95% 이상
- 계약이행 완료 비율이 95% 이상인 경우에 일반 4점, 이사 3점 만점을 부여
- 95% 미만인 경우에는 만점 대비 비율로 계산하여 산정된 점수 부여
 ※ 계약이행률 : 계약완료건수 / 전체 계약건수
- 산출식 : $\text{배점} \times \frac{\text{신청기업 계약이행률}[\%]}{\text{만점기준}[95\%]}$
- 산출사례
 - 계약이행률 90% 인 경우
 - 평가점수 = (배점) 4점 × (90 / 95) = 3.79점

3.2.3 VOC(Voice Of Customer) 관리기준 및 DB화

가. 확인자료

- VOC 관리기준 및 DB화 자료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VOC 관리 및 처리의 체계적 운영 여부
 -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 보유

구분	평가 점수
VOC관리가 실무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적관리는 미흡함	60~69%
회사 차원에서 VOC관리기준이 수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실적관리는 미흡한 수준임	70~79%
VOC에 대한 처리율과 이에 대한 만족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영층에 정기적으로 보고가 진행됨	80~89%
VOC가 DB로 관리되어 서비스품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음	90~100%

※ 대체할 근거가 있을 경우 50% 이내 점수 부여

3.2.4 서비스매뉴얼/서비스매뉴얼 관리지침

가. 확인자료

- 서비스매뉴얼/서비스매뉴얼 관리지침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서비스매뉴얼 보유 및 준수 여부
 -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 보유

구분	평가 점수
서비스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으나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60~69%
서비스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주체도 선정되어 있으나, 활용도는 미흡함	70~79%
서비스매뉴얼에 기반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교육과 개정을 진행하고 있음	80~89%
협력업체까지 서비스매뉴얼을 공유하고 이에 준하여 고객대응을 진행하고 있음	90~100%

※ 대체할 근거가 있을 경우 50% 이내 점수 부여

3.2.5 서비스 모니터링 프로그램 구축

가. 확인자료

- 서비스 모니터링 운영안, 서비스 모니터링 DB화 자료(고객 불만 분석자료 및 개선실적)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서비스모니터링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여부
 -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 보유

구분	평가 점수
서비스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으나 비정기적이며, 형식적임	60~69%
서비스모니터링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가 정형화되어 있으며, 진행되고 있으나 결과에 대한 사후대응이 미흡함 (조사수준에 그침)	70~79%
서비스모니터링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결과에 대한 대응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80~89%
사내 뿐 아니라 사외전문기관을 통한 서비스모니터링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음	90~100%

※ 대체할 근거가 있을 경우 50% 이내 점수 부여

3.3 안전관리 프로세스 (10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지표	지표 의미	배점		평가기준/척도
			일반	이사	
안전관리 프로세스	안전규정 보유 및 관리	·운송서비스 이행(화물상·하차작업 포함) 안전 규정 또는 작업절차서, 사고예방을 위한 예방정비 활동체계 마련 여부	2	2	5단계 척도 평가
	사고예방 교육 및 이력관리	·사고예방, 안전 교육체계 수립 및 관리	1	1	5단계 척도 평가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사고 발생비율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사고 관련 발생비율 감소 여부	5	5	최근 2년간의 교통사고지수 환산점수의 평균값으로 채점하여 평가점수 부여
	배상 보험 가입	·배상 보험 가입 여부 및 보상체계	2	2	5단계 척도 평가

3.3.1 안전규정 보유 및 관리

가. 확인자료

- 안전규정(안전지침 체크리스트), 안전규정(안전지침) 준수 현황, 장비 정비일지 등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운송서비스 이행 안전규정 관리 여부
 -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 보유

구분	평가 점수
일회적이며, 체계성이 결여	60~69%
안전에 관한 규정이 구비됨	70~79%
안전에 관한 규정이 구비되고, 이에 충족되도록 일상적 점검이 이루어짐	80~89%
우수한 분석에 근거하여 철저한 개선 및 통합화가 이루어짐 비상사태(돌발 상황)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프로세스가 정립되어 있음	90~100%

※ 대체할 근거가 있을 경우 50% 이내 점수 부여

3.3.2 사고예방 교육 및 이력관리

가. 확인자료

- 사고예방 교육이수 현황(이수율, 시간, 인원), 사고예방 캠페인 자료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안전 교육 프로그램 보유 및 관리 여부
 -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 보유

구분	평가 점수
일회적이며, 체계성이 결여	60~69%
연간/월간 안전관련 교육체계 정립	70~79%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안전 프로세스가 구축됨	80~89%
우수한 분석에 근거하여 철저한 개선 및 통합화가 이루어짐 안전운행을 위해 현장직원들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90~100%

※ 대체할 근거가 있을 경우 50% 이내 점수 부여

3.3.3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사고 발생비율

가. 확인자료

- 최근 2년간 교통사고 지수
- 신청기업에서 교통안전공단(<http://drv.ts2020.kr>)의 조회자료를 출력하여 제출
 - 자료 미제출시 0%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신청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지수에 대해 발생빈도가 감소하고 있는지를 평가
- 만점기준 : 최근 2년간의 교통사고지수 환산점수의 평균값으로 채점하여 평가점수 부여
- 산출식 =
$$\frac{D-2\text{년 교통사고지수 환산점수} + D-1\text{년 교통사고지수 환산점수}}{2}$$

$$\text{- 교통사고지수} = \frac{\text{교통사고건수}}{\text{화물자동차등록대수}} \times 10$$

- ※ 교통사고지수를 산정하는 경우, 경상사고는 0.3건, 중상사고는 0.7건, 사망사고는 1건으로 처리
 - 가. 사망사고: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때 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람이 사망한 사고
 - 나. 중상사고: 교통사고로 의사의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힌 사고
 - 다. 경상사고: 교통사고로 의사의 진단 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힌 사고

- 평가점수 부여

구분	평가 점수
교통사고지수 0.01미만일 경우	5점 부여
교통사고지수 0.01이상 0.05미만일 경우	4.5점 부여
교통사고지수 0.05이상 0.10미만일 경우	4점 부여
교통사고지수 0.10이상 0.15미만일 경우	3.5점 부여
교통사고지수 0.15이상 0.20미만일 경우	3점 부여
교통사고지수 0.20이상 0.25미만일 경우	2.5점 부여
교통사고지수 0.25이상 0.30미만일 경우	2점 부여
교통사고지수 0.30이상 0.35미만일 경우	1.5점 부여
교통사고지수 0.35이상 0.40미만일 경우	1점 부여
교통사고지수 0.40이상 0.45미만일 경우	0.5점 부여
교통사고지수 0.45이상일 경우	0점 부여

3.3.4 배상 보험 가입

가. 확인자료

-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 영업배상 보험 등 가입여부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배상 보험 가입
 -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 보유

구분	평가 점수
일회적이며, 체계성이 결여	60~69%
관련법을 준수하는 수준의 보험가입 이행	70~79%
고객(화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수준으로 보험 가입 및 갱신이 이루어짐	80~89%
서비스 실패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보증 및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음	90~100%

※ 대체할 근거가 있을 경우 50% 이내 점수 부여

Part 2. 우수물류기업 인증분야별 인증심사기준

IX. 화물정보망기업

IX. 화물정보망기업

□ 기본방향

- 화물정보망사업자의 경영전략 및 관리체계가 화물 및 차량 정보를 모범적으로 제공하여 운송서비스 향상과 거래 투명성 제고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함
- 운송단계를 파악하여 불법적인 운송단계를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함
- 과적정보입력 차단기능을 반드시 포함하여 화물운송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화물운송정보 관리 및 제공 서비스가 가능한 정보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FPIS)으로의 실적신고를 위한 실적의 정확한 확인 및 전송이 용이하여야 함
- 기본적인 배차프로그램 기능을 포함하여야 함

□ 필수요건

- 화물운송 거래정보 관리체계가 우수할 것
- 화물정보망 운영의 안정성 및 보안관리가 양호할 것
- 화물정보망의 이용 및 거래 실적이 적정할 것
- 화물운송거래의 투명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적이 양호할 것
- 물류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 허가/등록 취소 또는 사업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서비스의 전문성 및 안전성 정도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 화물정보망 시스템 메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 확보
 - 소프트웨어 등록 및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온전하게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증평가 심사대상으로 인정

□ 인증대상

-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는 외부감사를 받은 서류에 한함
- 신청업체가 여러 분야의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화물정보망사업분야의 매출액과 재무성과만 인정함
- 자본 잠식 업체의 경우 우수 업체 인증심사 접수 불가함

□ 중점점검사항

- ※ 중점점검사항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증평가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회원접근의 공정성
 - 화물 및 공차 정보에 대한 회원접근 공정성 확보 및 관리자에 의한 임의 배정 배제
 - 관리자에 의한 임의 배정 차단 기능이 반드시 존재하고, 해당 정보에 대한 회원접근 공정성 보장 시에 인증 가능
 - 과적정보 차단
 - 과적 화물운송거래 방지 기능
 - 과적 화물운송거래 차단 기능 제공 및 운송의뢰자에 의한 화물중량 입력 필수화
 - 운송거래경로 확인
 - 불법 운송거래경로 확인 및 모니터링 기능
 - 운송거래경로 확인기능 작동수준
 - 불법 운송거래경로 모니터링 기능
 - 직접운송의무 이행 확인
 - 정보망 이용자 간 운송거래물량에 대한 직접운송 여부 확인
 - 운송거래경로 확인 기반 직접운송여부 확인기능
 - 직접운송 물량 집계 기능
 - 배차차량 중개대리 검증
 - 중개대리 허용범위 준수여부 모니터링
 - 배차차량 중개대리 내역확인 기능 작동수준
 - 소프트웨어 운영체계 구축 여부 및 수준 평가
 - 현 S/W 작동수준 및 안정성, 지속가능성, 향후 보완 및 확대 가능성

□ 화물정보망기업 인증분야의 심사항목 체계 (배점: 75점)

심사항목 및 배점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		평가지표 및 배점		신규	정기
1. 화물운송 거래 정보 관리	20	1.1 화물 및 차량 정보 관리시스템	15	1.1.1 정보 등록	2.5	○	○
				1.1.2 정보 검색	2.5	○	○
				1.1.3 회원접근의 공정성	10	○	○
		1.2 화물운송실적정보 관리시스템	5	1.2.1 실적정보 보관	1	○	○
				1.2.2 실적정보 출력	1	○	○
				1.2.3 실적정보 백업	1	○	○
				1.2.4 사후 실적정보 수정 가능성	1	○	○
1.2.5 사후 실적정보 부당수정 및 변경방지 모니터링 체계	1			○	○		
2. 화물운송 시장 거래제도 이행능력	30	2.1 화물운송거래 합법성 모니터링 기능	20	2.1.1 과적정보 차단	10	○	○
				2.1.2 운송거래경로 확인	5	○	○
				2.1.3 직접운송의무 이행 확인	2	○	○
				2.1.4 배차차량 중개대리 검증	2	○	○
				2.1.5 위탁화물관리책임 이행 확인	1	○	○
		2.2 화물운송실적신고 (FPIS) 지원 기능	10	2.2.1 실적관리시스템에의 실적신고	5	○	○
				2.2.2 실적신고 내역 및 결과 확인	5	○	○
3. 시스템 운영실태	15	3.1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처리용량 및 운영체계 수준	10	3.1.1 하드웨어 - 확보수준	2	○	○
				3.1.1 하드웨어 - 처리능력	2	○	○
				3.1.2 소프트웨어 - 확보	필수	○	○
				3.1.2 소프트웨어 - 구축수준	4	○	○
				3.1.3 시스템이중화 여부	2	○	○
		3.2 정보보안관리	5	3.2.1 거래정보 접근차단 기능	2	○	○
				3.2.1 거래정보 접근 모니터링	1	○	○
				3.2.2 제3자 정보접근 차단	1	○	○
3.2.2 제3자 정보접근 모니터링	1	○	○				
4. 화물정보망 이용 규모	10	4.1 가입회원 규모	5	4.1.1 가입회원 수	5	○	※
		4.2 운송거래 실적규모	5	4.2.1 운송거래 실적규모	5	○	※
		4.3 전자인수증 활용실적	(1)	4.3.1 전자인수증 활용실적	(1)	○	○

※ 합법적인 시스템을 갖춘 화물정보망 업체가 인증 후 일정한 화물운송실적을 확보하여 이를 유지함으로써 인증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 점검 평가기준을 별도로 마련

□ 화물정보망기업 인증분야의 평가지표 (배점: 75점)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및 배점		지표의미/평가기준/척도	확인자료	
1. 화물운송 거래 정보 관리 (20)	1.1 화물 및 차량 정보 관리시스템 (15)	1.1.1 정보 등록	2.5	-정보망 회원의 화물 및 차량 정보 등록 가능 범위 및 수준	-화물운송정보망 시스템 구축결과 상세보고서, 신청 기업현황보고서, 해당 화물운송정보망 시스템	
		1.1.2 정보 검색	2.5	-정보망 회원의 화물 및 차량 정보 검색 가능 범위 및 수준		
		1.1.3 회원접근의 공정성	10	-화물 및 공차 정보에 대한 회원 접근 공정성 확보 및 관리자에 의한 임의 배정 배제		
	1.2 화물운송실적 정보 관리시스템 (5)	1.2.1 실적정보 보관	1	-운송거래 실적정보 보관 기능 존재 여부 및 작동 수준	-화물운송정보망 시스템 구축결과 상세보고서, 신청 기업현황보고서, 해당 화물운송정보망 시스템	
		1.2.2 실적정보 출력	1	-운송거래 실적정보 출력 기능 존재 여부 및 작동 수준		
		1.2.3 실적정보 백업	1	-운송거래 실적정보 백업 기능 존재 여부 및 작동 수준		
		1.2.4 사후 실적정보 수정 가능성	1	-운송거래 완료 후 실적정보 임의 수정 및 변경 제한장치 존재 여부 및 작동 수준		
		1.2.5 사후 실적정보 부당수정 및 변경방지 모니터링 체계	1	-운송거래 완료 후 실적정보의 임의부당 수정과 변경 시도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존재 여부 및 작동 수준		
	2. 화물운송 시장 거래제도 이행능력 (30)	2.1 화물운송거래 합법성 모니터링 기능 (20)	2.1.1 과적정보 차단	10	-과적 화물운송거래 방지 기능	-화물운송정보망 시스템 구축결과 상세보고서, 신청 기업현황보고서, 해당 화물운송정보망 시스템
			2.1.2 운송거래 경로 확인	5	-불법 운송거래경로 확인 및 모니터링 기능	
2.1.3 직접운송 의무 이행 확인			2	-정보망 이용자 간 운송거래물량에 대한 직접운송 여부 확인		
2.1.4 배차차량 중개대리 검증			2	-중개대리 허용범위 준수여부 모니터링		
2.1.5 위탁화물 관리책임 이행 확인			1	-정보망 이용자 간 운송거래물량에 대한 위탁화물책임운송 여부 확인		
2.2 화물운송실적 신고 (FPIS) 지원 기능 (10)		2.2.1 FPIS 실적신고	5	-실적관리시스템으로의 실적신고 가능성 및 용이성	-화물운송정보망 시스템 구축결과 상세보고서, 신청 기업현황보고서, 해당 화물운송정보망 시스템	
		2.2.2 실적신고 내역 및 결과 확인	5	-실적신고 완료 후 신고내역 및 결과 확인 용이성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지표 및 배점		지표의미/평가기준/척도	확인자료
3. 시스템 운영실태 (15)	3.1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처리용량 및 운영체계 수준 (10)	3.1.1 하드웨어 - 확보수준	2	-화물정보망 시스템 운영을 위한 하드웨어 소유권 및 확보 현황 과 운영관리환경	-화물정보망 시스템 하드웨 어 및 소프트웨어 확보 현 황 증빙서류, 화물운송정 보망 시스템 구축결과 상 세보고서, 신청기업현황보 고서, 해당 화물운송정보 망 시스템
		3.1.1 하드웨어 - 처리능력	2	-하드웨어 처리용량 및 향후 능 력 확장성	
		3.1.2 소프트웨어 - 확보	필수	-화물정보망 시스템 메인 소프트 웨어에 대한 라이선스 확보	
		3.1.2 소프트웨어 - 구축수준	4	-소프트웨어 운영체계 구축 여부 및 수준 평가	
		3.1.3 시스템 이중화 여부	2	-시스템이중화 수준	
	3.2 정보보안관리 (5)	3.2.1 거래정보 접근차단 기능	2	-회원고유거래정보 접근 차단 기 능	-화물운송정보망 시스템 구 축결과 상세보고서, 신청 기업현황보고서, 해당 화 물운송정보망 시스템
		3.2.1 거래정보 접근 모니터링	1	-회원고유거래정보 접근 모니터 링 기능	
		3.2.2 제3자 정보접근 차단	1	-제3자 정보접근 차단 기능	
		3.2.2 제3자 정보접근 모니터링	1	-제3자 정보접근 모니터링 기능	
	4. 화물정보망 이용 규모 (10)	4.1 가입회원 규모 (5)	4.1.1 가입회원 수	5	-정보망 회원인 화주, 운송 및 주선업체의 수
4.2 운송거래 실적규모 (5)		4.2.1 운송거래 실적규모	5	-정보망 회원간 배차 수반 거래 건수 기준 최근 3개월간 총 운 송거래건수	-운송완료 기준 운송거래 실적 상세내역(최근 3개월 간 실적)
4.3 전자인수증 활용실적 (가산점 1점)		4.3.1 전자인수증 활용실적	(1)	-기존의 종이로 작성된 화물운송 장 및 화물인수증을 종이를 사 용하지 않고 전자화 (Paperless) 하여 사용할 경우 전자인수증 서비스가 가능한 것 으로 인정	-전자인수증 서비스가 가능 한 시스템에 대한 제출 자 료

1. 화물운송거래정보 관리 (20점)

1.1. 화물 및 차량 정보 관리시스템 (15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지표	지표 의미	배점	평가기준/척도
화물 및 차량 정보 관리시스템	정보 등록	·정보망 회원의 화물 및 차량 정보 등록 가능 범위 및 수준	2.5	-등록 기능(2점): 불가시 항목당 0.2점 감점 -등록 용이성 및 정확성(0.5점): 5점 척도 평가 적용
	정보 검색	·정보망 회원의 화물 및 차량 정보 검색 가능 범위 및 수준	2.5	-검색 기능(2점): 불가시 항목당 0.2점 감점 -검색 용이성 및 정확성(0.5점): 5점 척도 평가 적용
	회원접근의 공정성*	·화물 및 공차 정보에 대한 회원 접근 공정성 확보 및 관리자에 의한 임의 배정 배제	10	※ 중점점검사항 관리자에 의한 임의 배정 차단 기능이 반드시 존재하고, 해당 정보에 대한 회원접근 공정성 보장 시에 인증 가능

※ 중점점검사항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증평가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가. 확인자료

- 화물운송정보망 시스템 구축결과 상세보고서
- 신청기업현황보고서(다음의 내용 반드시 포함)
 - 화물운송정보망 시스템 개요, 운송거래정보 제공시스템 설명, 화물운송정보망 운송거래 정보 관리시스템 업무 매뉴얼 등
 - 서비스 이용 요금 체계 등의 가격정책을 포함하는 비즈니스 모델(수익모델 등)
 - 서비스이용약관(제개정이력포함), 서비스이용가입신청서(제개정이력포함),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 해당 화물운송정보망 시스템
- 해당 업체 고객 대상 인터뷰 등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정보 등록

구분	배점	점수 산출방법
화물운송거래를 위한 필요 화물정보 ¹⁾ 등록 기능	1점	실시간 등록 불가 항목 1개당 0.2점 감점
화물운송거래를 위한 필요 공차정보 ²⁾ 등록 기능	1점	실시간 등록 불가 항목 1개당 0.2점 감점
정보 등록의 용이성 및 정확성	0.5점	정보 등록의 용이성 및 등록정보의 정확성 관리 수준을 5점 척도로 평가

주 1) 상·하차 요청일시, 상·하차지, 운송화물 중량, 화물의 형태 및 품목, 운송료

2) 공차일시 및 운송가능시간, 상·하차 희망지, 차량번호, 차종과 적재중량 등 차량제원 정보, 운송료

※ 상기 정보의 관련 양식이나 형태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실적정보가 갖추어야 하는 양식과 형태를 원칙적으로 따르도록 함

○ 정보 검색

구분	배점	점수 산출방법
화물운송거래를 위한 필요 화물정보 ¹⁾ 검색 기능	1점	실시간 검색 불가 항목 1개당 0.2점 감점
화물운송거래를 위한 필요 공차정보 ²⁾ 검색 기능	1점	실시간 검색 불가 항목 1개당 0.2점 감점
정보 검색의 용이성 및 정확성	0.5점	정보 검색의 용이성 및 정확성을 5점 척도로 평가

주 1) 상·하차 요청일시, 상·하차지, 운송화물 중량, 화물의 형태 및 품목, 운송료

2) 공차일시 및 운송가능시간, 상·하차 희망지, 차량번호, 차종과 적재중량 등 차량제원 정보, 운송료

※ 상기 정보의 관련 양식이나 형태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실적정보가 갖추어야 하는 양식과 형태를 원칙적으로 따르도록 함(※예: 상·하차지의 경우 우편번호로 변환 가능해야 함)

○ 회원접근의 공정성(※중점점검사항)

구분	점수 산출방법
관리자에 의한 운송거래물량 임의 배정 차단 기능 존재	2점 부여
관리자에 의한 임의 배차 차단 기능 존재	2점 부여
운송거래물량정보에 대한 회원접근 공정성 확보 수준	물량정보 등록 및 검색에 대한 정보망 이용자 접근 공정성 확보 수준을 5점 척도로 평가 (해당요소 배점: 3점)
공차정보에 대한 회원접근 공정성 확보 수준	공차정보 등록 및 검색에 대한 정보망 이용자 접근 공정성 확보 수준을 5점 척도로 평가 (해당요소 배점: 3점)

1.2 화물운송실적정보 관리시스템 (5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지표	지표 의미	배점	평가기준/척도
화물운송 실적정보 관리 시스템	실적정보 보관	·운송거래 실적정보 보관 기능 존재 여부 및 작동 수준	1	실적정보 저장 기능 존재 0.5점, 나머지 0.5점에 대하여 정보저장기능의 안정성과 편의성에 대하여 5점 척도 평가
	실적정보 출력	·운송거래 실적정보 출력 기능 존재 여부 및 작동 수준	1	실적정보 검색 및 출력 기능 존재 0.5점, 나머지 0.5점에 대하여 정보출력 기능의 시의성과 편의성에 대하여 5점 척도 평가
	실적정보 백업	·운송거래 실적정보 백업 기능 존재 여부 및 작동 수준	1	정보망 DB서버에 일정기간 및 용량 범위에서 실적정보 백업기능 제공시 0.5점, 나머지 0.5점에 대하여 백업기간 및 용량수준에 따른 평가
	사후 실적정보 수정 가능성	·운송거래 완료 후 실적정보 임의 수정 및 변경 제한장치 존재 여부 및 작동 수준	1	계약물량의 운송완료 후 정보망 이용자에 의한 운송거래 완료확인을 통하여 거래실적정보 고정 기능 존재 0.5점, 나머지 0.5점에 대하여 사후 실적정보 변동 제한기능 작동수준에 대하여 5점 척도 평가
	사후 실적정보 부당수정 및 변경방지 모니터링 체계	·운송거래 완료 후 실적정보의 임의부당 수정과 변경 시도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존재 여부 및 작동 수준	1	운송거래 완료 이후 고정된 실적정보에 대한 부당 수정 및 변경 시도와 내역을 모니터링 하는 기능 존재 0.5점, 나머지 0.5점에 대하여 해당 모니터링 기능 작동수준에 대한 5점 척도 평가 적용

가. 확인자료

- 화물운송정보망 시스템 구축결과 상세보고서
- 신청기업현황보고서(다음의 내용 반드시 포함)
 - 화물운송정보망 시스템 개요, 화물운송실적정보 관리시스템 업무 매뉴얼 등
- 해당 화물운송정보망 시스템
- 해당 업체 고객 대상 인터뷰 등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실적정보 보관 기능

구분	점수 산출방법
실적정보 저장 및 보관 기능 존재	0.5점 부여
정보시스템 내에서 해당 기능 작동 수준	보관의 체계성, 편의성, 안정성 등에 대하여 5점 척도 평가 적용 점수 산출(해당요소 배점: 0.5점)

○ 실적정보 출력 기능

구분	점수 산출방법
실적정보 검색 및 출력 기능 존재	0.5점 부여
정보시스템 내에서 해당 기능 작동 수준	정보검색 및 출력의 신속성, 편의성, 체계성 등에 대하여 5점 척도 평가 적용 점수 산출 (해당요소 배점: 0.5점)

○ 실적정보 백업 기능

구분	점수 산출방법
실적정보 백업 기능 존재	0.5점 부여
실적정보 백업 기능 및 서비스 제공의 수준	12개월 이상(100%), 이하 비율 계산 (해당요소 배점: 0.5점) - 산출식 : 배점(0.5점) × $\frac{Min(12, \text{정보 백업 개월수})}{12}$

○ 사후 실적정보 수정 가능성

구분	점수 산출방법
운송거래 완료확인 및 사후 실적정보 고정 기능 존재	0.5점 부여
정보시스템 내에서 해당 기능 작동 수준	운송거래 완료확인 기능 및 사후 실적정보 고정 기능의 작동 정확성, 상호 기능연계성 등에 대하여 5점 척도 평가 적용 점수 산출 (해당요소 배점: 0.5점)

○ 사후 실적정보 부당 수정 및 변경 방지 모니터링 체계

구분	점수 산출방법
사후 실적정보 임의부당 수정 또는 변경 시도 및 내역 모니터링 기능 존재	0.5점 부여
정보시스템 내에서 해당 기능 작동 수준	모니터링 기능 작동의 시의성, 정확성, 체계성 등에 대하여 5점 척도 평가 적용 점수 산출 (해당요소 배점: 0.5점)

2. 화물운송시장 거래제도 이행능력 (30점)

2.1 화물운송거래 합법성 모니터링 기능 (20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지표	지표 의미	배점	평가기준/척도
화물운송거래 합법성 모니터링 기능	과적정보 차단*	·과적 화물운송거래 방지 기능	10	-과적 화물운송거래 차단 기능 제공 및 운송의뢰자에 의한 화물중량 입력 필수화 10점(※ 중점점검사항)
	운송거래경로 확인*	·불법 운송거래경로 확인 및 모니터링 기능	5	-운송거래경로 확인기능 작동수준 5점척도 평가(해당배점: 4점) (※ 중점점검사항) -불법 운송거래경로 모니터링 기능 1점
	직접운송의무 이행 확인*	·정보망 이용자 간 운송거래물량에 대한 직접운송 여부 확인	2	-운송거래경로 확인 기반 직접운송여부 확인기능 작동수준 5점척도 평가(해당배점: 1점) (※ 중점점검사항) -직접운송 물량 집계 기능 제공 1점
	배차차량 중개대리 검증*	·중개대리 허용범위 준수여부 모니터링	2	-배차차량 중개대리 내역확인 기능 작동수준 5점척도 평가(해당배점: 1점) (※ 중점점검사항) -중개대리 허용기준 위반알림기능 1점
	위탁화물관리 책임 이행 확인	·정보망 이용자 간 운송거래물량에 대한 위탁화물책임운송 여부 확인	1	-일정기간 내 위탁화물책임운송 확인 기능작동수준 5점척도 평가 (해당배점: 1점)

※ 중점점검사항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증평가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다음 목에 해당하는 경우 위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점수를 차감함

- ① 최근 2년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주선사업관련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가. 확인자료

- 화물운송정보망 시스템 구축결과 상세보고서
- 신청기업현황보고서(다음의 내용 반드시 포함)
 - 화물운송정보망 시스템 개요, 화물운송정보망 운송거래 정보 관리시스템 업무 매뉴얼 등
- 해당 화물운송정보망 시스템
- 해당 업체 고객 대상 인터뷰 등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처분 사항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과적정보 차단

구분	점수 산출방법
과적 화물운송거래 차단 기능 제공 및 운송의뢰자에 의한 화물중량 입력 필수화 (※중점점검사항)	10점 부여
그렇지 않은 경우	0점 부여

○ 운송거래경로 확인

구분	점수 산출방법
운송거래경로 확인 기능 작동 수준 (※중점점검사항)	정확성, 구체성, 신뢰성 등에 입각하여 5점 척도로 평가 (해당 배점: 4점)
불법 운송거래경로 모니터링 기능 제공 시	1점 부여

○ 직접운송의무 이행 확인

구분	점수 산출방법
운송거래경로 확인 기반 직접운송여부 확인 기능 작동 수준 (※중점점검사항)	정확성, 구체성, 신뢰성 등에 입각하여 5점 척도로 평가 (해당 배점: 1점)
직접운송 물량 집계 기능 제공 시	1점 부여

○ 배차차량 중개대리 검증

구분	점수 산출방법
배차차량 중개대리 내역확인 기능 작동 수준 (※중점점검사항)	정확성, 구체성, 신뢰성 등에 입각하여 5점 척도로 평가 (해당 배점: 1점)
중개대리 허용기준 위반 시 알림기능 제공 시	1점 부여

○ 위탁화물관리책임 이행 확인

구분	점수 산출방법
일정기간 내 위탁화물책임운송 확인 기능 작동 수준	정확성, 구체성, 신뢰성 등에 입각하여 5점 척도로 평가 (해당 배점: 1점)

2.2 화물운송실적신고(FPIS) 지원 기능 (10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지표	지표 의미	배점	평가기준/척도
화물운송 실적신고 (FPIS) 지원 기능	실적관리시스템에의 실적신고	·실적관리시스템으로의 실 적신고 가능성 및 용이성	5	-의무신고항목 자동 신고 가능 4점 -의무신고항목 신고 용이성 5점 척도 평가 점수 산출(해당배점: 1점)
	실적신고 내역 및 결과 확인	·실적신고 완료 후 신고내 역 및 결과 확인 용이성	5	-실적신고 완료 후 신고내역 및 결과 확인 기능 제공 3점 -신고내역 및 결과 확인 용이성 5점 척도 평가 점수 산출(해당배점: 2점)

가. 확인자료

- 화물운송정보망 시스템 구축결과 상세보고서
- 신청기업현황보고서(다음의 내용 반드시 포함)
 - 화물운송정보망 시스템 개요, 화물운송실적정보 관리시스템 업무 매뉴얼 등
- 해당 화물운송정보망 시스템
- 해당 업체 고객 대상 인터뷰 등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실적관리시스템에의 실적신고

구분	점수 산출방법
실적관리시스템으로의 의무신고항목 자동 신고 기능	-모든 의무신고항목*에 대한 자동신고 가능 시 4점 부여 -해당평가항목 배점 총점인 4점에서 의무신고항목 중 자동신고 불가 항목 1개당 최대 0.5점씩 감점
의무신고항목에 대한 신고 용이성	신고의 신속성, 편의성, 정확성 등에 입각하여 5점 척도로 평가 (해당 배점: 1점)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2조에 따른 의무신고항목에 준함

- 실적신고 내역 및 결과 확인

구분	점수 산출방법
실적신고 완료 확인 후 신고내역 및 결과 확인 기능 제공 시	3점 부여
신고내역 및 결과 확인 용이성	확인 가능 신고내역의 구체성, 상세성, 정확성 및 결과 확인 편의성, 신속성 등에 대한 5점 척도로 평가 (해당 배점: 2점)

3. 시스템 운영실태 (15점)

3.1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처리용량 및 운영체제 수준 (10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지표	지표 의미	배점	평가기준/척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처리용량 및 운영체제 수준	하드웨어 확보수준 및 처리능력	·화물정보망 시스템 운영을 위한 하드웨어 소유권 및 확보 현황과 운영관리환경	2	-화물운송정보망 사업자가 하드웨어에 대한 직접 소유권을 가지고 자신의 사업장에 하드웨어를 직접 확보하고 있는 경우 2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소유권 및 운영관리 장소나 주체에 대하여 평가 수행 (이를 위해 차후 별도 설명서류 등 제출 필요)
		·하드웨어 처리용량 및 향후 능력 확장성	2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6개월간의 정보처리용량에 근거하여 산정한 하드웨어의 연간 정보처리능력에 따라 평가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현황 및 구축수준	·화물정보망 시스템 메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 확보*	※ 인증 필수 요건	소프트웨어 등록 및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온전하게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증평가 심사대상으로 인정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구축 여부 및 수준 평가 (※중점점검사항)	4	현 S/W 작동수준 및 안정성, 지속가능성, 향후 보완 및 확대 가능성에 대하여 평가기준 범주별 평가
시스템이중화 여부	·시스템이중화 수준	2	시스템이중화 구축 현황과 향후 보완 계획 평가	

※ 인증필수요건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증평가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가. 확인자료

- 화물정보망 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확보 현황 증빙서류
 - 하드웨어 소유권, 설치 장소 등에 대한 정보 포함
 - IDC 등 해당 정보망사업자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하드웨어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 포함(이와 관련하여 필요시 추가 자료 제출)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License) 확보현황 포함
- 화물운송정보망 시스템 구축결과 상세보고서
- 신청기업현황보고서(다음 내용 포함)
 - 화물정보망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에 대한 중장기 계획서
 - 최근 6개월간 하드웨어 처리용량 근거자료
- 해당 화물운송정보망 시스템 등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하드웨어 확보 현황 및 운영관리환경

구분	점수 산출방법
하드웨어에 대한 직접적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자사 사업장 내에 하드웨어 설치 및 운영관리 시	2점 부여
그렇지 않은 경우*	하드웨어 확보현황 및 운영관리 장소와 주체에 대한 별도 평가 수행

* 인증심사 대상 정보망사업자가 하드웨어의 직접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나 자사 사업장 이외 장소에 하드웨어를 설치하여 운영·관리하는 경우는 해당 평가요소에 배당된 총점(2점) 범위에서 별도 평가 실시

○ 하드웨어 처리용량 및 향후 처리능력 확장성 (※최근 6개월간 처리용량 기준)

구분	점수 산출방법
200% 이상의 하드웨어 처리용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단계적 확장시나리오까지 구체적으로 수립한 경우	2점 부여(감점 없음)
정보망 운영에 당장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으나 향후 거래증가 시 별도의 하드웨어 확장이 필요한 경우	1점 부여(1점 감점)
현재 하드웨어 처리용량이 포화상태여서 정보망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	0점 부여(점수 없음)

○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현황 및 구축 수준 (※중점점검사항)

구분	점수 산출방법
현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당분간 소프트웨어 운영체제상 문제 발생의 소지가 매우 낮은 경우 (단, 향후 구체적인 보수 계획 및 예산 확보 계획 수립)	4점 부여(감점 없음)
소프트웨어 운영체제상에 부분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어 거래증가 시 소프트웨어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나 간단한 유지보수로 보완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예산이 확보 가능한 경우	3점 부여(1점 감점)
현재 시스템이 불안정할 정도의 거래는 없으나 장래 거래증가를 대비한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2점 부여(2점 감점)
현재 시스템이 불안정할 정도의 거래는 없으나 장래 거래증가를 대비한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계획 및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경우	1점 부여(3점 감점)
현재 시스템 운영이 불안정한 상태	0점 부여(점수 없음)

* 필수적으로 화물정보망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모든 관리자 권한을 보유함으로써 운영상 제한이 전혀 없어야 함

○ 시스템이중화 수준

구분	점수 산출방법
전체 시스템에 걸쳐 완벽한 시스템이중화가 구현되어 있고 구체적인 향후 확장 시나리오 존재	2점 부여(감점 없음)
필요한 시스템이중화가 구현되어 있으며 거래증가 시에도 이중화와 관련한 문제발생 소지가 없음	1.6점 부여(0.4점 감점)
부분적으로 시스템 이중화가 구현되어 있으나 거래증가 시 이중화 관련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자 자체 향후 확장 시나리오가 수립되어 있는 상태	1.2점 부여(0.8점 감점)
현재 시스템이중화가 필요한 정도의 거래규모가 아니라서 시스템이중화가 완벽하지 않으나 장래 거래증가에 대비하여 시스템이중화가 필요한 경우	-향후 확장 시나리오 기 수립: 0.8점 부여(1.2점 감점) -향후 확장 시나리오 부재: 0.4점 부여(1.6점 감점)
현재 시스템이중화가 필요한 정도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중화 미비	0점 부여(점수 없음)

3.2 정보보안관리 (5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지표	지표 의미	배점	평가기준/척도
정보보안 관리	회원고유거래정보 사용자 접근 관리	·회원고유거래정보 접근 차단 기능	2	정보망 회원간 타 회원의 고유거래정보 접근 차단 기능 존재 1점, 나머지 1점에 대하여 회원고유거래정보 접근 차단 기능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에 5점 척도 평가
		·회원고유거래정보 접근 모니터링 기능	1	해당 기능 구축 1점
	제3자 보안관리	·제3자 정보접근 차단 기능	1	해당 기능 구축 1점
		·제3자 정보접근 모니터링 기능	1	해당 기능 구축 1점

가. 확인자료

- 화물운송정보망 시스템 구축결과 상세보고서
- 신청기업현황보고서(다음의 내용 포함)
 - 화물운송정보망 시스템 보안체계 설명서 및 관리 매뉴얼
 - 보안관리지침 체크리스트
 - 화물정보망 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계획서
 - 시스템 보안관련 사후처리 매뉴얼 및 개선사항 반영 결과 보고서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회원고유거래정보 접근 차단 기능

구분	점수 산출방법
회원고유거래정보 접근 차단 기능 존재	2점 부여
해당 기능의 작동 수준	회원고유거래정보 접근 차단 기능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에 대하여 5점 척도 평가 적용 점수 산출 (해당요소 배점: 1점)

○ 회원고유거래정보 접근 모니터링

구분	점수 산출방법
회원고유거래정보에 대한 비정상적 접근 시도 모니터링 및 알림 기능 존재	1점 부여

○ 제3자 정보접근 차단 기능

구분	점수 산출방법
제3자 정보접근 차단 기능 존재	1점 부여

○ 제3자 정보접근 모니터링 기능

구분	점수 산출방법
제3자에 의한 비정상적 시스템 및 정보 접근 시도 모니터링 및 알림 기능 제공 시	1점 부여

4. 화물정보망 이용 규모 (10점)

4.1 가입회원 규모 (5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지표	지표 의미	배점	평가기준/척도
가입회원 규모	가입회원 수	·정보망 회원인 화주, 운송 및 주선업체의 수	5	회원 규모 1,000이상 만점, 이하 범주에 따른 평가

가. 확인자료

- 가입회원 상세현황 자료 (인증센터에서 제공되는 엑셀양식파일 사용)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가입회원 수

구분	평가 점수
회원인 화주, 운송 및 주선업체의 수	화주 및 운송·주선사업자를 포함하는 회원수가 - 1,000 이상 : 5점 - 900~999 : 4점 - 800~899 : 3점 - 700~799 : 2점 - 600~699 : 1점 - 600 미만 : 0점

4.2 운송거래 실적규모 (5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지표	지표 의미	배점	평가기준/척도
운송거래 실적규모	정보망을 통한 운송거래 실적규모	·정보망 회원간 배차 수 반 거래건수 기준 최근 3개월간 총 운송거래 건수	5	일정 정도 운송거래건수별 범주에 따른 평가

가. 확인자료

- 운송완료 기준 운송거래 실적 상세내역(최근 3개월간 실적)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운송거래 실적 규모
 - 정보망 회원간 배차를 수반하는 거래건수를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총운송거래건수에 근거하여 다음의 범주에 따라 평가하여 점수 산출

구분	평가 점수
(총회원수 × 월4회 × 3개월) 기준 이상	5점
(총회원수 × 월3회 × 3개월) 기준 이상 (총회원수 × 월4회 × 3개월) 기준 미만	4점
(총회원수 × 월2회 × 3개월) 기준 이상 (총회원수 × 월3회 × 3개월) 기준 미만	3점
(총회원수 × 월1회 × 3개월) 기준 이상 (총회원수 × 월2회 × 3개월) 기준 미만	2점
(총회원수 × 월1회 × 3개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점

- ※ 개인차주는 1대 사업자로 간주하여 1개의 회원업체로 인정
- ※ 총회원수는 전체차주회원의 수로 산정

4.3 전자인수증 활용실적 (가산점 1점 부여, “4. 정보망 이용규모”의 10점 이내)

가. 확인자료

- 전자인수증 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에 대한 제출 자료
 - 자체구축 또는 구축된 서비스 이용시에도 가능
- 심사위원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현장심사시 재확인)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기존의 종이로 작성된 화물운송장 및 화물인수증을 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화 (Paperless)하여 사용할 경우 전자인수증 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
 - 평가를 위한 확인자료 보유시 가산점 1점 부여
 - “4. 정보망 이용규모”의 10점 이내에서 1점 부여

4. (정기 점검 평가기준) 화물정보망 이용 규모 (10점)

4.1 (정기 점검 평가기준) 가입회원 규모 (5점)

세부평가항목	평가지표	지표 의미	배점	평가기준/척도
가입회원 규모	가입회원 수	·정보망 회원인 화물차주 회원의 수	5	1년 이상의 가입회원으로 연간 12회 이상 당해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거래를 완료한 화물차주 회원의 규모 1,000이상 만점, 이하 범주에 따른 평가

가. 확인자료

- 가입회원 상세현황 자료 (인증센터에서 제공되는 엑셀양식파일 사용)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가입회원 수

구분	평가 점수
정보망 회원인 화물차주 회원의 수	1년 이상의 가입회원으로 연간 12회 이상 당해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거래를 완료한 화물차주 회원의 규모 - 1,000 이상 : 5점 - 900~999 : 4점 - 800~899 : 3점 - 700~799 : 2점 - 600~699 : 1점 - 600 미만 : 0점

4.2 (정기 점검 평가기준) 운송거래 실적규모 (5점)

세부평가항목	평가지표	지표 의미	배점	평가기준/척도
운송거래 실적규모	정보망을 통한 운송거래 실적규모	·정보망 회원간 배차 수 반 거래건수 기준 최근 3개월간 총 운송거래 건수	5	일정 정도 운송거래건수별 범주에 따른 평가

가. 확인자료

- 운송완료 기준 운송거래 실적 상세내역(최근 3개월간 실적)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 운송거래 실적 규모

- 정보망 회원간 배차를 수반하는 거래건수를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총운송거래건수에 근거하여 다음의 범주에 따라 평가하여 점수 산출

구분	평가 점수
(총회원수 × 월8회 × 3개월) 기준 이상	5점
(총회원수 × 월6회 × 3개월) 기준 이상 (총회원수 × 월8회 × 3개월) 기준 미만	4점
(총회원수 × 월4회 × 3개월) 기준 이상 (총회원수 × 월6회 × 3개월) 기준 미만	3점
(총회원수 × 월2회 × 3개월) 기준 이상 (총회원수 × 월4회 × 3개월) 기준 미만	2점
(총회원수 × 월1회 × 3개월) 기준 이상 (총회원수 × 월2회 × 3개월) 기준 미만	1점
(총회원수 × 월1회 × 3개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0점

※ 개인차주는 1대 사업자로 간주하여 1개의 회원업체로 인정

※ 총회원수는 전체차주회원의 수로 산정

부록.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 외

〈부록 1〉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물류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인증신청 사업분야	<input type="checkbox"/> 화물자동차운송기업	<input type="checkbox"/> 물류창고기업(시설명:)	
	<input type="checkbox"/> 국제물류주선기업	<input type="checkbox"/> 화물정보망기업	
	<input type="checkbox"/> 종합물류서비스기업(영위하는 물류사업:)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1부 2. 최근 3년간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1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3백만원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	심사	→	인증	→	통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록 2〉 우수물류기업 인증 세부심사항목 및 제출서류

인증분야	심사항목 및 배점		세부심사항목	제 출 서 류
공 통	리더십 및 경영전략	5	경영비전, 목표, 추진전략	경영비전·연도별 경영목표·추진전략 및 실행계획 등을 포함하는 증거서류
			최고경영진의 의지 및 리더십	경영전파 활동·종업원 참여프로그램 시행 실적 등을 나타내는 서류
			물류서비스 품질 경영전략	서비스 품질 방참·서비스 품질목표·서비스품질 수행 및 평가체계를 나타내는 서류
	사업 안정성	10	재무성과	자기자본이익률·부채비율·장기계약 매출액비율·매출액대비 순이익률 등 재무성과를 나타내는 서류
	업무처리 역량	10	인력확보	전문인력확보율을 증명하는 서류 물류전문인력 교육시행 및 교육이수실적 관련 서류
			고객지원 역량 및 신인도	법규준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고객만족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소 계		25		
종합물류 서비스 기업	다양성	25	네트워크	국내거점수를 나타내는 서류 해외거점수를 나타내는 서류
			매출구조	영위업종수를 나타내는 서류
			대상고객	고객수를 나타내는 서류
				최대고객 매출비율을 나타내는 서류
	기업 규모	30	자 산	투자자본금 현황
				운송수단 현황
				물류시설 현황
				기타물류자산 현황
	매출			물류사업 총매출액을 나타내는 서류
				제3자물류 매출액을 나타내는 서류
				일괄위탁 매출액을 나타내는 서류
				제3자물류 매출액비율을 나타내는 서류
발전 가능성	20	제3자 물류화	제3자물류 매출액비율을 나타내는 서류	
			제3자물류 매출액비율 증가율을 나타내는 서류	
			일괄위탁 매출비율을 나타내는 서류	
			일괄위탁 매출액비율 증가율을 나타내는 서류	
		국제화	해외투자규모를 나타내는 서류	
			해외매출실적을 나타내는 서류	
		정보화	정보시스템 자산보유액을 나타내는 서류	
			물류사업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정보화 투자율을 나타내는 서류	
소 계		75		
합 계		100		

인증분야	심사항목 및 배점		세부심사항목	제 출 서 류
국제물류 주선기업	전문성 및 서비스 경쟁력	35	전문능력	자기명의 B/L 발행비율을 나타내는 서류 매출고객의 분포성을 나타내는 서류
			고객지원역량 및 대외신인도	화물운송추적 서비스를 나타내는 서류 업무 관련 국내외 단체가입 정도를 나타내는 서류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국제화 정도	40	국제업무역량	권역별, 화물종류별 전문성을 나타내는 서류 해외화주와의 거래비율을 나타내는 서류
			국제네트워크	해외파트너 구성 및 운영 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소 계	75			
합 계	100			
물류창고 기업	자산	50	유형자산	창고시설현황, 장비확보 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무형자산	정보시스템 보유 현황, 업무 매뉴얼 확보, 특허 보유 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화물확보 및 고용	15	입출고 실적, 국외화물 현황, 장기계약현황(1년 이상), 종사자고용현황 등 을 나타내는 서류	
안전성	10	안전 및 보안관련 외주현황(보안업체 계약 등)을 나타내는 서류 화재예방 및 대응 매뉴얼, 보험가입현황, 친환경 관리 등을 나타내는 서류		
소 계	75			
합 계	100			
화물운송 기업	조직 및 지원관리	25	화물운수시설 및 장비현황, 직영차량보유비율, 교육훈련 체계 및 이수현황, 복리후생 투자현황 등을 나타내는 서류	
	운송정보 시스템	15	운송정보 시스템 현황, 고객응대 시스템 현황, 화주에 대한 정보제공 실적 등을 나타내는 서류	
	운송과정 관리	35	영업계획서, 직접운송비율, 고객불만 분석자료 및 개선실태, 사고예방교육실 태, 교통사고 피해예방 체계 확보 현황, 화물의 안전운송 실적, 배상보험 가 입 현황 등을 나타내는 서류	
소 계	75			
합 계	100			
화물 정보망 기업	화물운송 거래정보 관리	20	화물 및 차량정보관리시스템, 화물운송실적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화물운송 시장 거래제도 이행능력	30	화물운송거래 합법성 모니터링 기능, 화물운송실적신고 지원 기능 지원 역량 을 나타내는 서류	
	시스템 운영실태	15	화물정보망 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확보 실태, 화물정보망 시스템 구축실태 등을 나타내는 서류	
	정보망 이용규모	10	1. 가입회원 상세현황자료 2. 운송완료 기준 운송거래 실적 상세내역(최근 1년) 3. 전자인수증 활용실적(최근1년)을 나타내는 서류	
소 계	75			
합 계	100			

〈부록 3〉 우수물류기업 인증 마크 및 인증서 재발급 신청



- ◆ 상부 : 인증우수물류기업
- ◆ 중앙 : CELC ⇒ Certified Excellent Logistics Company
- ◆ 하단 : 인증분야 ⇒ 종합물류서비스기업 등

인증종합 물류서비스기업	인증화물 자동차운송기업	인증물류 창고기업	인증국제물류 주선기업	인증화물정보망 기업

■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별지 제1호서식]

우수물류기업인증서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기업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인증번호		
재발급 신청 사유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우수물류기업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무부처장관 귀하

첨부서류	손상된 인증서(인증서가 손상되어 재발급 받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연혁 및 제정·개정이유

[연혁 및 제정·개정이유]

1.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업무에 관한 세부규정(시행 2016.6.21., 제정)

-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 지정됨에 따라 해당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

2.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업무에 관한 세부규정(시행 2018.7.25., 일부개정)

- 최근 2년내 물류기업에 관한 인증을 취소 받은 경우 신규 인증심사 신청을 제한하는 재 신청 금지기간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신규인증심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물류기업의 편의 증진
- 연중 상시 신규 인증심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심사 신청기업의 부담 완화(시행 2018.3.6.)